

소년강력범죄에 대한 외국의 대응동향 및 정책 시사점 연구

A Study on Responding System of Foreign Countries for Serious Juvenile
Crimes and Its Implications

이승현 · 박성훈

발간사

최근 인천초등생 살인사건과 부산여중생 폭행사건 등을 비롯하여 소년강력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대한민국 사회는 청소년범죄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소년강력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우가 되고 있다는 국민적 인식에 따라 소년법 폐지 청원까지 이루어지고, 40만 명에 달하는 국민이 소년법 폐지 청원을 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청원 답변 1호 사례로 소년법 폐지 청원에 직접 답변을 하였고, 후속조치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학교 안팎 청소년대책 수립을 위한 TF'를 가동하여 소년강력법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국회에서는 형사처벌 강화 및 형사책임 연령 인하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년법 폐지논의를 비롯하여 소년법 적용연령 인하, 소년강력법에 대한 강력처벌을 위한 입법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급박하게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현행 소년강력범죄에 대한 현행 대응실태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대응의 한계점을 개선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년인구의 감소와 함께 소년범죄 인구도 감소하고 있지만, 소년강력범죄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소년범죄자의 재범률이 40%를 웃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부산여중생 사건에서 알게 되듯이, 이미 폭력범죄로 소년사법 단계에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재비행이 발생할 때까지 사법당국이 정보공유 부족 등을 이유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하나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입법 논의가 활발한 현 시점에서 소년강력범죄 관련 대책을 진단하고, 소년강력범죄에 대하여 외국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보는 일은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사한 경험사례를 갖고 있는 일본을 비롯하여 미국, 영국, 독일, 노르웨이의 소년사법체계와 소년강력범죄에 대한 대응현황을 살펴보고 이들 국가들로부터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하였습니다. 각국의 대응현황과 형사책임연령 인하 등에 대한 논의과정을 점검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보다 현실적으로 구체화된 대응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연구가 원만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 제공에 힘써주신 법무부 소년과
및 소년비행예방팀 관계자 여러분과 전문가 자문에 응해주신 학계전문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짧은 연구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를 성실히 수행해준 이승현
연구위원, 박성훈 연구위원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2017년 12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김진환**

목 차

국문요약	1
제1장 서 론 · 이승현	5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7
제2절 연구내용	9
제3절 연구방법	10
제2장 우리나라의 소년강력범 대응현황 및 문제점	
· 이승현	11
제1절 우리나라 소년사법의 역사	13
제2절 우리나라 소년사법에서의 연령기준	15
1. 우리나라 소년사법상 연령기준	15
가. 현행 법률상 소년의 연령기준	15
나. 소년사법상 연령기준	16
2. 소년범죄자의 연령 현황	17
가. 소년범의 연령별 현황	17
나. 촉법소년 현황	18
3. 최근 연령기준 인하와 관련한 논의	19
제3절 우리나라 소년강력범 대응실태	22
1. 소년범죄자의 현황	22
2. 소년범의 처리현황	25
제4절 우리나라 소년강력범 대응체계의 문제점	31
1. 초기비행에 대한 개입 부족	31
2. 소년강력범의 비행원인이 되는 가정의 문제 해결대책 부족	31

3. 초기비행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감독의 한계	32
4. 부처간 정보공유 부족으로 인한 문제	32

| 제3장 | 외국의 소년강력법 대응체계 · 이승현·박성훈 35

제1절 일본의 소년강력법 대응체계 37

1. 일본의 소년사법 역사	37
2. 일본 소년사법에서의 연령기준	41
가. 일본 법령상 연령기준	41
나. 일본 소년법상 연령기준	42
3. 일본의 소년사법절차	43
4. 일본의 강력범죄자 대응실태	46
가. 경찰의 소년사건처리	46
나. 형사법원에서의 심리	46
다. 소년에 대한 양형 동향	47
라. 소년에 대한 사형	48
5. 일본의 최근 소년강력범죄 대응 동향	48
가. 자민당(自民党)의 의견	49
나. 법무성 연구회의 의견	49
다. 대안으로서 청년층 신설	50

제2절 미국의 소년강력법 대응체계 51

1. 미국 소년사법의 역사	51
가. 청소년과 성인의 처벌 동일시	51
나. 소년과 성인의 차별화 시도	51
다. 소년사법절차의 강화	53
라. 소년에 대한 강력처벌 경향	55
2. 미국 소년사법에서의 연령기준	57
3. 소년강력법 대응을 위한 미국 소년사법절차	59
가. 경찰단계의 소년사건처리절차	60
나. 소년법원	61
다. 형사법원	64

라. 이송 및 관할 포기	65
4. 미국의 소년강력범 대응현황	70
가. 소년강력범죄의 발생현황	70
나. 소년강력범 관련 판례동향	74
다. 소년강력범에 대한 엄벌 효과성	79
라. 소년강력범 대응 관련 최근 논의	82
제3절 영국의 소년강력범 대응체계	84
1. 영국 소년사법의 역사	84
2. 영국 소년사법에서의 연령기준	87
3. 영국 소년사법절차	88
가. 경찰단계 사건처리	88
나. 검찰단계 사건처리	89
다. 소년법원	89
라. 형사법원	90
4. 영국의 소년강력범 대응실태	91
5. 영국정부의 소년구금에 대한 인식과 대응	98
제4절 독일의 소년강력범 대응체계	100
1. 독일의 소년사법 역사	100
2. 독일 소년사법에서의 연령기준	102
3. 독일의 소년사법절차	103
가. 교육처분(Erziehungsmassregeln)	104
나. 징계처분(Zuchtmittel)	106
다. 소년형(Jugendstrafe)	108
4. 독일의 소년강력범 대응실태	109
가. 소년형법상 제재현황	109
나. 소년강력범에 대한 독일의 엄벌화 논의	112
다. 2002년 독일 소년법원법 개정제안서의 주요 쟁점사항	116
라. 독일에서의 소년강력범에 대응 효과성 검증연구	118
제5절 노르웨이의 소년강력범 대응체계	119
1. 노르웨이의 소년사법 역사	119
2. 노르웨이의 소년사법에서의 연령기준	121
3. 노르웨이의 소년사법제도	122

가. 노르웨이의 소년사법절차	122
나. 소년관련 처분	124
4. 노르웨이의 소년강력법 대응실태	127
5. 강력범죄에 대한 국가별 인식차	129
제6절 외국의 소년강력법 대응체계를 통해본 시사점	136

| 제4장 | 우리나라 소년강력법 대응체계의 개선방안

• 이승현	139
-------------	-----

제1절 소년사법에 대한 인식 차이 개선을 위한 노력	141
제2절 소년사법에 대한 연령기준	142
1. 각국의 연령기준 고찰을 통한 판단	142
2. 연령기준의 판단 요소	144
가. 형사책임주의 관점	144
나. 형사처벌의 실효성 관점	144
다. 소년법의 기본이념 검토	144
라. 신체적·정신적 성숙도	145
3. 연령인하에 대한 재고	146
제3절 소년강력법에 대한 구체적 대응방안	147
1. 조건부 양형제도 도입	147
2. 형사재판과 소년재판을 병행할 수 있는 ‘청년’ 연령층 신설	147
3. 특정강력범죄에 대한 제한규정 신설	148
제4절 소년사법단계별 개입기준 마련	149
1. 경찰의 훈방기준	149
2. 검사의 조건부 기소유예 기준	149
3. 소년법원의 보호처분 기준	150
4. 소년형사재판의 양형기준	150
제5절 소년강력법 개입을 위한 사법절차 개선방안	151
1. 소년사건 처리절차의 신속화	151

2. 초기 진입시 집중관리감독	151
3.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151
4. 보호처분의 다변화방안	152
5. 범정부단위 소년범죄예방협의체 신설	153

참고문헌	155
------------	-----

Abstract	161
----------------	-----

표 차례

〈표 2-1〉 현행 법률상 연령기준	16
〈표 2-2〉 소년사법에서 연령기준	16
〈표 2-3〉 소년범죄자의 연령별 현황	17
〈표 2-4〉 촉법소년 현황	19
〈표 2-5〉 연령기준 관련 입법발의 현황(2017년 하반기)	20
〈표 2-6〉 청소년범죄의 유형별 현황	23
〈표 2-7〉 소년범죄의 전과별 현황	24
〈표 2-8〉 소년범의 재범기간	25
〈표 2-9〉 소년범죄 처리 현황	26
〈표 2-10〉 소년보호사건 접수 인원 및 접수구분 인원	27
〈표 2-11〉 소년보호사건의 처분현황	28
〈표 2-12〉 소년보호사건의 유형별 현황	29
〈표 2-13〉 연도별 제1심 형사사건 재판결과	30
〈표 3-1〉 일본 법률상 연령기준	41
〈표 3-2〉 각 주별 연령기준	57
〈표 3-3〉 최소 연령기준	58
〈표 3-4〉 소년사법권한을 확대 적용할 수 있는 연령상한기준	58
〈표 3-5〉 미국 각주의 이송제도 현황	68
〈표 3-6〉 소년형법상 제재 현황	110
〈표 3-7〉 소년강력범의 소년형 집행현황	111
〈표 3-8〉 대안적 형사제재	128
〈표 3-9〉 연령별 형사제재 부과현황(2007)	129
〈표 4-1〉 각국의 형사책임 최저연령	143

그림 차례

[그림 2-1] 청소년범죄의 연령별 현황	18
[그림 2-2] 촉법소년의 경찰서송치현황	19
[그림 2-3] 전체범죄자 대비 청소년범죄자 구성비	22
[그림 3-1] 일본의 소년사법절차도	43
[그림 3-2] 일본의 소년법 양형추이	47
[그림 3-3] 일본의 부정기형 현황	48
[그림 3-4] 미국의 소년사법절차도	59
[그림 3-5] 미국 17세 이하 청소년 폭력범죄율의 변화(1980~2010)	71
[그림 3-6] 미국 17세 이하 청소년 재산범죄율의 변화(1980~2010)	72
[그림 3-7] 미국 12세 이하 청소년 폭력범죄율의 변화(1980~2010)	72
[그림 3-8] 미국 12세 이하 소년 재산범죄율의 변화(1980~2010)	73
[그림 3-9] 미국 12세 이하 청소년 기타 범죄율의 변화(1980~2010)	74
[그림 3-10] 미국의 강력범죄 관련 판례 흐름도	78
[그림 3-11] 소년사법단계에 들어온 초기진입자 추이	93
[그림 3-12] 18세 이하 구금인구(2006~2016)	95
[그림 3-13] 독일 소년사법 절차도	104
[그림 3-14] 교육처분의 유형	105
[그림 3-15] 징계처분의 유형	107

국문요약

최근 부산여중생 폭행 사건을 비롯하여 소년강력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소년 강력법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및 형사책임 연령 인하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사한 경험사례를 갖고 있는 일본을 비롯하여 미국, 영국, 독일, 노르웨이의 소년사법체제와 소년강력법의 대응현황을 살펴보고 이들 국가로부터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일본은 최근 공직선거법 연령 인하와 소년흉악사건으로 인해 소년법 적용연령 인하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여론이나 다른 법률과의 관계상 연령을 인하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소년강력법의 처우에 대한 점검과 소년범죄 통계현황을 비추어 봤을 때 실익을 찾기 어렵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각주별로 형사책임 연령이 7세부터 10세 등 상이하긴 하나, 전세계 국가 중 연령이 비교적 낮은 국가에 속한다. 미국은 소년강력법에 대한 대응을 관할포기(waiver)제도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검찰과 법원간 형태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소년강력법에 대하여 엄벌화하는 것이 효과적인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으나, 2017년 뉴욕주에서 형사처벌 연령을 오히려 상향하는 입법안이 통과되면서 오히려 엄벌화 경향에 제동을 걸고 있는 입법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영국은 형사책임연령이 10세로 다른 EU국가에 비해 연령기준이 낮지만, 10세 이상 18세 미만자의 범죄사건은 소년법원에서 약식재판(summary trial)으로 심리가 이루어지고, 성인사건과 동일하게 처리되지 않고 있다. 다른 유럽국가에 대하여 소년법에 대한 구금적 처우가 많은 영국이지만, 구금이 소년범죄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효과가 증명되지 않았다.

독일은 소년사법 적용연령을 18세 이상 21세 미만인 '청년(Heranzuwachsende)'층까지 두고 있고, 청년층에 대하여는 소년사법절차를 진행할지 성인사법절차를 진행할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적이다. 1990년대 후반 독일사회에서도 엄벌화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이후 개정방향이 강력처벌보다는 주로 징계처분이나 경고구금을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노력들을 보이는 형태로 변화하였다.

2 소년강력범죄에 대한 외국의 대응동향 및 정책 시사점 연구

노르웨이는 형사책임 연령을 15세로 보고 있고, 여타의 국가와는 달리 복지적 개입이 강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노르웨이에서는 소년강력사건 발생시 가해자인 소년강력범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형태로 개입을 하고 있고, 여론에 휩쓸리기 쉬운 상황을 우선 통제하고 피해자 보호를 함께 병행하는 형태로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여론몰이에 따라 입법방향이 정해지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각국의 소년강력범에 대한 대응실태 등을 살펴본 결과, 소년강력범에 대한 강력처벌과 형사책임 연령 인하만으로는 강력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은 얻었다. 소년사법에서 연령기준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형사책임주의의 관점을 변화시켜 다시 비행에 노출되지 않도록 교정교화하기 위해 어떠한 인적 물적 노력을 기울여왔는지, 소년법의 기본이념목표에 부합하는지, 현재 소년법의 신체적·정신적 성숙도가 형사책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판단을 기초로 하여 소년강력범에 관한 대응방안으로 다음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소년강력범에 대한 구체적 대응을 위해, ① 독일과 같이 소년범 양형시 집행유예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양형제도의 도입 방안, ② 모든 소년범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것의 폐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년층 신설을 통해 소년사법과 형사사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③ 특정강력범죄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위해 사형 또는 무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를 비롯하여 특정 범죄유형에 대하여 법정형을 상향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소년강력범에 대한 실질적 개입이 이루어지기 위해 개입초기단계부터 개입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① 경찰훈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② 검찰의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조건부 기소유예의 배제사유 마련이 필요하며, ③ 신체의 박탈을 전제로 하는 시설내 구금에 대하여는 최소 처분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소년강력범에 대한 개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 사법절차의 개선방안으로는 ① 미국의 관할포기 이송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건처리의 신속성을 확보해야 하고, ② 초기 소년사법 단계 진입시 적극적으로 개입이 가능하도록 선도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하며, ③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④ 1호 처분시 보호자 책임성 강화, 소년보호관찰방식의 전환 등 보호처분의 다변화가 병행되어야 하며, ⑤ 소년형사재판에 대한 양형의 현실화를 위해 양형기준이 수립되어야 한다.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1장

서론

이승현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최근 소년강력사건 발생으로 인해 소년법과 소년강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2015년 용인캣맘 사건¹⁾을 계기로 형사처벌 연령을 낮추자는 논의가 시작되었고, 2017년 초 인천초등생 살인사건²⁾이 발생하면서 중학생 소년범의 범행의 잔혹성에 온 국민이 분노하였다. 이후 부산여중생 폭행사건과 강릉여중생 폭행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소년법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소년강력사건이 언론에 연이어 보도되고, 소년범죄의 저연령화 현상을 비롯하여 잔혹성, 폭력성, 계획성 등이 드러나면서 소년사범에 대한 강경처벌을 희망하는 국민적 요구가 폭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소년범에게 관대한 처벌을 하는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주장까지 이어지고, 2017년 9월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에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온라인 청원이 29만건을 넘어섰다.³⁾ 이에 정부는 9월 12일 법무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사회부처 관계장관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범정부차원에서 소년강력범죄의 성격을 파악하고, 부처별 정책 문제점과 한계를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T/F를 발족하고, 청소년비행 예방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소년강력범죄 대응 요구와 더불어 「소년법」 등 관련법에 대한 입법발의도 쇄도하고

-
- 1) 서울신문, “용인캣맘 사망사건 용의자는 10세 초등학생”, 2015년 10월 16일자.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1016500059>, 2017.11.20. 최종검색)
 - 2) 국민일보, “쓰레기봉지 담긴 8세 초등생 시신, 용의자는 16세 소녀”, 2017년 3월 30일자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364107&code=61121211&cp=nv>, 2017.11.20. 최종검색)
 - 3) YTN, “부산여중생 폭행사건에 청소년 처벌강화 청원운동”, 2017년 9월 4일자.
(http://www.ytn.co.kr/_ln/0103_201709041130068498, 2017.11.20. 최종검색)

있다. 2017년 「소년법」 개정관련 법안은 18건에 달하고 있고, 그 가운데 우범소년 관련 규정을 폐지하자는 백혜련의원 대표발의안(2005857호), 소년보호처분 등을 현실화하자는 김진태의원 대표발의안(2008183호) 등 8건을 제외하고 최근 발의된 8개 법안은 모두 「소년법」상 기준연령을 내리거나, 소년범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조항을 개정하거나, 촉법소년 연령을 인하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년범에 대한 강력처벌을 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형법」상 형사책임연령과 관련하여 14세에서 13세로 낮추자는 박덕흠의원 대표발의안(2009319호), 12세로 낮추자는 이석현의원 대표발의안(2009221호)과 김도읍의원 대표발의안(2009215호), 장제원의원 대표발의안(2009164호) 등도 있다.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있어서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특정강력범죄에 대하여 사형·무기형인 경우 28년형으로 하는 박덕흠의원 대표발의안(2009320호), 30년형으로 하는 김도읍의원 대표발의안(2009210호)과 전해숙의원 대표발의안(2009191호)이 발의된 상태이다. 한걸음 나아가 16세 이상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하여는 「소년법」 적용을 배제하자는 이석현의원 대표발의안(2009207호)과 김정우의원 대표발의안(2009184호), 표창원의원 대표발의안(2008283호)뿐만 아니라 소년홍악법에 대하여 신상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손금주의원 대표발의안(2009323호)까지 입법발의되고 있어, 이러한 소년범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 추세가 바람직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행 「소년법」 관련 논의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과 소년강력범에 대한 별도의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위해 외국의 대응사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외국의 경우 각국의 소년사법체계와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소년법 기준연령이 다르다. 소년법 기준연령이 미국 7세 전후(주마다 다름), 영국 10세, 독일 14세, 일본 14세, 노르웨이 15세 등 다양화되어 있다. 외국에서 소년강력사건이 발생한 경우 범죄에 대한 인식, 정치적 분위기, 국민여론, 뉴스미디어의 역할 등으로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대응과정도 상이하다. 각국의 소년사법 대응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소년강력범죄에 대한 개입이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할지에 대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소년강력범 대응에 있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우선 현재 언론과 정치계에서 말하는 소년강력범죄의 저연령화, 흉폭화 현상이 전체 소년범죄의 현상인지를 밝히고, 소년강력범죄에 대한 현재의 대응방식이

어떠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현행 소년범죄 발생 및 대응현황, 관련 소년법제의 입법상 문제점, 소년범 양형상의 문제점, 사건처리 절차에서 소년강력범죄 대응의 문제점 등을 고찰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외국의 소년강력범죄 대응현황 비교고찰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소년강력범죄의 대응상 문제점을 깊이 있게 고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외국 소년강력사범에 대한 대응현황을 소년강력범죄 실태, 소년사법체계 및 기준연령, 형사처벌 현황, 소년강력범죄에 대한 판례의 태도 등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소년강력범죄 대응현실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고, 소년강력범죄자 대응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내용

본 연구는 외국의 소년강력법에 대한 대응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보다 적절한 대응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고, 전체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과 연구필요성에 대해 밝히고 연구방법 등을 소개한다.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소년강력법 대응실태를 파악하고, 이러한 대응에 있어서 문제점을 언급한다.

제3장에서는 일본, 미국, 영국, 독일, 노르웨이 등 외국의 소년강력법 대응실태를 파악한다. 각국의 소년형사책임 연령기준, 소년강력법 대응현황에 관한 통계현황, 소년사법절차 흐름, 최근 소년강력법에 대한 대응논의경향 등을 파악함으로써, 각국의 소년강력법 대응현상과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4장에서는 각국의 대응실태를 통한 시사점을 가지고 현행 소년강력법 대응의 문제점과 비교하여 보다 구체화된 대안을 제시한다.

제3절 연구방법

본 연구는 주로 문헌 연구와 외국제도와와의 비교연구를 중점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응실태 파악을 위해서는 대검찰청 범죄분석, 법원행정처의 사법연감 등 자료를 활용하여 현황을 파악하였다. 외국의 통계자료는 각국의 통계청 자료나 경찰청 및 법무부에서 제공되는 리포트 자료를 활용하여 정리하였다.

외국의 소년사법절차와 최근의 논의 경향에 대하여는 각국의 관련 연구자료들을 활용하거나, 일본의 경우 법무성 내 연구회의 회의자료, 변호사회의 쟁점 정리자료들을 활용하여 주요논점을 파악하였다.

우리나라 소년강력법 대응에 있어서 문제점과 연령에 관한 논의사항은 국내 관련 문헌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취합하였다. 마지막으로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서는 소년사법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함으로써 개선방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고 정리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보강하였다.

우리나라의 소년강력범 대응현황 및 문제점

이 승 현

우리나라의 소년강력법 대응현황 및 문제점

제1절 우리나라 소년사법의 역사

1958년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일본 소년법을 근간으로 하여 조선소년령을 통해 소년 사법이 운영되어왔다. 「소년법」이 1958년에 제정됨에 따라, 반사회적 성향을 지닌 소년에 대해 환경 조정과 성행 교정이라는 목적 하에 소년법의 적용연령을 20세 미만으로 하고,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결정으로 보호자에게 위탁, 사원 및 교회 기타 소년보호단체에의 감호위탁, 병원 기타 요양소 위탁, 감화원 송치, 소년원 송치처분 등을 하도록 하였다.

1963년 개정 「소년법」에서는 소년보호사건의 관할법원을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로 하고, 소년부의 보호사건 대상자는 범죄소년, 촉법소년 외에도 범죄성이 있는 자 등과 교제하는 등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12세 이상 소년으로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보호처분 유형에 보호관찰을 추가하였다.

1977년 개정 「소년법」은 소년감별소 신설로 사건조사 및 심리절차에서 감별소의 감별결과와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였고, 18세 이상 소년에 대하여 환경처분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보호처분 전 위탁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위탁기간을 미결구금 일수에 산입하도록 하였다.

1988년 개정 「소년법」에서는 비행소년의 효율적 교화를 위해 보호처분을 장·단기로 다양화하였고, 사형 및 무기형을 받지 않는 연령을 16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상향하였으며, 소년법에 대한 진술거부권, 심리절차 진행시 재판절차에 부할 사실 고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소년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2004년 이후이다. 2004년 7월 법원 중심의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가 구성되어 「소년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동 개정안에서는 ① 소년법원의 설치, ②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 절차의 일원화, ③ 소년연령의 인하, ④ 보호처분 강화를 위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기간 확대 및 대상자 연령 인하, ⑤ 보호자에 대한 교육명령, ⑥ 소년의 인권보장을 위한 조치로서 우범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폐지, ⑦ 국선보조인제도 신설, ⑧ 소년원의 수용기간 연장을 위한 법원의 허가요구, ⑨ 소년법 구속시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수용 등이 논의되었으나, 실제 입법에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법무부도 2005년 12월 소년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년법」 개정작업에 나섰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 소년사법에서 회복적 사법의 도입, ② 수사단계에서의 다이버전 확대, ③ 검사선의주의의 유지, ④ 보호처분의 다양화·내실화, ⑤ 보호사건의 대상범위 확대, ⑥ 소년법 인권보장 관련규정의 강화, ⑦ 청소년비행예방에 관한 기본규정의 신설 등이다.

이에 따라 2007년 「소년법」 개정에서는 청소년의 성숙정도와 「청소년보호법」 등 다른 법률과의 통일성 등을 이유로 「소년법」상 적용연령을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낮추고, 우범소년의 연령을 12세 이상에서 10세 이상으로 낮추었다. 현행 「소년법」상 사건처리절차가 형사소송법상 절차보장에 미흡한 측면이 많아 「소년법」상 국선보조인제도를 도입하였다. 보호처분을 다양화하고 내실화하기 위해 대안교육의 방법을 다양화하고, 사회봉사·수강명령을 독립된 보호처분으로 전환하며, 단기보호관찰 기간을 확대하였다. 검사선의주의 방식에 대한 개선을 위해 처분결정전 조사제도와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밖에도 종합적인 비행예방정책 수립을 위해 비행예방정책 기본규정을 신설하였다.

우리나라의 「소년법」은 일본 소년법의 영향을 받기도 하였으나,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으로 이원화된 우리나라 소년사법 구조 하에서 독자적인 처분 모델을 형성해왔다. 1958년 「소년법」 제정 이후 4차례의 개정은 소년사법의 변화에 크게 기여하여왔으나, 주로 제도의 신설에 주목하고 있을 뿐 현재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2007년 「소년법」 개정을 통해 「소년법」 적용대상을 10세로 인하여 저연령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이 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적절한 처우

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고 있다.⁴⁾ 최근에는 소년강력범죄의 지속적 언론보도로 인해 「소년법」 적용연령 인하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제2절 우리나라 소년사법에서의 연령기준

우리사회가 현재 소년사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소년법」상 연령 문제이다. 현행 소년법은 저연령 소년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⁵⁾ 그렇다면 현행 「소년법」상 연령이 과연 어떠한 연령 기준을 갖고 있고, 실제로 정치권과 여론 등에서 우려하는 바대로 저연령소년의 범죄율이 높은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1. 우리나라 소년사법상 연령기준

가. 현행 법률상 소년의 연령기준

국내 법률에서 아동, 청소년, 미성년자 등 호칭에 따라 연령기준이 다양하다.

청소년의 권리에 관련된 법률에서는 연령 기준이 9세 이상 24세 이하이다. 반면에, 청소년에 대한 규제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연령기준은 19세나 18세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본의 경우 선거권 연령이 「소년법」 개정과 직결되기도 한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자는 19세 이상자로 되어 있어서, 현재 「소년법」과 「공직선거법」상 연령기준을 19세 미만으로 균형을 맞추고 있다.

4) 이수진, “소년법 형사처벌 연령 하향 움직임의 부당성”, 형사정책 제28권 제3호, 2016, 79쪽.

5) KBS뉴스, 정치권 “10대 잔혹범죄 재발 막자”, 소년법 개정론 확산”, 2017년 9월 6일자.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545102&ref=A>, 2017.12.10. 최종검색)

〈표 2-1〉 현행 법률상 연령기준

관련법	호칭	연령
아동복지법	아동	18세 미만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아동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	19세 미만
청소년기본법	청소년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보호법	청소년	19세 미만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	9세 이상 24세 이하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청소년	9세 이상 24세 이하
민법	미성년자	19세 미만
형법	책임무능력자	14세 미만
근로기준법	연소자	19세 미만
소년법	소년	19세 미만
공직선거법	선거미성년	19세 미만

나. 소년사법상 연령기준

「소년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자를 의미하고,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촉법소년,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등의 행위를 하고 이러한 행위가 앞으로 형벌법령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우범소년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소년법」 제2조, 제4조).

〈표 2-2〉 소년사법에서 연령기준

관련법	호칭	연령
형법	책임무능력자	14세 미만
소년법	범죄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
	촉법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
	우범소년	10세 이상 19세 미만

2. 소년범죄자의 연령 현황

가. 소년범의 연령별 현황

여론 등에서는 소년범죄의 특징으로 저연령화를 꼽고 있다. 검찰에서 사건처리된 소년범죄자의 연령을 보면, 2016년 전체 소년범 중 18세 소년범이 19,401명(25.7%)에 이르고 있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이어 17세 23.1%, 16세 23.1%, 15세 18.1%, 14세 9.9%, 14세 미만 0.1%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와 비교할 때 14세 저연령 소년범의 비율이 증가한 반면에, 17-18세 소년범의 비율은 다소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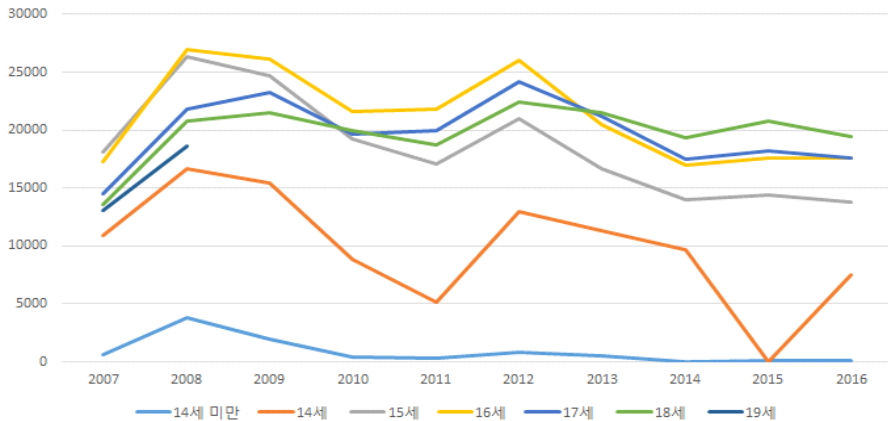
〈표 2-3〉 소년범죄자의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

연령 연도	계	14세 미만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07년	88,104 (100)	578 (0.7)	10,884 (12.4)	18,081 (20.5)	17,306 (19.6)	14,539 (16.5)	13,603 (15.4)	13,113 (14.9)
2008년	134,992 (100)	3,800 (2.8)	16,638 (12.3)	26,385 (19.5)	26,932 (20.0)	21,784 (16.1)	20,808 (15.4)	18,645 (13.9)
2009년	113,022 (100)	1,989 (1.8)	15,431 (13.7)	24,657 (21.8)	26,153 (23.1)	23,307 (20.6)	21,485 (19.0)	-
2010년	89,776 (100)	445 (0.4)	8,870 (9.9)	19,280 (21.5)	21,611 (24.1)	19,637 (21.9)	19,933 (22.2)	-
2011년	83,068 (100)	360 (0.4)	5,189 (6.2)	17,084 (20.6)	21,815 (26.3)	19,936 (24.0)	18,684 (22.5)	-
2012년	107,490 (100)	856 (0.8)	12,978 (12.1)	21,009 (19.5)	26,080 (24.3)	24,140 (22.5)	22,427 (20.9)	-
2013년	91,633 (100)	471 (0.5)	11,338 (12.4)	16,645 (18.2)	20,463 (22.3)	21,208 (23.1)	21,508 (23.5)	-
2014년	77,594 (100)	37 (0.0)	9,712 (12.5)	14,041 (18.1)	16,940 (21.8)	17,517 (22.6)	19,347 (24.9)	-
2015년	71,035 (100)	64 (0.1)	7 (0.0)	14,387 (20.2)	17,624 (24.8)	18,231 (25.7)	20,772 (29.2)	-
2016년	76,000 (100)	84 (0.1)	7,530 (9.9)	13,789 (18.1)	17,589 (23.1)	17,607 (23.1)	19,401 (25.7)	-

주: 2008년 6월 개정 「소년법」 시행으로 소년범죄 연령기준이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변경됨.
자료 : 대검찰청(2008-2017). 범죄분석.

14세 미만자의 수가 2008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이는 14세 미만자가 경찰에서 법원으로 바로 송치되기 때문에 입건을 기준으로 범죄발생 통계를 집계하는 수사기관의 통계에서 누락된 것임을 감안해야 한다.⁶⁾



[그림 2-1] 청소년범죄의 연령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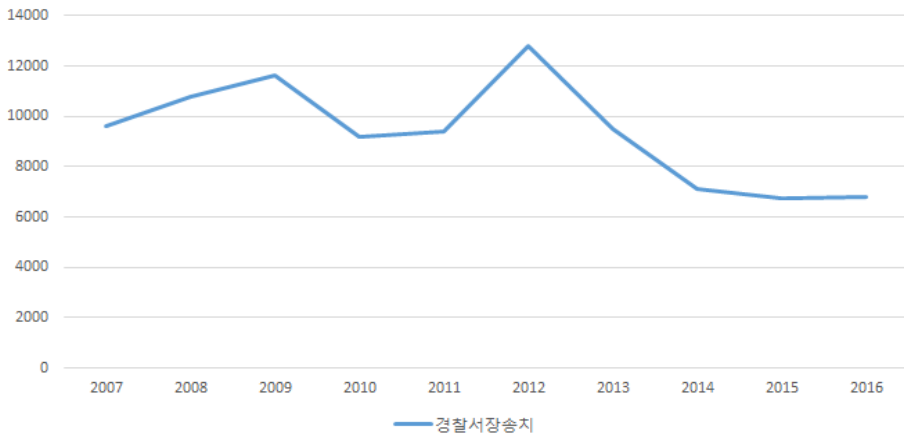
나. 촉법소년 현황

검찰 통계에서 누락된 촉법소년 대상자수를 파악하기 위해 경찰통계를 분석하였다. 경찰통계상 촉법소년 수를 살펴보면, 촉법소년 수는 해마다 줄어들어 2016년에 6,788명에 그치고 있다. 통계결과를 전체 취합해보면, 언론보도 등과 달리 소년범죄가 저연령화 되고 있다는 근거를 찾기 어렵고, 소년법의 적용대상 연령을 인하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6) 손정숙, “소년범죄 현황과 입법적 개선방향”, 소년 강력범죄 대책과 입법개선방안 공청회 자료집, 법무부, 2017, 76쪽.

〈표 2-4〉 촉법소년 현황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경찰서장 송치	9,636	10,781	11,609	9,213	9,401	12,799	9,500	7,104	6,756	6,788



[그림 2-2] 촉법소년의 경찰서송치현황

3. 최근 연령기준 인하와 관련한 논의

2015년 10월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길고양이 집을 짓던 50대 여성이 아파트 옥상에서 누군가가 던진 벽돌에 마자 사망한 사건에서, CCTV 분석결과 9살 초등학생이 범인으로 지목되면서 잔인한 범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문제로 촉법소년 연령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다. 이후 인천초등생 살인사건과 부산 여중생 살인사건은 강력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대상소년이 소년범이라는 이유로 경미하게 처벌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했다.

최근 부산여중생, 인천초등생 사건 등을 계기로 「소년법」 폐지 청원이 이루어지고, 이와 관련하여 촉법소년 연령 인하와 형법상 책임무능력자 연령을 인하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안(2009212), 장제원의원 대표발의안(2009168), 김도읍의원 대표발의안(2009192)은 모두 「소년법」상 촉법소년 연령을 10세에서 12세로 낮추자고 입법발의한 상태이다. 이는 형법상 형사책임무능력자 규정과 연관되는 바,

형사책임연령을 14세에서 12세로 보자는 취지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라 함께 고려가 필요하다.

하태경의원 대표발의안(2009133) 등은 소년법의 적용대상을 19세에서 18세 미만으로 인하하는 법안이다. 중고등학생의 발육상태와 성장상태 등이 과거와 달라졌으므로 중고생의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연령을 인하하자는 주장이다.

〈표 2-5〉 연령기준 관련 입법발의 현황(2017년 하반기)

구분	의안 번호	대표 발의자	주요내용
소년 법	9133	하태경	- 현행법상 보호대상인 소년의 연령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추고, 사형이나 무기형의 죄를 범하는 경우 형의 완화를 15년에서 20년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59조).
	9168	장제원	- 형법에서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종래 14세에서 12세로 조정함에 따라 '촉법소년'의 연령을 종래 '10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10세 이상 12세 미만'으로 조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2조 제4항).
	9183	김정우	- 소년이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였을 때는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하지 않고 형사사건으로 하도록 하고, 사형 및 무기형에 처해진 경우 형벌의 완화를 30년 유기징역으로 확대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제1호, 제59조).
	9187	전혜숙	- 강력한 처벌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지만, 범죄의도, 잔혹성, 수법에 따라 형량을 달리하여,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고 미성년 범법자를 교화할 수 있도록 소년원 보호기간을 최대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리고자 함(안 제33조제6항).
	9192	김도읍	- 범죄를 저지르는 소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보호 대상소년에 대한 연령을 조정하여 소년 범죄를 경감시키고, 선량한 국민이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9212	이석현	- 형법 제9조 형사미성년 연령 14세에서 12세로 낮추는 개정안에 맞추어 소년법의 촉법소년 연령도 12세로 낮추어 형사미성년 연령을 현실화하고자 함 - 이는 적절한 형사제재를 통해 국민생명과 신체 안전보장하고 소년부판사는 사건 심리시 사건본인과 보호자를 반드시 소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21조).
	9318	손금주	- 형법의 제55조(구속영장의 제한)에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 수사 중 필요하다고 판단 시 소년에 대해서도 예외를 두지 않고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삭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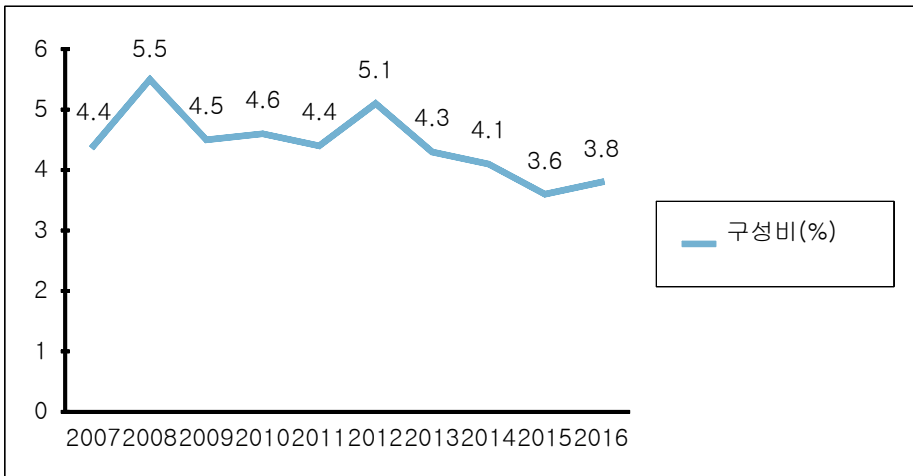
구분	의안 번호	대표 발의자	주요내용
	9314	박덕흠	- 촉법소년의 나이의 상한을 낮추고 사형이나 무기형의 죄를 범하는 경우 형의 완화를 15년에서 22년으로 개정하여 청소년에게 범죄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청소년 범죄의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4조 및 제59조).
	9812	김삼화	- 현행법에 피해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소년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긴급 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초동 수사 단계부터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수사하는 등 2차 피해예방을 위해 노력하고자 함. - 소년범죄 사건의 조사 또는 심리 전에 반드시 전문가로 하여금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2조, 안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 및 제12조제2항 신설, 안 제18조).
	10404	박범계	- 충분한 교화와 소년범죄의 예방적 효과를 위해 소년범의 소년원 송치 처분을 세분화해 최장 5년으로 하고, 10세 이상 12세 미만의 소년에도 중·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촉법 소년의 위법성 인식 제고를 위해 수감명령의 경우에도 10세 이상으로 대상 연령을 하향 조정함. 다만, 청소년의 변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중·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의 경우 상한(중기 2년, 장기 5년) 내에서 법원의 직권 혹은 소년원의 신청에 따라 기간 연장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교정 효과를 제고하고자 함. 법원이 소년의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고 적절한 보호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찾기 위해 조사명령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길위학교 과정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단기 소년원 송치 처분에도 수감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과 같이 보호관찰처분을 병과할 수 있게 하고, 위탁 기관과 법원이 함께 집행을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소년원 송치 처분에 대해서 법원 직권으로 보호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10766	정춘숙	- 소년 보호사건의 피해자의 권리를 제고하기 위하여 보호사건의 심리에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이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4조제2항 단서). 피해자 등이 신청한 경우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사건의 심리개시 여부, 심리의 기일·장소, 심리결과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그 신청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0조의3 신설).
	10827	송기석	- 촉법소년의 경우 임시위탁영장제도를 도입하여 손쉽게 신병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형사사건과 관련해서는 소년에 대하여도 구속영장을 일반인과 동일하게 발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및 제55조제1항 삭제).
	10827	송기석	- 촉법소년의 경우 임시위탁영장제도를 도입하여 손쉽게 신병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형사사건과 관련해서는 소년에 대하여도 구속영장을 일반인과 동일하게 발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및 제55조제1항 삭제).
형법	9164	장제원	-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2세로 하향하여 변화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
	9215	김도읍	- 보호 대상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연령을 조정하여 소년 범죄를 경감시키고, 선량한 국민이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9221	이석현	- 현행 형사미성년자의 나이를 14세에서 12세로 낮추어 형사미성년의 연령을 현실화하고, 적절한 형사제재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지키는 것을 목적하려는 것임.

구분	의안 번호	대표 발의자	주요내용
	9319	박덕흠	- 변화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소년법 등 현행 법체계와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3세로 조정함으로써 청소년에게 범죄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청소년 범죄의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9조).

제3절 우리나라 소년강력범 대응실태

1. 소년범죄자의 현황

최근 10년간 전체범죄자 대비 소년범죄자의 구성 비율을 보면 2007년에는 4.4%이었다가 2008년 5.5%를 차지하여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이후 감소되었다. 2012년에 다시 증가하여 5.1%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다. 소년범 구성 비율이 2009년부터 감소한 것은 2008년 개정 「소년법」 시행으로 소년범의 범위에서 19세가 제외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012년도에 비율이 대폭 증가한 것은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다루어지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강력 대응 등이 수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16년 현재 전체범죄자 중 소년범죄자의 비율은 3.8%를 차지하고 있다.



자료 : 대검찰청(2008~2017). 범죄분석.

[그림 2-3] 전체범죄자 대비 청소년범죄자 구성비

소년범죄는 전반적으로 줄고 있으나, 강력범의 비율은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2016년에 전체 소년범죄 유형 가운데 소년강력범의 범죄비율이 전년대비 0.8%p 상승하였다. 이는 2016년에 흉악범의 비율은 줄어들었으나 성폭력범죄 비율이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소년범죄 중 강력범죄자의 비율이 높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범죄자 대비 소년범죄자의 비율이 3.8%에 불과한 반면에, 전체 강력범죄자 중 소년강력범자가 33,529명 중 소년강력범죄자가 3,343명으로 약 10%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소년강력범죄자 대응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표 2-6〉 청소년범죄의 유형별 현황

(단위 : 명)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구분											
계		88,104	134,992	113,022	89,776	83,068	107,490	91,633	77,594	71,035	76,000
강력범	소 계	1,928	3,016	3,182	3,106	3,289	2,790	2,521	3,158	2,713	3,343
	흉악범	1,094	1,427	1,608	999	1,268	1,104	786	594	506	483
	성폭력	834	1,589	1,574	2,107	2,021	1,686	1,735	2,564	2,207	2,860
폭력범	소 계	23,275	34,067	29,488	23,276	22,233	32,774	22,119	19,352	17,473	19,476
	공갈	562	1,046	1,495	1,422	1,509	2,827	1,127	1,974	1,285	1,499
	폭행·상해 등	22,713	33,021	27,993	21,854	20,724	29,947	20,992	17,378	16,186	17,977
재산범	소 계	33,659	39,688	45,774	40,478	37,978	47,605	45,735	36,271	32,068	33,088
	절도	28,839	33,073	38,494	33,534	31,380	37,256	33,029	26,047	21,170	22,534
	횡령 등	1,167	1,855	1,664	1,483	1,528	2,448	2,549	2,143	2,253	2,481
	장물	271	571	820	722	454	1,200	1,498	830	801	591
	사기	3,382	4,189	4,796	4,739	4,616	6,701	8,600	7,251	7,844	7,482
교통사범		21,893	27,666	18,138	13,842	11,523	12,103	9,845	9,216	8,567	9,259
저작권법 위반		2,338	20,272	7,720	275	318	759	446	249	260	146
기타		5,011	10,283	8,720	8,799	7,727	11,459	10,967	9,348	9,954	10,688

주 : 1) 흉악범 : 살인, 강도, 방화.

2) 폭행·상해 등 : 폭행·상해의 죄 + 폭력행위 등 처벌법(공갈죄 제외) + 기타.

3) 횡령 등 : 횡령 + 배임 + 손괴.

4) 교통사범 : 도로교통법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도주차량).

자료 : 대검찰청(2008~2017). 범죄분석.

최근 10년간 전과가 있는 소년범죄자의 비율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016년도 전과가 없는 소년범죄자의 비율은 54.2%인데 반해, 전과가 있는 소년범죄자의 비율은 45.8%로, 전과가 있는 범죄자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4범 이상 소년범의 비율이 2007년 6.9%에서 2016년 13.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소년범죄의 상습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교정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장차 소년강력범죄자로 나아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향후 재범률이 높은 소년범죄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정교육과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표 2-7〉 소년범죄의 전과별 현황

(단위 : 명, (%))

구분 연도	계	소계 (미상 제외)	전과없음	1범	2범	3범	4범 이상
2007년	88,104	81,090 (100)	55,543 (68.5)	11,540 (14.2)	5,332 (6.6)	3,090 (3.8)	5,585 (6.9)
2008년	134,992	114,699 (100)	79,285 (69.1)	15,476 (13.5)	7,553 (6.6)	4,299 (3.7)	20,293 (7.1)
2009년	113,022	102,573 (100)	65,990 (64.3)	15,103 (14.7)	7,637 (7.3)	4,799 (4.6)	10,429 (10.1)
2010년	89,776	82,368 (100)	50,830 (61.7)	12,091 (14.7)	6,546 (8.0)	4,070 (4.9)	8,831 (10.7)
2011년	83,068	75,666 (100)	45,047 (59.5)	11,391 (15.1)	6,254 (8.3)	3,900 (5.1)	9,074 (12.0)
2012년	107,490	96,728 (100)	56,527 (58.4)	14,403 (14.9)	7,669 (7.9)	5,001 (5.2)	13,128 (13.6)
2013년	91,633	82,548 (100)	44,502 (48.6)	12,388 (13.5)	6,782 (7.4)	4,552 (5.0)	14,324 (15.6)
2014년	77,594	70,648 (100)	40,996 (58.0)	9,853 (13.9)	5,244 (7.4)	3,429 (4.9)	11,126 (15.8)
2015년	71,035	62,705 (100)	43,980 (61.9)	8,636 (12.2)	4,518 (6.4)	3,110 (4.4)	10,791 (15.2)
2016년	76,000	67,433 (100)	41,173 (54.2)	8,444 (11.1)	4,493 (5.9)	2,978 (3.9)	10,345 (13.6)

자료 : 대검찰청(2008~2017). 범죄분석.

최근 10년간 소년범의 재범기간을 보면, 1년 이내 재범을 하는 비율이 가장 많고, 3개월 이내, 1개월 이내, 6개월 이내 순으로 재범을 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년범의 재범기간이 점차 짧아지는 것으로 보아 재범자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

〈표 2-8〉 소년범의 재범기간

(단위 : 명, (%))

연도	구분	계	1개월 이내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3년 초과
2007년		25,525 (100)	2,423 (9.5)	3,120 (12.2)	2,901 (11.4)	9,528 (37.3)	3,651 (14.3)	2,336 (9.2)	1,566 (6.1)
2008년		35,397 (100)	3,585 (10.1)	4,443 (12.6)	4,123 (11.6)	13,506 (38.2)	5,163 (14.5)	2,793 (7.9)	1,784 (5.0)
2009년		36,532 (100)	4,584 (12.6)	5,307 (14.5)	4,578 (12.5)	13,766 (37.7)	4,758 (13.0)	2,485 (6.8)	1,054 (2.9)
2010년		31,191 (100)	3,467 (11.1)	5,970 (19.1)	4,381 (14.0)	10,408 (33.4)	4,069 (13.0)	2,018 (6.5)	878 (2.8)
2011년		30,261 (100)	4,415 (14.6)	5,692 (18.8)	4,132 (13.7)	9,684 (32.0)	3,750 (12.4)	1,817 (6.0)	771 (2.5)
2012년		44,319 (100)	6,615 (14.9)	8,011 (18.1)	5,897 (13.3)	13,702 (30.9)	4,908 (11.1)	2,724 (6.1)	2,462 (5.6)
2013년		41,032 (100)	5,634 (13.7)	6,943 (17.0)	5,906 (14.4)	12,564 (30.6)	5,235 (12.8)	3,100 (7.6)	1,650 (4.0)
2014년		32,265 (100)	4,121 (12.8)	5,160 (16.0)	4,807 (14.9)	9,834 (30.5)	4,645 (14.4)	2,514 (7.8)	1,184 (3.7)
2015년		30,248 (100)	3,781 (12.5)	4,825 (16.0)	4,290 (14.2)	9,142 (30.2)	4,289 (14.2)	2,702 (8.9)	1,219 (4.0)
2016년		30,368 (100)	4,306 (14.2)	5,330 (17.6)	4,243 (14.0)	9,420 (31.1)	3,765 (12.4)	2,232 (7.4)	1,072 (3.5)

자료 : 대검찰청(2008~2017). 범죄분석.

2. 소년범의 처리현황

최근 10년간 검찰의 소년범죄 처리내역을 보면, 소년범죄의 기소율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불기소율은 감소하고 있다. 소년부송치비율은 2011년까지는 증가하였으나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다. 2016년 소년범죄자 60,669명 중 기소유예 34.7%, 소년보호 송치 33.9%, 구공판 6.2%, 구약식 3.9% 등이다. 성인범죄와 비교했을 때 소년범죄의 경우 기소율이 낮은 반면에, 기소유예 등 불기소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는 소년범죄에 대하여는 성인범죄와 달리 선도 위주로 처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2-9〉 소년범죄 처리 현황

(단위 : 명, (%))

연도	계	기소			불기소					소년 보호 송치	가정 보호 송치	성매매 보호 송치	아동 보호 송치	참고인 중지	가소 중지
		소계	구공판	구약식	소계	혐의 없음	가소 유예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2007년	88,104 (100)	10,367 (11.8)	2,815 (3.2)	7,552 (8.6)	54,424 (61.8)	3,029 (3.4)	44,689 (50.7)	394 (0.4)	6,312 (7.2)	21,368 (24.3)	22 (0.0)	21 (0.0)	-	93 (0.1)	1,809 (2.1)
2008년	134,992 (100)	15,150 (11.2)	4,823 (3.6)	10,327 (7.6)	88,932 (65.9)	4,944 (3.7)	62,977 (46.7)	2,073 (1.5)	18,938 (14.0)	28,360 (21.0)	30 (0.0)	46 (0.0)	-	104 (0.1)	2,370 (1.8)
2009년	133,022 (100)	7,795 (6.9)	3,929 (3.5)	3,866 (3.4)	71,100 (62.9)	4,684 (4.1)	56,715 (50.2)	1,184 (1.0)	8,517 (7.5)	32,453 (28.7)	37 (0.0)	16 (0.0)	-	86 (0.1)	1,535 (1.4)
2010년	89,776 (100)	5,443 (6.1)	2,913 (3.2)	2,530 (2.8)	52,685 (58.7)	4,801 (5.3)	42,021 (46.8)	339 (0.4)	5,524 (6.2)	30,143 (33.6)	9 (0.0)	11 (0.0)	-	93 (0.1)	1,392 (1.6)
2011년	83,060 (100)	4,691 (5.6)	3,025 (3.7)	1,666 (2.0)	46,224 (55.7)	4,151 (5.0)	36,582 (44.0)	272 (0.3)	5,219 (6.3)	30,587 (36.8)	10 (0.0)	7 (0.0)	-	86 (0.1)	1,455 (1.8)
2012년	102,871 (100)	7,877 (7.7)	4,898 (4.8)	2,979 (2.9)	56,668 (55.1)	6,113 (5.9)	43,013 (41.8)	324 (0.3)	7,218 (7.0)	36,478 (35.5)	21 (0.0)	-	-	141 (0.1)	- (0.0)
2013년	88,062 (100)	8,758 (9.9)	5,293 (6.0)	3,465 (3.9)	47,486 (53.9)	5,925 (6.7)	34,914 (39.6)	202 (0.2)	6,445 (7.3)	29,641 (33.7)	35 (0.0)	2 (0.0)	-	108 (0.1)	2,032 (2.3)
2014년	62,010 (100)	6,408 (10.3)	3,885 (6.3)	2,523 (4.1)	32,991 (53.2)	4,343 (7.0)	22,995 (37.1)	152 (0.2)	5,501 (8.9)	20,588 (33.2)	45 (0.1)	-	-	103 (0.2)	1,875 (3.0)
2015년	56,050 (100)	6,252 (11.2)	4,034 (7.2)	2,218 (4.0)	30,198 (53.9)	4,518 (8.1)	19,623 (36.0)	105 (0.2)	5,952 (10.6)	18,216 (32.5)	119 (0.2)	-	-	54 (0.1)	1,211 (2.2)
2016년	60,669 (100)	6,113 (10.1)	3,755 (6.2)	2,358 (3.9)	32,235 (53.1)	4,815 (7.9)	21,044 (34.7)	136 (0.2)	6,240 (10.3)	20,597 (33.9)	147 (0.2)	-	4 (0.0)	34 (0.1)	1,539 (2.5)

자료 : 대검찰청(2008~2017), 범죄분석.

소년부 송치는 2007년도 24.3%에서 2011년 36.8%까지 증가하였다가 최근에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검찰단계에서 소년부송치율과 불기소처분율이 높은 것은 검찰 단계에서도 소년범죄에 대하여 비형사사건화하는 경향이 강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2016년도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33,738건으로, 검사 송치가 72.1%(24,319건)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찰서장 송치가 20.1%(6,788건), 법원 송치가 4.0%(1,357건), 다른 법원 소년부에서 이송된 경우가 2.7%(915건)이다.

〈표 2-10〉 소년보호사건 접수 인원 및 접수구분 인원

(단위 : 명, (%))

구분 연도	계	법원송치	검사송치	경찰서장 송치	타법원 소년부에서 이송	보호자등에 의한 통고
2007년	37,910 (100)	1,538 (4.1)	26,682 (70.4)	9,636 (25.4)	49 (0.1)	5 (0.0)
2008년	41,754 (100)	1,745 (4.2)	29,124 (69.8)	10,781 (25.8)	84 (0.2)	20 (0.0)
2009년	48,007 (100)	2,050 (4.3)	33,385 (69.5)	11,609 (24.2)	949 (2.0)	14 (0.0)
2010년	44,200 (100)	2,212 (5.0)	31,715 (71.8)	9,213 (20.8)	1,026 (2.3)	34 (0.1)
2011년	46,497 (100)	2,417 (5.2)	32,803 (70.6)	9,401 (20.2)	1,818 (3.9)	58 (0.1)
2012년	53,536 (100)	2,848 (5.3)	36,133 (67.5)	12,799 (23.9)	1,588 (2.9)	168 (0.3)
2013년	43,035 (100)	2,695 (6.3)	29,284 (68.0)	9,500 (22.1)	1,368 (3.2)	188 (0.4)
2014년	34,165 (100)	1,610 (4.7)	24,110 (70.6)	7,104 (20.8)	1,146 (3.3)	195 (0.6)
2015년	34,075 (1000)	1,494 (4.4)	24,527 (72.0)	6,756 (19.8)	989 (2.9)	309 (0.9)
2016년	33,738 (100)	1,357 (4.0)	24,319 (72.1)	6,788 (20.1)	915 (2.7)	359 (1.1)

자료 : 법원행정처(2008-2017). 사법연감.

소년법원의 판사는 검찰로부터 송부된 사건기록과 조사관의 조사의견을 종합하여 심리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심리도 비공개로 진행한다. 최근 10년간 소년보호사건 처분현황을 살펴보면, 보호처분의 비율은 다소 감소하고 반면에 불처분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검사의 불처분결정율은 2007년 5.8%에서 2012년 4.5%까지 감소하다가 2016년에 8.0%까지 증가한 반면에, 검사송치율은 2007년 0.2%에서 2016년 0.9%로 증가하였다. 타법원으로 송치되거나, 형사처분을 위해 검사에게로 다시 송치되는 비율이 4-5%를 기록하고 있어 소년사건처리절차의 지연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다.

〈표 2-11〉 소년보호사건의 처분현황

(단위 : 명(%))

연도	계	보호처분	불처분	심리불개시	타법원송치	검사송치
2007년	35,514 (100)	26,874 (75.7)	2,056 (5.8)	5,957 (16.8)	546 (1.5)	67 (0.2)
2008년	39,532 (100)	30,222 (76.4)	2,020 (5.1)	6,801 (17.2)	332 (0.8)	152 (0.4)
2009년	47,865 (100)	35,819 (74.8)	3,041 (6.4)	7,377 (15.4)	1,234 (2.6)	394 (0.8)
2010년	45,090 (100)	32,416 (71.9)	3,105 (6.9)	7,338 (16.3)	1,840 (4.0)	391 (0.9)
2011년	48,713 (100)	35,072 (72.0)	2,579 (5.3)	7,905 (16.2)	2,536 (5.2)	621 (1.3)
2012년	50,771 (100)	36,150 (71.2)	2,278 (4.5)	9,209 (18.1)	2,441 (4.8)	693 (1.4)
2013년	45,393 (100)	31,952 (70.4)	2,663 (5.9)	8,065 (17.8)	2,179 (4.8)	534 (1.2)
2014년	34,600 (100)	24,529 (70.9)	2,543 (7.4)	5,669 (16.4)	1,403 (4.0)	456 (1.3)
2015년	35,920 (100)	25,911 (72.1)	2,763 (7.7)	5,703 (15.9)	1,093 (3.0)	450 (1.3)
2016년	33,142 (100)	23,526 (71.0)	2,650 (8.0)	5,547 (16.7)	1,106 (3.4)	313 (0.9)

자료 : 법원행정처(2008-2017), 사법연감.

2007년 「소년법」 개정으로 현재 10가지의 보호처분이 운용되고 있다. 기존에 보호관찰과 병합되었던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이 독립처분으로 활용되고, 1개월 이내 소년원송치제도가 신설되었으며, 단기보호관찰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되었다. 그러나 현재 실시되고 있는 10가지 보호처분 중 실제로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것은 보호자감호위탁과 보호관찰, 소년원송치에 불과하다. 2016년 기준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는 사건(33,142건) 중 보호처분을 받는 비율은 71.0%(23,526건)이다.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보호처분 가운데 50% 이상이 1호 보호자감호위탁을 보호관찰과 병과하는 형태로 받고 있고, 소년원 송치가 10% 정도에 이르고 있다. 소년법원에서 행한 최근 5년간 보호처분의 현황을 보면, 보호처분의 비율은 2007년 75.7%에서 2016년 71.0%로 4.6%p 감소하였다. 보호처분 가운데 1, 2, 4호 병합처분의

비율이 9.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보호자감호위탁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2〉 소년보호사건의 유형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36,150(100)	31,952(100)	24,529(100)	25,911(100)	23,526(100)
1	4,222(11.6)	3,822(11.9)	2,960(12.1)	3,771(14.6)	3,142(13.4)
1+2	4,518(12.4)	3,522(11.0)	2,420(9.9)	2,609(10.0)	2,554(10.9)
1+2+3	1,040(2.8)	646(2.0)	445(1.8)	581(2.2)	557(2.4)
1+2+4	5,180(14.3)	4,020(12.5)	3,163(12.9)	3,696(14.3)	3,255(13.8)
1+2+5	1,118(3.0)	1,496(4.6)	1,026(4.2)	803(3.1)	1,009(4.3)
1+2+3+4	2,266(6.2)	1,557(4.8)	1,160(4.7)	1,627(6.3)	1,272(5.4)
1+2+3+5	1,831(5.0)	1,901(5.9)	1,541(6.3)	1,571(6.1)	1,413(6.0)
1+3	1,405(3.8)	1,297(4.0)	982(4.0)	1,133(4.4)	851(3.6)
1+3+4	2,087(5.7)	1,868(5.8)	1,844(7.5)	1,832(7.1)	1,194(5.1)
1+3+5	1,560(4.3)	1,843(5.7)	1,535(6.3)	1,082(4.2)	891(3.8)
1+4	3,054(8.4)	2,746(8.5)	2,354(9.6)	2,299(8.9)	1,923(8.2)
1+5	637(1.7)	900(2.8)	742(3.0)	647(2.5)	522(2.2)
2	51(0.1)	107(0.3)	70(0.3)	16(0.1)	59(0.3)
3	104(0.2)	125(0.3)	92(0.4)	49(0.2)	87(0.4)
4	103(0.2)	91(0.2)	63(0.3)	40(0.2)	154(0.7)
4+6	56(0.1)	22(0.0)	39(0.2)	46(0.2)	33(0.1)
5	71(0.1)	41(0.1)	32(0.1)	19(0.1)	27(0.1)
5+6	1,164(3.2)	1,150(3.5)	834(3.4)	883(3.4)	1,063(4.5)
5+8	2,607(7.2)	1,879(5.8)	1,257(5.1)	1,316(5.1)	1,012(4.3)
6	14(0.0)	13(0.0)	9(0.0)	2(0.0)	5(0.0)
7	195(0.5)	149(0.4)	183(0.7)	141(0.5)	105(0.4)
8	7(0.0)	3(0.0)	-	5(0.0)	3(0.0)
9	1,206(3.3)	1,153(3.6)	812(3.3)	794(3.1)	770(3.3)
10	1,169(3.2)	1,252(3.9)	813(3.3)	866(3.3)	770(3.3)
병과 기타	485(1.3)	349(1.0)	153(0.6)	83(0.3)	855(3.6)

자료 : 법원행정처(2013-2017). 사법연감.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10년간 19세 미만자의 제1심 소년형사사건의 재판현황을 보면 2011년까지는 집행유예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2012년과 2013년에는 부

정기형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년형사사건에서 사형과 무기형이 선고되는 사례는 거의 없고, 정기형도 매우 낮은 비율로 선고되고 있다.

2016년에 종국처리된 소년범 3,242명 중 사형과 무기형이 선고된 사례는 없었고, 부정기형이 697명(21.5%)으로 가장 높았고, 집행유예가 395명(12.2%), 벌금형이 94명(2.9%), 정기형이 1명(0.0%) 순으로 나타났다. 정기형과 집행유예의 비율은 점차 줄어드는 반면에 소년부 송치와 부정기형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표 2-13〉 연도별 제1심 형사사건 재판결과

(단위 : 명(%))

구분 연도	계	사형	무기	정기형	부정기형	집행 유예	벌금	선고 유예	무죄	소년부 송치	기타
2007년	4,151 (100)	-	-	10 (0.2)	671 (16.2)	1,129 (27.2)	362 (8.7)	1,978 (47.7)			
2008년	5,026 (100)	-	1 (0.0)	215 (4.3)	531 (10.6)	1,504 (29.9)	554 (11.0)	2,222 (44.2)			
2009년	6,160 (100)	-	-	462(7.5)	587 (9.5)	1,828 (29.7)	681 (11.1)	93 (1.5)	20 (0.3)	1,971 (32.0)	518 (8.4)
2010년	5,294 (100)	-	-	472(8.9)	503 (9.5)	1,577 (29.8)	590 (11.1)	85 (1.6)	25 (0.5)	1,584 (29.9)	458 (8.7)
2011년	3,499 (100)	-	-	14(0.4)	492 (14.1)	610 (17.4)	133 (3.8)	24 (0.7)	10 (0.3)	1,958 (56.0)	258 (7.3)
2012년	4,377 (100)	-	-	7(0.2)	804 (18.4)	557 (12.7)	118 (2.7)	28 (0.6)	20 (0.5)	2,561 (57.4)	327 (7.5)
2013년	4,268 (100)	-	-	3(0.1)	676 (15.8)	407 (9.5)	15 (0.4)	3 (0.1)	12 (0.3)	2,689 (63.0)	321 (7.5)
2014년	3,574 (100)	-	-	14(0.4)	634 (17.7)	405 (11.3)	110 (3.1)	15 (0.4)	7 (0.2)	2,082 (58.3)	307 (8.6)
2015년	3,516 (100)	-	-	7 (0.2)	630 (17.9)	440 (12.5)	102 (2.9)	18 (0.5)	18 (0.5)	1,981 (56.3)	320 (9.1)
2016년	3,242 (100)	-	-	1 (0.0)	697 (21.5)	395 (12.2)	94 (2.9)	15 (0.5)	8 (0.2)	1,721 (53.1)	311 (9.6)

출처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2008-2017).

제4절 우리나라 소년강력범 대응체계의 문제점

1. 초기비행에 대한 개입 부족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년사법처리에 있어서 초기단계의 개입으로는 불처분이 대부분이고 경찰단계와 검찰단계에서 개입한다고는 하나, 몇시간 동안의 교육이수를 통한 훈방이나 기소유예가 대부분이다.

현재 경찰에서 선도조건부 훈방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나, 프로그램 교육에 참여하는 대상은 경찰단계에 진입한 대상 중 5,000여명에 불과하고, 대부분 어떠한 개입 없이 가정으로 돌려보내지고 있다. 전문화되고 통일된 프로그램이 없이 각 지역 지방경찰청의 상황에 따라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달라서 지역의 인적 네트워크나 예산상황에 따라 달리 운영된다.

검찰단계에서 실시되고 있는 조건부 기소유예도 50% 이상이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이나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대안교육이다. 비행초기단계에 있는 청소년 교육기관으로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 유일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비행예방센터의 교육은 대부분 단기교육(8시간~4.5일 교육 위주)이고, 교육 이후 비행노출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학교 및 가정과 지속적 연계가 되어야 하나, 이러한 측면이 부족하여 단발성 교육에 그치고 있다.

2. 소년강력범의 비행원인이 되는 가정의 문제 해결대책 부족

소년강력범죄자의 범죄원인을 보면, 부모의 관심 부족과 잘못된 훈육방식(아동학대,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경우가 많다. 소년강력범죄자에 대한 처우에 있어서 소년강력범죄자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 대한 개입을 위해 보호자교육이나 가족참여프로그램이 수반되어야 한다.

초기비행시 Wee센터 및 상담센터 등 청소년예방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부모교육을 강조하고 있긴 하나,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고 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부모교육은 4시간에서 8시간 교육이 위주인 경우가 많아 부모의 훈육방식과 관심을 유도하는 데 부족하다. 법무부 산하 소년원이나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가족캠프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장기간 지속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3. 초기비행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감독의 한계

현행 소년사법에서는 초기비행자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실시하고 있다. 보호관찰단 계에서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비행원인을 분석하여 해당 소년의 특성에 맞는 관리감독이 실시되어야 한다. 그런데 보호관찰소에서 실시되는 보호관찰은 재범위험성이 높은 자와 일반대상자에 대한 구별기준 없이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대상자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⁷⁾ 그리고 보호관찰관 1인이 청소년 134명을 감독하고 있는 현실에서 집중적인 면담과 지도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들로 인해 최근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소년원에서의 처우에 있어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소년원은 비행정도가 보다 심화된 대상자를 중심으로 교과교육, 직업훈련, 인성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소년원 수용의 과밀화현상이 심각하여, 2017년 소년원 수용정원이 1,250명인데 반해, 2017년 현재 수용인원 1,726명에 이르고 있어, 140% 과밀수용상태에 있다. 서울소년원은 185%, 안양소년원은 171%, 부산소년원은 146%로 과밀화되어 있어 수용기간 중 집단생활로 인한 마찰과 인권적 처우에 있어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최근 소년원에 수용되는 정신질환자 비율이 늘어나면서 이들이 소년원 내에서 규율을 위반하는 사례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⁸⁾ 이로 인한 교정교육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소년원 수용방식 변화를 통해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여, 체계적인 교정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부처간 정보공유 부족으로 인한 문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경우 대상소년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대상이고 보호관찰

7) 안병경, “소년 강력범죄 재발방지 대책”, 소년강력범죄 대책과 입법 개선방안 공청회 자료집, 2017, 34쪽.

8) 권수진/유진, 정신질환 소년원생의 효과적인 처우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32쪽.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년사법체계 내에서도 초기비행당시 보호관찰소와 경찰간에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감독에 실패하였다. 관련부처간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각 단계별로 비행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나 관련사항이 다른 부처내 기관과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아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소년강력범의 경우 대부분 열악한 가정환경 등에 노출되어 있는바 소년강력범의 재비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행력의 제거 뿐만 아니라 주거나 학업, 취업, 의료 등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보호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소년강력범에 대한 대책 대부분은 소년범의 비행력 제거에만 초점을 맞출 뿐 지원을 위한 노력은 부족한 현실이다. 소년강력범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관리를 위해서는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범정부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원이 필요한데 관련 기관별로 분절적인 관리만 이루어지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외국의 소년강력범 대응체계

이승현 · 박성훈

외국의 소년강력범 대응체계

제1절 일본의 소년강력범 대응체계

1. 일본의 소년사법 역사

일본은 1900년에 감화법이 제정되었고 1908년 형법 제정 이후 소년범죄의 증가 등을 배경으로 1922년에 구소년법(舊少年法)이 제정되었다. 구소년법은 미국법의 영향을 받아 발전되었고, 일본의 소년법원은 사법기능과 복지기능의 조화를 목표로 하여 소년사법의 전문화를 추구하였다. 일본소년법의 특징은 그 대상을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으로 구분하고, 검사선의제를 채택하였으며, ‘소년법원’이라는 기관이 마련되었다.⁹⁾

1946년 일본국 헌법의 공포에 따라 연합국군최고사령관총사령부(GHQ: General Headquarters)의 영향으로 1948년에 신소년법(新少年法)이 제정되었다. 신소년법은 ① 소년심판소를 폐지하고 가정법원이 소년사건을 담당하도록 하고, ② 검사선의주의를 부정하고 모든 사건을 가정법원에 송치하는 전건송치주의를 취하고, ③ 소년법의 적용연령을 18세 미만에서 20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¹⁰⁾

이후 미국의 Gault 판결을 계기로 일본에서도 적법절차 보장이 주장되기 시작하였고, 流山中央고등학교 방화미수사건에서 團藤판사가 비행사실의 인정에 헌법상의 적법절차가 요구된다고 판시하였다.

9) 高内壽夫, “少年法の理念”, 소년법연구 제2호, 2007, 44頁.

10) 守山 正/後藤 弘子, ビギナーズ少年法, 成文堂, 2017, 62頁.

流山사건¹¹⁾

流山中央고등학교 방화사건은 고교 3학년 재학 중에 ① 수인이 공동으로 기물을 손괴하고, ② 다른 사람과 공모한 다음 라이터로 방화하여 학교건물을 불태우고자 하였지만 미수로 끝났다고 하는 송치사실로 심판에 부쳐졌다. 심판정(원원심)에서 소년은 ①은 인정하였지만 ②는 철저히 다투었고, 부침인도 그러한 전제에서 목격증인 2명 등의 증인신청을 하였고, 그 밖의 증거도 제출하였다. 법원은 알리바이증인 1명과 공범자인 증인 3명을 취조하였지만, 목격자 2명에 관해서는 보복의 우려가 있다는 호소를 고려하여, 소년·부침인에게 입회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참고인으로서 취조하는 데에 그쳤고, ①②의 사실을 인정하여 소년을 보호관찰에 부쳤다. 이에 대하여, 부침인은 절차보장 위반 등을 이유로 항고하였지만, 원심은 증거조사는 법원의 합리적 재량에 기하여 행해지면 되므로, 원원심에 잘못은 없다고 판단하였다. 부침인이 원원심의 절차는 “합리적 재량”을 일탈하여 헌법 제31조를 위반하였고, 원 결정에도 동일한 헌법해석의 잘못이 있다고 하여 재항고에 이른 사건이다.

流山사건 이후 실무화 작업이 진행되어, 법무성을 중심으로 소년법 개정작업이 진행되어 1970년에 「소년법 개정요강(少年法改正要綱)」¹²⁾이 발표되었는데, 이는 ① 18세 이상 20세 미만을 청년으로 보아 형사처분의 대상으로 하고, ② 검사에게 기소송치의 선택권을 주는 검사선의제를 취하며, ③ 심판에서 검사의 의견진술권과 입회권을 인정하며, ④ 적법절차의 보장을 강화하여 형사정책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 안은 법원과 변호사협회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고, 법제심의회에 의하여 1977년 개정요강을 완화하는 형태의 「중간답신(中間答申)」 형태로 마무리되었다¹³⁾.

1993년 발생한 山形사건과 1997년의 神戸아동살인사건 등 소년에 대한 흉악사건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소년심판절차 및 소년사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고, 소년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각종 시책이 나오기 시작했다.

11) 最決昭和 58.10.26 刑集 第37卷 8号, 1260頁.

12) 「소년법 개정요강」은 기본적으로 연장소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형사처분을 하고 그 보호이념을 형벌의 방향으로 대폭 전환하는 것이고, 18세 미만의 소년사건에 관해서도 검사선의주의를 도입하여 보호이념을 후퇴시키고 심판절차의 기본구조를 대심구조로 바꾸는 것을 그 핵심으로 하고 있다(猪瀬慎一郎, “少年審判制度の基本問題”, 少年法のあらたな展開, 有斐閣, 2002, 65頁).

13) 澤登俊雄, 少年法入門[第3版], 有斐閣, 2005, 239頁.

山形사건¹⁴⁾

山形 매트 사건은 법원에 큰 충격을 주었다. 지금까지도, 草加 사건 등 중대한 살인 사건의 사실인정이 다투어진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고, 사회적으로는 크게 보도되지 않은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다수의 부인 사건은 있었으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山形 매트 사건만이 심하게 사실인정을 다투는 사건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山形 매트 사건”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강한 충격을 주고 있다. 첫째, 본래 소년심판이 예정하고 있는 단기간의 사실인정 및 요보호성의 판정에 의한 보호프로그램의 처우결정이라는 것으로부터 크게 동떨어져, 단기간에 사실인정에 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둘째, 피의자로 된 소년들이 모두 중학생이고, 제도적으로 검찰관송치가 불가능하였던 것이다. 셋째, 소년심판이 장기화된 원인 및 소년심판관의 사실인정을 필요 이상으로 곤란하게 한 원인이 피의자로 된 소년들의 부침의 변호적인 활동 그 자체에 있었던 것으로 되었던 것이었다. 넷째, 다수의 공범사건의 사실인정을 행하는 경우, 단독의 소년심판관이 행할 수 있는 사실인정의 능력이나 한도를 초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점이다. 다섯째, 사실인정을 행하더라도, 소년심판의 결론이 나뉘어, 아이들에게 있어서도 사회적으로 납득이 가는 상황이 아니었다.

2000년 개정소년법(평성12년 법률 제142호)에서는 주로 ① 소년사건 처분방식의 재검토, ② 소년심판의 인정절차의 적정화, ③ 피해자에 대한 배려의 충실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14세·15세 소년에 의한 흉악범죄가 빈발하자 개정법에서는 형사처분 가능연령을 16세에서 14세로 인하하여(제20조 제1항), 14세·15세의 소년에 대하여도 가정법원의 조사결과 형사처분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소년법 제20조 제1항). 행위시 16세 이상 소년이 고의의 범죄행위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처분 이외의 조치를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검사 송치결정을 하도록 하는 ‘원칙역송(原則逆送)’제도를 마련하였다(제20조 제2항). 또한 행위시 18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무기형의 완화를 필요한 것에서 재량적인 것으로 변경하였다(제51조 제2항).¹⁵⁾

2003년 12월에 내각총리대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소년육성추진본부가 마련한 ‘소년육성대책대강(少年育成対策大綱)’, 2003년 12월 범죄대책각료회의에서 채택된 ‘범죄에 강한 사회의 실현을 위한 행동계획(犯罪に強い社会の実現のための行動計画)’,

14) 井上博道, 裁かれる少年たち: 少年審判と「改正」少年法, 大月書店, 2001, 98-99頁.

15) 守山 正/後藤 弘子, ビギナーズ少年法, 成文堂, 2017, 65-66頁.

2004년 9월 법무대신의 소년법 개정에 관한 자문 등 과정을 통해 소년법 개정에 대한 의견이 모아졌고, 2005년 3월에 국회에 소년법 개정법률안이 상정되었다¹⁶⁾.

2007년 개정소년법(평성19년 법률 제68호)에서는 촉법소년(14세 미만자로 형벌법령에 저촉행위를 한 소년) 사건에 대하여 경찰의 조사권한이 정비되고(제6조의2~제6조의7), 소년원 송치연령의 하한이 '14세 이상'에서 '12세 이상'으로 인하되었다(일본 소년원법(소화23년 법률 제169호) 제2조). 또한 보호관찰에 부처진 소년이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 대한 조치가 마련되고(소년법 제26조의4, 범죄자예방갱생법(犯罪者予防更生法, 소화24년 법률 제142호) 제41조의3), 일정한 중대사건을 대상으로 관호 조치가 실시된 소년에 대하여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보조인을 부칠 수 있도록 하였다(제22조의3 제2항).¹⁷⁾

2008년 개정소년법(평성20년 법률 제71호)에서는 소년심판에서 범죄피해자 등의 권리이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 등에 의한 기록의 열람 및 등사 범위의 확대(제5조의2 제1항), 피해자 등 신청에 의한 의견청취 대상자의 확대(제9조의3), 일정한 중대사건의 피해자 등이 소년심판을 방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신설(제22조의4), 가정법원이 피해자 등에 대하여 심판상황을 설명하는 제도의 신설(제22조의6) 등이 이루어졌다. 연령의 하한을 14세로 하고 있으나 가정법원이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에 14세 미만의 소년에 관계되는 사건에 대해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년원송치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소년의 복지를 해하는 성인 형사사건에서 보다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그 관할이 가정법원에서 지방법원 등으로 이관되었다(제37조 및 제38조).¹⁸⁾

2014년 개정소년법(평성26년 법률 제23호)에서는 가정법원의 재량으로 국선부침인 제도 및 검사관여제도의 대상사건 범위가 확대되었다(제22조의2 제1항 및 제22조의3 제2항). 무기형의 완화형으로서 선고될 수 있는 유기형의 상한이 '15년'에서 '20년'으로 인상되었고(제51조 제2항), 가석방을 할 수 있는 기간도 '3년'에서 그 '형기의 1/3'로 변경되었다(제58조 제1항 제2호). 또한 소년법에서는 소년에 대하여 유기징역 또는

16) 若穂井透, 少年法改正の争点-司法福祉と児童福祉の課題は何か-, 現代人文社, 2006, 2頁 이하; 鮎川潤, “少年法改正とエビデンス・ベースト・ポリシー”, 犯罪社會學研究 第30号, 2005, 27-30頁.

17) 守山 正/後藤 弘子, ビギナーズ少年法, 成文堂, 2017, 73-78頁.

18) 守山 正/後藤 弘子, ビギナーズ少年法, 成文堂, 2017, 79-81頁.

금고의 실행을 선고하는 경우에 부정기형을 선고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 형기 및 단기의 상한이 각각 10년과 5년에서 15년과 10년으로 인상되었다(제52조 제1항).¹⁹⁾

2. 일본 소년사법에서의 연령기준

가. 일본 법령상 연령기준

일본 법령상 소년은 각각의 법률에서 ‘미성년자’, ‘아동’, ‘청소년’ 등으로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 소년법상 소년이 ‘20세 미만의 자’를 의미하고 있고, 형법상 형사책임 연령은 ‘만 14세’로 보고 있다. 아동복지 관련 법률에서는 아동을 ‘8세 미만자’로 보고 있다.

〈표 3-1〉 일본 법령상 연령기준²⁰⁾

법률명	명칭	연령 구분
소년법	소년	20세 미만자
형법	형사책임연령	만 14세
아동복지법	아동	18세 미만자
아동학대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아동	만 18세 미만자
학교교육법	취학아동	만 6세 이상
민법	미성년자	20세 미만자
근로기준법	연소자	18세 미만자
도로교통법	아동	6세 이상 13세 미만자
	유아	6세 미만자
미성년자흡연금지법 미성년자음주금지법	미성년자	20세 미만자
풍속영업 등의 규제 및 업무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	연소자	18세 미만자
아동매춘, 아동포르노에 관한 행위 등의 처벌 및 아동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	18세 미만자

19) 守山 正/後藤 弘子, ビギナーズ少年法, 成文堂, 2017, 82-83頁.

20) 各種法令等による「青少年」の呼称及び年齢区分

(http://www.pref.oita.jp/uploaded/life/1028527_1199837_misc.pdf, 2017.12.10. 최종검색)

나. 일본 소년법상 연령기준

일본 소년법은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반으로 비행 있는 소년에 대하여 성격의 교정 및 환경의 조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함과 동시에 소년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일본의 소년법 적용대상이 되는 소년은 20세에 이르지 않은 자이고(제2조 제1항), 이 연령은 처분·심판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사형과 무기형의 완화(제51조)나 사람의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제60조) 등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행위시의 연령을 그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있다.²¹⁾ 소년법은 20세 미만의 범죄소년,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우범소년을 그 대상으로 하되(소년법 제3조 제1항),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의 경우 연령의 하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범죄소년(犯罪少年)’이란 범죄행위를 한 14세 이상 20세 미만을 소년을 의미하고, ‘촉법소년(触法少年)’은 형법법령에 저촉되지만 형사책임연령에 도달하지 않아 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 행위를 한 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한다. 그리고 ‘우범소년(虞犯少年)’은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는 아니하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서 이탈하였거나, 범죄성이 있는 자 또는 부도덕한 자와 교제하거나 유해한 장소에 출입하였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하는 행위를 하는 성벽이 있는 등의 우범사유가 있고 그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에 죄를 범하거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을 말한다(제3조 제1항 제3호). 일본 소년법상 비행소년의 구분으로 범죄소년과 촉법소년이라는 개념은 연령과 범죄구성요건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행위에 의해 결정되지만, 우범소년이라는 개념은 객관적으로 우범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요건으로 하면서도 소년의 성격과 환경에 비추어 범죄위험성이 예측하는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²²⁾

14세 미만자에 대하여는 도도부현지사 또는 아동상담소장으로부터 송치를 받은 때에 한하여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동조 제2항). 한편 비행소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비행의 전단계라고 할 수 있는 문제행동, 즉 흡연, 심야배회, 불량친구와의 교제, 약물남용, 가출 등의 경험이 있는 소년을 ‘불량행위소년’이라고 하여 경찰의

21) 川出敏裕, 少年法, 有斐閣, 2015, 76-77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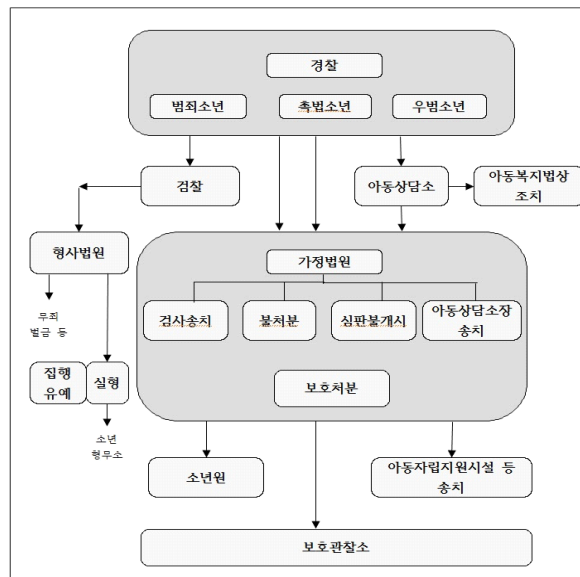
22) 田宮 裕//廣瀬 健二, 注釈少年法 有斐閣, 2017, 78-79頁 .

보호활동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단순한 방임소년과 요보호소년은 아동복지법 제44조에 의거하여 교호원에 입원시킬 수 있고, 소년경찰활동요강 제2조 제7호 및 제32조에 의해 주의 및 조연 등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일본에서 비행소년에 대한 사건은 원칙적으로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결정한다. 다만, 범행시 16세 이상인 소년이 고의의 범죄행위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검사송치결정을 하고 있다.

3. 일본의 소년사법절차

일본에서 소년사법절차는 기본적으로 ‘전건송치주의(全件送致主義)’를 취하고 있다. 경찰 및 검찰은 소년의 피의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한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건을 가정법원에 송치하도록 하고 있다(제41조 및 제42조). 다만, 14세 미만 소년에 대하여는 도도부현지사 또는 아동상담소장으로부터 송치를 받은 경우에 가정법원의 심판에 부칠 수 있다(제3조 제2항).²³⁾



[그림 3-1] 일본의 소년사법절차도²⁴⁾

23) 丸山雅夫, 少年法講義, 成文堂, 2016, 68-69頁.

24) 守山 正/後藤 弘子, ビギナーズ少年法, 成文堂, 2017, 8頁.

1) 심리불개시 결정 및 불처분 결정

소년법원은 조사결과 심리에 부칠 수 없거나 심리에 부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리를 개시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소년법 제19조 제1항). 심리불개시 결정은 비행사실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법률상 심판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심판을 개시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결정이다. 즉, 소년의 사망소재지 불명에 의해 사실상 심판의 개시가 불가능한 경우, 요보호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극히 미약하여 보호처분·아동복지법상의 조치·형사처분 등이 불필요한 경우에 이루어진다. 그밖에 소년법원은 심리 결과 보호처분에 부칠 수 없거나 보호처분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취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동법 제23조 제2항).

2) 보호처분

일본 소년법에서는 형법상 형벌에 의해 사회적 비난이 가능한 범죄소년에 대하여도 보호처분을 중심으로 교육적 처우를 우선시하는 ‘보호처분 우선주의(保護處分 優先主義)’를 취하고 있다. 보호처분으로는 보호관찰, 아동자립지원시설·아동양호시설에 송치, 소년원 송치가 있다(제24조 제1항).

(1) 보호관찰

보호관찰 결정은 소년이 일상적인 생활을 계속하면서 보호관찰소에 의한 지도감독 및 보도원호에 의해 개선 및 갱생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처우이다(제24조 제1항 제1호). 담당기관은 소년의 주거지·현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이지만, 실제로는 보호관찰관이 주재관으로 되고, 보호사가 담당자로 되어 실시되고 있다. 일반적인 준수사항으로는 ① 일정한 주거에 거주하여 정업에 종사할 것, ② 선행을 유지할 것, ③ 범죄성이 있는 자 또는 소행이 불량한 자와 교제하지 않을 것, ④ 장기여행 시에는 미리 허가를 받을 것 등을 요구한다. 그 기간은 20세에 달할 때까지이지만 그 소년이 20세에 달할 때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 그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한다.

(2) 아동자립지원시설 송치

아동자립지원시설에의 송치결정은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기관 또는 아동상담소 등에의 조치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루어진다(제18조 제1항). 또한 지사 또는 아동상담소장으로부터 강제조치가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는 기한을 정하여 보호의 방법 및 그 외의 조치를 지시하여 지사 또는 아동상담소장에게 사건을 송치할 수 있다(제18조 제2항).

아동양호시설 송치결정은 아동복지법상 교호원이나 양호시설에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교호원(敎護院)이란 과거에 감화원(感化院)이라고 불리던 시설로, 불량행위를 하거나 또는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을 수용하여 교육보호활동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44조). 아동양호시설이란 기존에는 고아원이라고 불리던 시설을 말하였으나, 현재는 고아를 제외하고 18세 미만의 보호자가 없는 아동, 학대받는 아동, 그 외의 환경상 양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양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의미한다(아동복지법 제41조). 아동복지법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 강제조치를 수반하지 않으나 보호처분에서는 강제적으로 송치하여 입원한다.

(3) 소년원 송치

소년원 송치란 보호처분의 하나로서 국가시설인 소년원에 수용하여 교정교육을 실시하는 조치이다(제24조 제1항 제3호). 소년원은 소년의 연령, 심신의 상황, 비행경향에 따라 초등, 중등, 특별, 의료소년원으로 구분된다(소년원법 제2조). 소년원에서의 집행기간은 원칙적으로 20세 달할 때까지이나 적어도 1년은 재원하여야 하며, 재원 중 누진처우의 최고단계에 달하여 성적이 양호하면 소년을 가퇴원시켜 보호관찰에 부칠 수 있고 교정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퇴원시킬 수 있다.

3) 검사 송치

검사 송치결정은 조사 결과 본인이 20세 이상이 판명된 때(제19조 제2항)와 조사 결과 죄질 등에 비추어 형사처분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제20조)에 가능한데 이를 ‘검사 송치’ 또는 ‘역송(逆送)’이라 한다. 형사처분은 원칙적으로 가정법원이 형사처분

에 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검사 송치의 절차에 따라 검사에게 송치된 사건에 대하여 ‘역송’할 수 있고, 양형판단에 있어서도 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부정기형 등 다양한 배려 규정이 있다(제51조, 제52조, 제58조~60조).²⁵⁾

4. 일본의 강력범죄자 대응실태

가. 경찰의 소년사건처리

경찰 통계에 따르면, 형법범 소년의 검거인원은 2004년부터 매년 감소하고 있고, 2016년에는 31,516명(전년대비 19.0% 감소)이었다. 또한 이 중 살인, 강도, 방화, 강간 등을 저지른 흉악범의 검거인원도 2010년 이후 큰 변화가 없었고, 2013년부터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이는 청소년인구의 감소의 영향도 있지만, 형법범인 소년의 인구비(동 연령층 인구 1000명당 검거인원)도 2010년 이후 7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소년인구 이외의 요인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²⁶⁾

나. 형사법원에서의 심리

2015년 검찰에 송치된 사건 수는 2,874건이고, 이 중 2,126건(74%)가 약식기소로 벌금형에 처해졌고, 이들 대부분은 교통사범이다. 나머지 사건 중 연령초과 등을 제외하고 220건(7.7%)가 일반형사사건으로 제1심법원(지방법원)에서 공소 제기되었고, 이 중에는 살인, 상해치사죄, 강도치사상죄 등 재판원재판 대상사건도 포함되어 있다.²⁷⁾

소년형사사건에서 양형은 소년법 제52조에 의해 처단형이 장기 3년 이상인 죄에 대하여 교육적 관점에서 상대적 부정기형을 과하는 것이 기본이고, 단기 최장 5년, 장기 최장 10년의 범위 내에서 선고되고 있다. 소년형으로 정기형이 선고된 것은 기본적으로 이들 이외에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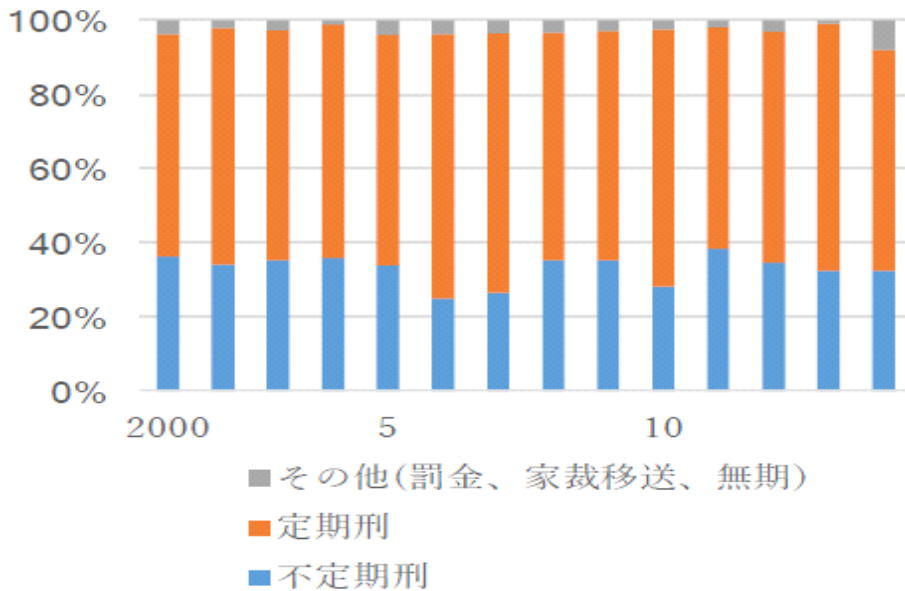
25) 武内謙治, 少年法講義, 日本評論社, 2015, 414-415頁.

26) 警察庁生活安全局少年課, 平成28年における少年非行、児童虐待及び児童の性的搾取等の状況について, 2017, 1頁 (https://www.npa.go.jp/safetylife/syonen/hikou_gyakutai_sakusyu/H28.pdf, 2017.11.25. 최종검색); 内匠舞, 少年法の適用年齢引下げをめぐる議論, 国立国会図書館 調査と情報 ISSUE BRIEF No.963, 2017, 10頁.

27) 山口直也, 少年の刑事「責任」論 - 日本法の立場から -, 日韓学術交流第9回大会「日韓少年法の未来...いま何が求められているか」, 2016, 2頁.

다. 소년에 대한 양형 동향

제1심법원에서 소년형이 선고된 현황을 보면, 2000년의 소년형은 151건이었고, 이 중 91건(60.3%)가 정기형, 55건(36.4%)이 부정기형이었고, 이후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소년형은 111건, 정기형 66건, 부정기형 36건이다.²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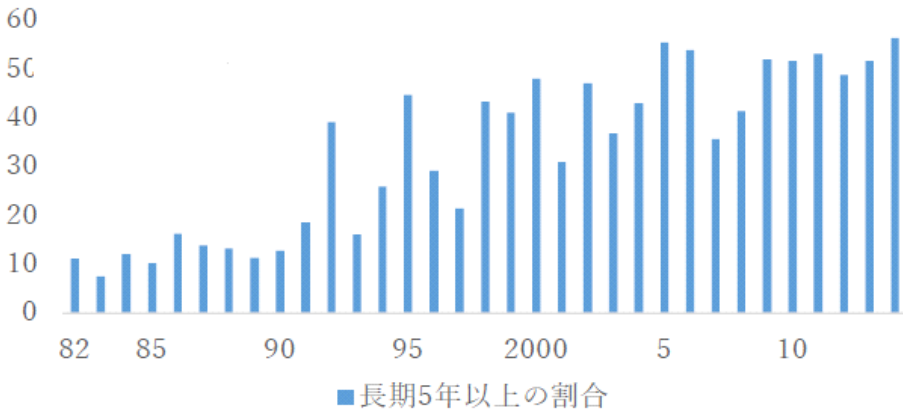


[그림 3-2] 일본의 소년범 양형추이²⁹⁾

부정기형의 형기를 보면, 장기 5년을 초과하는 형기가 선고된 비율이 1990년대 10%전후이었던다면, 2000년대 이후 증가하여 40%를 초과하고 있다. 소년형사사건에서 소년형의 선고는 최근 장기화가 진행되고 있고, 엄벌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28) 山口直也, 少年の刑事「責任」論 - 日本法の立場から -, 日韓學術交流第9 回大会 「日韓少年法の未来...いま何が求められているか」, 2016, 2頁.

29) 山口直也, 少年の刑事「責任」論 - 日本法の立場から -, 日韓學術交流第9 回大会 「日韓少年法の未来...いま何が求められているか」, 2016, 2頁.

[그림 3-3] 일본의 부정기형 현황³⁰⁾

라. 소년에 대한 사형

일본에서는 범행시 18세 또는 19세의 소년에 대하여 사형을 부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 않다. 일본에서 사형과형기준을 나타낸 1990년 永山사건 제2차 항고심판결 이래 현재까지 5건, 7명에 대한 사형판결이 내려졌다. 2016년 6월 16일에도 교제상대인 친구를 살해한 石巻사건에서 범행시 18세 7개월의 소년에 대하여 사형판결이 최고재판소에서 선고되었다(最決平26・6・16 最高裁ウェブサイト).³¹⁾

5. 일본의 최근 소년강력범죄 대응 동향

2015년 6월 「공직선거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公職選挙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2015년 법률 제43호)」가 개정되어, 선거권 연령이 만20세 이상에서 만18세 이상으로 인하되었다. 동법 부칙 제11조에서 민법과 소년법 기타 법령 규정에서도 검토한 후 필요한 법제상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성은 민법의 성년연령을 만20세에서 만18세로 인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30) 山口直也, 少年の刑事「責任」論 - 日本法の立場から -, 日韓学術交流第9 回大会「日韓少年法の未来...いま何が求められているか」, 2016, 2頁.

31) 山口直也, 少年の刑事「責任」論 - 日本法の立場から -, 日韓学術交流第9 回大会「日韓少年法の未来...いま何が求められているか」, 2016, 2-3頁.

그러나 소년법의 적용연령 인하에 대하여는 찬반이 나뉘고 있고, 법무성에 설치된 ‘청년에 대한 형사법제 기본방향에 관한 연구회(若年者に対する刑事法制の在り方に関する勉強会)’에서는 피해자유족 등이 인하에 찬성하는 반면, 소년의 갱생과 관련된 실무가 등이 반대의견을 내고 있다. 연구회의 결과를 토대로 金田勝年 법무대신은 2017년2월 소년법 적용연령을 18세 미만으로 인하하는 등에 대하여 법제심의회에 자문을 구하였다. 이어 법제심의회에 ‘소년법·형사법(소년연령·범죄자처우관계)부회(少年法・刑事法(少年年齢・犯罪者処遇関係)部会)’가 설치되고, 2017년 3월부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³²⁾

가. 자민당(自民党)의 의견

공직선거법 개정과 관련하여 자유민주당정무조사위원회는 2015년 9월 ‘성년연령에 관한 제언(成年年齢に関する提言)’을 작성하여 수상에게 제출하였다. 동 제언에서는 민법에서 정하는 성년연령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20세에서 18세로 인하하는 법제상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는 동시에, 소년법의 적용연령에 대하여도 국내법간 통일성과 이해의 편의성 등을 위한 관점에서 만18세 미만으로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하고 있는 기능에 대하여는 일정한 평가를 하지만, 18세 이상 20세 미만자를 포함한 청년 중 요보호성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보호처분에 상당한 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의 방식을 검토하는 것으로 하였다.³³⁾

나. 법무성 연구회의 의견

공직선거법 등 개정법 부칙 제11조의 취지와 민법의 성년연령에 대한 검토상황을 토대로 2015년 법무성은 소년법의 적용연령을 20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인하하는 것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해, 법무성 대신관방, 형사국, 교정국 및 보호국의 간부 14인과 형사정책 전문가인 대학교수 3인이 자문단으로 구성된 ‘청년에 대한 형사법제

32) 少年法・刑事法(少年年齢・犯罪者処遇関係)部会

(http://www.moj.go.jp/shingi1/housei02_00296.html, 2017.11.14 최종검색)

33) 内匠舞, 少年法の適用年齢引下げをめぐる議論, 国立国会図書館 調査と情報 ISSUE BRIEF No.963, 2017, 5頁.

기본방향에 관한 연구회'에서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7월말까지 총 10회의 회의를 개최하고 법 분야의 실무경험자와 연구자 외에, 사회·복지·교육·의료 등 관련분야 실무경험자와 연구자, 범죄피해자, 보도관계자 등 40명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였다. 2016년 12월 연구회 보고서를 공표하였다.³⁴⁾

이 보고서에서는 적용연령 인하에 대한 찬반의견에 대하여 공청회 결과를 기초하여 찬반논의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며, 인하할 경우를 예정하여 18세, 19세자를 포함한 '청년(若年者)'에 대하여 형사정책적 조치를 하는 것에 대하여도 검토하고 있다. 대상이 되는 청년의 범위에 대하여는 각 조치의 목적, 내용 등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지만, 시설내 처우를 충실하게 하기 위한 조치의 대상이 되는 청년의 범위에 관하여는 26세 미만자로 하는 것이 1안으로 고려되고 있는 등 대상을 넓게 설정하고 있다. 동 연구회 결과를 토대로 2017년 2월 金田법무대신이 소년법의 적용연령을 18세 미만으로 하는 것 등에 대하여 법제심의회에 자문하였고 이러한 결과를 취합하여 향후 연령인하에 대한 입장을 공표할 예정이다.³⁵⁾

다. 대안으로서 청년층 신설

찬반여론이 뜨거운 가운데, 소년법의 적용연령 중 18세와 19세에 대하여 요보호성의 정도에 따라 보호처분에 상당하는 조치를 받을 소 있도록 하는 제도의 마련이 검토되고 있다.³⁶⁾ 독일의 소년사법제도에 착안하여 일본에서도 소년법의 적용연령을 인하한 다음, 독일과 같은 청년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문제는 청년사건이 소년사건과 동일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누가 하는가이다. 청년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측에서는 이에 대한 판단은 이미 입구지원이라는 형식으로 지적장애인이거나 고령자에 대하여 기소유예와 마찬가지로 갱생보호시설 등에 보낼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검사가 하도록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³⁷⁾ 반면, 판단의

34) 若年者に対する刑事法制の在り方に関する勉強会取りまとめ報告書
(<http://www.moj.go.jp/content/001210649.pdf>, 2017.11.20. 최종검색)

35) 内匠舞, 少年法の適用年齢引下げをめぐる議論, 国立国会図書館 調査と情報 ISSUE BRIEF No.963, 2017, 6頁.

36) 内匠舞, 少年法の適用年齢引下げをめぐる議論, 国立国会図書館 調査と情報 ISSUE BRIEF No.963, 2017, 13頁.

37) 若年者に対する刑事法制の在り方に関する勉強会 「第1 回ヒアリング及び意見交換 議事録」 2015.

공정성 등을 위해 소극적 판단에 이른 경우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은 현저하기 때문에 사법기관 이외의 자에 의해 판단되는 것은 법치국가의 원칙상 위반되는 것이라고 보는 주장도 있다.³⁸⁾

제2절 미국의 소년강력범 대응체계

1. 미국 소년사법의 역사

가. 청소년과 성인의 처벌 동일시

18세기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청소년 범죄자는 성인 범죄자와 동일한 취급을 받았다. 통상적으로 7세 이하의 ‘어린아이(infants)’는 범죄의 고의성이나 범죄 능력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가급적 처벌을 하지 않았으나, 만일 재판에 붙여져 유죄가 인정되면 성인과 마찬가지로 교도소로 보내거나 사형을 시키기도 하였다.³⁹⁾

나. 소년과 성인의 차별화 시도

19세기 들어 미국 내에서 소년사법에 관한 운동이 시작되었는데, 그 뿌리는 16세기 유럽의 교육개혁운동에서 비롯되었다. 초기 개혁운동은 아이들을 성인의 축소모형이 아니라 아직 도덕적·인지적 발달이 덜 진행된 사람으로 보자는 것이었다. 1824년 소년에 대하여 유죄선고 후 성인과 분리하여 구금하는 시설인 소년원(Juvenile Reformatory)이 뉴욕주에 설립되었다. 1825년 청소년비행예방협회(the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Juvenile Delinquency)가 만들어져 비행청소년에 대한 주거, 교육, 재사회화를 위한 지원을 시작하였다. 곧 이러한 비행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전국의 주요 도시로 확산되었으나, 19세기 중반 무렵에 이르러 사설기관에서 여러 오남용 사례가

11.2., 14頁 (<http://www.moj.go.jp/content/001165704.pdf>, 2017.12.2. 최종검색).

38) 武内謙治, ドイツ少年司法における青年制度とその運用, 浅田和茂先生古稀祝賀論文集 下巻, 成文堂, 2016, 471頁.

39) NCJJ & OJJDP. Juvenile Offenders and Victims: 2014 National Report, Pittsburgh, PA: National Center for Juvenile Justice, 2014, p.84.

나타나 오히려 ‘소년교도소(youth prison)’라는 비판도 받아야 했다. 이에 따라 각 주에서 직접 비행청소년 시설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하기 시작하였다.⁴⁰⁾

미국에서 첫 번째 소년법원은 1899년 일리노이 주 쿡(Cook)카운티에서 시작되었다. 일리노이 주는 1899년 「소년법원법(The Juvenile Court Act)」을 제정하여 성인범죄자를 다루는 법원과는 분리된 소년법원을 처음으로 만들었다. 성인 범죄자와는 다른 방식으로 소년범죄자를 다루고 개입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는 이러한 이념은 소위 영국에서 시작된 ‘국친사상(parens patriae)’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소년법원의 설립 이념은 아이들은 아직 충분한 법적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 그리고 국가는 그들의 부모가 적절한 보호와 감독을 제공하지 못한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소년법원 이념의 핵심은 아이들에 대한 ‘복지(welfare)’이므로, 비행청소년은 법원의 자비로운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⁴¹⁾

1910년까지 32개 주에서 소년법원이 설립되었고 소년보호관찰이 시작되었다. 1925년에는 2개 주를 제외하고 모든 주에 소년법원이 설립되었다. 소년법원은 비행청소년을 단순히 처벌하기보다는 재활과 치료를 통해 그들이 건전한 시민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였다.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돕는 것은 소년법원 설립 법에 명시된 목표이다. 이러한 목표는 형사사법과 소년사법의 절차적·실질적 차이를 이끌어내었다. 소년법원이 설립된 이후 약 50년 간 대부분의 소년법원은 소년법의 적용대상을 18세 이하의 모든 청소년으로 하였다. 다만, 소년법원이 사건을 형사법원으로 이송한 사안에 대하여는 성인사건처럼 처리되도록 하였다. 형사법원에서의 이송에 대한 결정은 사안에 따라 ‘해당 소년과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best interests of the child and public)’, 그리고 ‘개별화된 정의(individualized justice)’에 입각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다.⁴²⁾

재판을 열지 말지를 변호사가 선택하는 형사절차와 달리 소년사건의 경우에는 소년법원이 재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형사절차에서의 기소와 달리 소년사건

40) NCJJ & OJJDP. Juvenile Offenders and Victims: 2014 National Report, Pittsburgh, PA: National Center for Juvenile Justice, 2014, p.84.

41) NCJJ & OJJDP. Juvenile Offenders and Victims: 2014 National Report, Pittsburgh, PA: National Center for Juvenile Justice, 2014, p.84.

42) NCJJ & OJJDP. Juvenile Offenders and Victims: 2014 National Report, Pittsburgh, PA: National Center for Juvenile Justice, 2014, p.84.

에서는 법적 요소는 물론 법외적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였다. 소년법원은 사건을 다룸에 있어 재판을 우회하는 비공식적인 재량권도 발휘할 수 있게 하였다. 법정에서 피고인 심문 역시 형사절차에서보다 훨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으며, 판사에 주어지는 재량권의 범위는 아이들의 재사회화를 돕는 수준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범죄사실과는 상관없이 경고(warnings)에서부터 보호관찰(probation supervision), 소년원 구금(training school confinement)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처분이 실시되었고, ‘아이에게 가장 적합한 것(best interests of the child)’이라는 명분에 따라 아이가 치료될 때까지 혹은 성인(21세)이 될 때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하였다.⁴³⁾

1950~60년대 들어서 소년법원이 비행청소년을 재사회화하는데 성공적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소년법원과 관련기관에서 행한 처분의 효과성 역시 기대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회의가 소년사범의 기본 철학인 개별화된 정의를 통한 재사회화라는 목표에 의문을 제기한 것은 아니지만, 전문가들은 ‘처우(treatment)’라는 이름하에 관련 시설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소년들이 점점 더 증가하는 사실에 우려를 나타냈다.⁴⁴⁾

다. 소년사범절차의 강화

1960년대 벌어진 Kent 사건, Gault 사건, Winship 사건을 비롯한 일련의 판례들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소년사건의 처리절차를 바꾸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예를 들어, 소년사건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공식적인 심문의 의무화, 기소사실에 대한 고지, 증인에 대한 심문, 검사의 출석 등 무죄입증을 위한 기준과 절차가 많아졌다. 하지만, 대법원은 여전히 형사사건과 소년사건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소년사건에 배심원단까지 요구하지는 않았다.⁴⁵⁾ 각 판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43) NCJJ & OJJDP. Juvenile Offenders and Victims: 2014 National Report, Pittsburgh, PA: National Center for Juvenile Justice, 2014, p.84.

44) NCJJ & OJJDP. Juvenile Offenders and Victims: 2014 National Report, Pittsburgh, PA: National Center for Juvenile Justice, 2014, p.84.

45) NCJJ & OJJDP. Juvenile Offenders and Victims: 2014 National Report, Pittsburgh, PA: National Center for Juvenile Justice, 2014, pp.84-86.

Kent v. United States 383 U.S. 541, 86 S. Ct. 1045 (1966)

1961년 당시 보호관찰 중이던 Morris Kent라는 16살 소년이 강도강간으로 기소를 당했다. 그는 죄를 인정했을 뿐 아니라 유사한 범죄까지도 자백을 하였다. Kent의 담당검사는 콜롬비아 지역 소년법원이 Kent를 형사법원으로 이송시킬 것이라고 생각하여 심리를 요청하였다. 그런데 소년부 판사는 검사가 요청한 심리 대신에 조사를 다 마친 후 관할 포기(waiver)를 하겠다고 하였다. 판사는 이후 Kent는 형사법원에서 주거침입, 강도 등 여섯 개의 유죄가 인정되어 30년~90년의 부정기형을 선고받았다.

Kent의 변호사는 관할포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형사기소가 취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사건이송은 재청되어야 하며, Kent의 구금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인신보호영장도 요구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두 가지 사안을 각각하고, 사건이송이 유효하다고 판결하였다. 대법원에서 Kent의 담당변호사는 판사가 완벽한 조사를 하지 않았고, Kent는 소수인종이었기 때문에 헌법적 권리도 부정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법원은 “관할포기가 무효이며, Kent는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심문을 받아야 하며, Kent의 변호사도 관할포기와 관련한 모든 기록에 접근할 수 있으며, 판사는 관할포기에 대한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해야만 한다.”고 판시하였다.

Kent 사건은 D.C. 법원에만 적용된 것이었지만, 그 영향은 훨씬 컸다. 대법원은 잠재적인 헌법적 가치를 통해 소년법원의 설립근거로서 국친사상에 도전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청소년이 어른과 같은 보호를 받지 못한다거나 미성년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보호를 받지 못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⁴⁶⁾

Gault 387 U.S. 1, 87 S. Ct. 1428 (1967)

1964년 사소한 절도로 애리조나에서 보호관찰을 받던 15살 Gerald Gault은 친구와 함께 이웃에 장난 전화로 성적인 농담을 걸다가 잡혀 체포되었다. 피해자는 심문에 나타나지 않았고, 법원은 Gault가 문란한 말을 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다. Gault은 남은 보호관찰 기간을 소년원(training school)에서 보내도록 처분을 받았다. 해당범죄는 성인의 경우에는 50달러의 벌금이나 2개월 동안 구금이 선고되는 범죄였다. 인신보호영장 재판 후 Gault의 담당검사는 결국 대법원에서 심문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 사건에서 이슈는 Gault의 헌법적 권리, 즉 기소내용에 대한 고지, 변호사 선임, 목격자 증언, 재판회의록 열람, 항소에 대한 고지 등이 부정되었다는 점이다. 법원은 시설 내 구금이라는 결과를 가져 온 사건에 대한 심문을 진행하였고, 기소내용에 대한 고지, 변호사 선임, 목격자 증언, 불리증언거부 등의 권리를 행사하였다.

대법원의 결정은 Gault가 소년법원으로부터 도움을 받기보다는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었다. 대법원은 소년사법의 근거로서 국친사상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면서 국친사상의 개념이 모호하고, 역사적으로도 적합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due process)를 어긴 Gault 판례를 통해 소년법원의 역사는 원칙과 절차가 자주 무시되는 재량의 굴레에서 벗어나되 그 기본은 관대함이 작용하도록 새롭게 시작되어야 한다고 하였다.⁴⁷⁾

46) NCJJ & OJJDP. Juvenile Offenders and Victims: 2014 National Report, Pittsburgh, PA: National Center for Juvenile Justice, 2014, p.89.

47) NCJJ & OJJDP. Juvenile Offenders and Victims: 2014 National Report, Pittsburgh, PA:

Winship, 397 U.S. 358, 90 S. Ct. 1068 (1970)

12살의 Samuel Winship은 가게에 갔다가 한 여성의 지갑에서 112달러를 훔친 죄로 기소를 당했다. 가게 주인은 여성이 알아차리기 전에 Winship이 돈을 훔치는 것을 목격하고 달아나는 Winship을 신고하였다. Winship은 소년법원으로 송치되어 소년원(training school)으로 보내졌다. 민사법원 관할 하에 있던 New York 소년법원은 그 기준에 맞추어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였다. 법원은 비록 Winship의 유죄를 인정하기에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지만, 증거가 충분했기 때문에 담당검사에 유죄인정에 동의를 나타냈다. 이 사건의 대법원 항고에서 주된 이슈는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서는 증거(proof beyond a reasonable doubt)가 적법절차와 공정한 처우의 핵심에서 고려되어야만 하는가 여부이다. 대법원은 하급심의 결정을 기각하면서 소년법원은 성인법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소년법원은 아이들을 '구하기(save)' 위해 고안된 것이지 '벌주기(punish)'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다. 대법원은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기준은 모든 소년사건에서도 반드시 요구된다고 판시하였다.⁴⁸⁾

의회는 1968년 「소년비행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The Juvenile Delinquency Prevention and Control Act)」을 발의하여 지위비행과 같은 약한 범죄는 법원 밖에서 다루도록 하였다. 1974년에는 「소년사법 및 비행예방법(The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Act)」를 통과시켜 지위비행을 탈제도화하고 성인범죄자와 소년범죄자를 분리하도록 하였다. 1980년에는 1974년법을 수정하여 소년이 성인수용 시설과는 별도의 시설에 수용되도록 하였다. 1970년대에는 지역기반 프로그램(communitiy-based program), 다이버전(diversion), 탈제도화(deinstitutionalization)가 소년사법의 주요 역점사업으로 실시하게 되었다.⁴⁹⁾

라. 소년에 대한 강력처벌 경향

1980년대 들어 심각한 소년범죄가 증가하면서 국민들은 소년사법제도가 너무 관대하다고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비록 소년범죄의 증가와 관련하여 잘못된 오해가 있는 것은 분명했지만, 많은 주에서 보다 엄격한 법률을 통과시키기 시작하였다. 소년사법

National Center for Juvenile Justice, 2014, p.89.

48) NCJJ & OJJDP. Juvenile Offenders and Victims: 2014 National Report, Pittsburgh, PA: National Center for Juvenile Justice, 2014, pp.89-90.

49) NCJJ & OJJDP. Juvenile Offenders and Victims: 2014 National Report, Pittsburgh, PA: National Center for Juvenile Justice, 2014, p.86.

체계에서 소년범죄의 유형을 삭제하여 형사법원에서 성인범죄자와 동일한 취급을 받도록 하거나, 소년사법제도를 형사사법제도와 좀 더 유사하게 바꾸어 소년범죄자를 소년법원이 아닌 형사법원에서 처리되도록 하였다. 결과적으로 특정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들은 소년법원의 관할에서 배제되어 강제적 혹은 자동적으로 형사법원으로 이송되었다. 몇몇 주에서는 검사에게 소년법원과 형사법원 둘 다 보낼 수 있는 재량권을 주어 일부 소년사건의 경우에는 소년법원이 아닌 형사법원으로 바로 보낼 수 있도록 하였다. 어떤 주에서는 특정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의 경우에 법정형(mandatory sentence)을 받도록 하였다.⁵⁰⁾

1990년에는 소년범죄에 관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강력한 법안들이 만들어졌다. 각 주에서는 ‘소년범죄와의 전쟁(combat juvenile crime)’이라는 명분으로 5개 영역에서 법률을 만들어 통과시켰다. 이러한 법률은 소년사법절차를 형사절차에 적합하도록 확장시키는 것, 성인 교정시설에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 소년범죄자의 범죄경력 비밀보호를 약화시키는 것 등을 특징으로 한다. 1992년부터 1997년 사이에 3개 주를 제외하고 모든 주에서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법률을 최소 하나 이상 수정하였다.⁵¹⁾

- 소년범죄자를 소년법원에서 형사법원으로 보다 쉽게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45개 주)
- 형사법원과 소년법원의 양형 모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법률(31개 주)
- 전통적으로 소년법원이 준수해 왔던 소년사건기록의 비밀유지를 수정 혹은 삭제하는 법률(47개 주)
- 소년사법절차에서 피해자의 역할과 권리를 확대하는 법률(22개 주)
- 소년범죄자가 형사법원과 성인교정으로 이송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새로운 교정프로그램의 개발⁵²⁾

1980년대와 1990년대는 소년범죄자를 다루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변화의 시기이다. 2000년 이후로 약간의 변화는 있지만, 소년사법제도의 새로운 확대는 더 이상

50) NCJJ & OJJDP. Juvenile Offenders and Victims: 2014 National Report, Pittsburgh, PA: National Center for Juvenile Justice, 2014, p.86.

51) NCJJ & OJJDP. Juvenile Offenders and Victims: 2014 National Report, Pittsburgh, PA: National Center for Juvenile Justice, 2014, p.86.

52) NCJJ & OJJDP. Juvenile Offenders and Victims: 2014 National Report, Pittsburgh, PA: National Center for Juvenile Justice, 2014, p.86.

일어나지 않고 있다. 1994년 이후로 전반적인 소년범죄의 발생경향은 느린 감소추세에 있지만, 1970년대로 회귀하는 뚜렷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기반프로그램이나 다이버전과 같은 소년사법제도는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⁵³⁾

2. 미국 소년사법에서의 연령기준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소년법원은 사건 당시 18세 이하인 소년이 법을 위반할 경우 체포, 일반법원으로의 송치에 대해 고유관할권을 갖는다. 미국 주의 소년사건 적용 기본연령기준(basic age criteria)의 상한은 15세에서 17세까지 다양하다. 1975년 이후 5개 주에서 연령기준을 바꾸었는데, Alabama는 1976년 15세에서 16세로, 1977년에는 다시 17세로 높였고, Connecticut은 2012년 연령상한을 15세에서 17세로 높인 반면, Wyoming은 1993년 18세에서 17세로 상한을 낮추었고, New Hampshire와 Wisconsin 주는 1996년 연령상한을 17세에서 16세로 낮추었다.⁵⁴⁾

〈표 3-2〉 각 주별 연령기준

연령	해당 주
15	New York, North Carolina
16	Connecticut, Georgia, Illinois, Louisiana, Massachusetts, Michigan, Missouri, New Hampshire, South Carolina, Texas, Wisconsin
17	Alabama, Alaska, Arizona, Arkansas, California, Colorado, Delaware, District of Columbia, Florida, Hawaii, Idaho, Indiana, Iowa, Kansas, Kentucky, Maine, Maryland, Minnesota, Mississippi, Montana, Nebraska, Nevada, New Jersey, New Mexico, North Dakota, Ohio, Oklahoma, Oregon, Pennsylvania, Rhode Island, South Dakota, Tennessee, Utah, Vermont, Virginia, Washington, West Virginia, Wyoming

출처 : Sickmund & Puzzanchera, National Reports Juvenile Offenders and Victims, 2014, p.93.

많은 주들은 기본연령기준에 있어서 몇 가지 법률적 예외를 두고 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주들은 결혼한 소년은 이 기준에서 제외시키고 있고, 범죄사실, 범죄경력 등을 고려하여 기본연령기준에 해당되더라도 형사법원으로 관할권을 넘기기도 한다.

53) NCJJ & OJJDP. Juvenile Offenders and Victims: 2014 National Report, Pittsburgh, PA: National Center for Juvenile Justice, 2014, p.86.

54) NCJJ & OJJDP. Juvenile Offenders and Victims: 2014 National Report, Pittsburgh, PA: National Center for Juvenile Justice, 2014, p.93.

몇몇 주들은 소년범죄자의 나이, 범죄사실, 범죄경력 등을 고려하여 소년법원과 형사 법원에 모두 관할권을 부여하기도 한다. 이러한 주들은 초기에 담당검사에게 소년법원이 아닌 성인법원으로 송치할 수 있는 결정권을 주고 있다.⁵⁵⁾

2010년 후반 16개 주에서는 소년법원 관할권을 적용할 수 있는 최소연령기준을 6세에서 10세까지 두기 시작하였다. 다른 주들은 여전히 판례법(case law)과 보통법(common law)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특정연령보다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는 범죄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기소나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⁵⁶⁾

〈표 3-3〉 최소 연령기준

연령	해당 주
6	North Carolina
7	Maryland, Massachusetts, New York
8	Arizona
10	Arkansas, Colorado, Kansas, Louisiana, Minnesota, Mississippi, Pennsylvania, South Dakota, Texas, Vermont, Wisconsin

출처 : Sickmund & Puzzanchera, National Reports Juvenile Offenders and Victims, 2014, p.93.

다만, 상당수 주들에서는 소년법원의 기본연령기준을 넘어서더라도 특정한 범죄나 특정 연령에 해당하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소년사법권한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청소년범죄자와 공공의 이익 모두에 가장 적절한 제재와 서비스 기간을 법원이 결정할 수 있도록 입법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⁵⁷⁾

〈표 3-4〉 소년사법권한을 확대 적용할 수 있는 연령상한기준

연령	해당 주
18	Alaska, Iowa, Kentucky, Nebraska, Oklahoma, Rhode Island, Texas
19	Mississippi

55) NCJJ & OJJDP. Juvenile Offenders and Victims: 2014 National Report, Pittsburgh, PA: National Center for Juvenile Justice, 2014, p.93.

56) NCJJ & OJJDP. Juvenile Offenders and Victims: 2014 National Report, Pittsburgh, PA: National Center for Juvenile Justice, 2014, p.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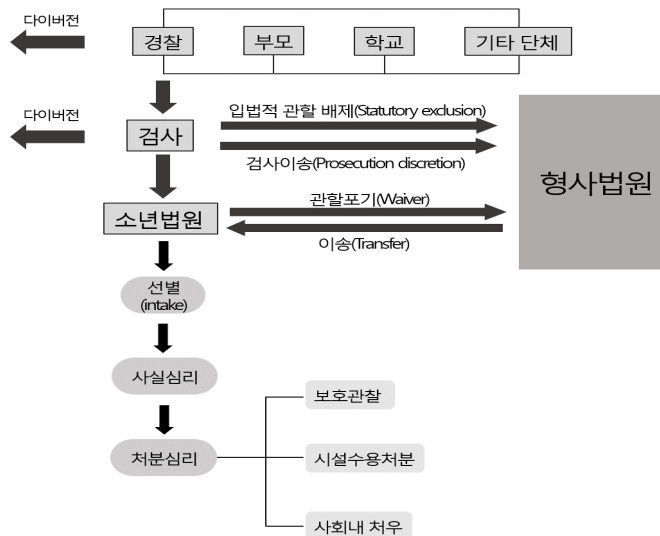
57) NCJJ & OJJDP. Juvenile Offenders and Victims: 2014 National Report, Pittsburgh, PA: National Center for Juvenile Justice, 2014, p.94.

연령	해당 주
20	Alabama, Arizona, Arkansas, Connecticut, Delaware, District of Columbia, Georgia, Idaho, Illinois, Indiana, Louisiana, Maine, Maryland, Massachusetts, Michigan, Minnesota, Missouri, Nevada, New Hampshire, New Mexico, New York, North Carolina, North Dakota, Ohio, Pennsylvania, South Carolina, South Dakota, Utah, Virginia, Washington, West Virginia, Wyoming
21	Florida, Vermont
22	Kansas
24	California, Montana, Oregon, Wisconsin

출처: Sickmund & Puzzanchera, National Reports Juvenile Offenders and Victims, 2014, p.93.

3. 소년강력범 대응을 위한 미국 소년사법절차

미국에서 소년사건은 원칙적으로 각 주의 권한에 속하는 문제이고, 모든 주에서는 성인에 대하여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과 구별하여 소년사건을 담당하는 별도의 법원이 설치되어 있다.⁵⁸⁾ 소년사법절차는 주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나, 대체로 다음과 같다.



[그림 3-4] 미국의 소년사법절차도

58) NCJJ & OJJDP. Juvenile Offenders and Victims: 2014 National Report, Pittsburgh, PA: National Center for Juvenile Justice, 2014, p.149.

가. 경찰단계의 소년사건처리절차

범죄소년이 체포되면 경찰은 사건을 소년사법제도에서 진행할지, 소년사법 제도 이외의 대체적 프로그램으로 전환할지를 결정한다. 이 결정은 피해자, 소년 본인, 부모와의 면담, 소년의 과거 비행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된다.

1) 선별(Intake)

‘선별(Intake)’이란 소년법원이 정식절차를 수리하기에 앞서 예비적 심사를 하고, 그 사건이 법원의 개입을 필요로 하는가, 보호관찰관에 의해 비공식처리가 적당한가, 다른 복지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적당한가 등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선별은 경찰 외에 부모, 학교, 피해자, 보호관찰관 등이 할 수 있고, 검사가 하는 경우도 있다.⁵⁹⁾

2) 다이버전(Diversion)

다이버전이란 공식적인 사법절차를 지양하고 덜 강제적이고 교육적인 방법으로 소년법을 채우하는 제도를 말한다. 수사단계에서는 가능한 한 구속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방법이고, 기소단계에서는 기소를 유예하고, 법원단계에서는 시설수용처분을 받게 할 자에 대하여 가급적 보호관찰 등 사회내 처우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별된 사건 중에 절반 이상이 비공식 처리되고, 이 중 대다수는 기각(dismiss)된다. 기각된 사건 중 소년이 죄를 인정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소년이 임의로, 피해자에 대한 배상, 약물상담, 야간외출금지 등 조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동의하여 보호관찰관의 감독 하에 소년이 동의한 조건을 이행하면 사건이 종결되고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심판절차가 진행된다.⁶⁰⁾

다이버전은 법원의 업무량을 줄임으로써 법원으로 하여금 좀 더 중한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고, 조기처우를 가능하게 하며, 사법기관에 의한 낙인화의 부정적 효과를 방지하며, 소년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구속하는 방식을 통해 재사회화

59) 大月晶代, 『アメリカの少年犯罪事件と情報公開, 青少年をめぐる諸問題』, 2009, 57頁

60) Clemens Bartollas, Juvenile Delinquency, New York, 1985, p.546.

를 용이하게 하고, 소년범죄자 문제에 대해 사회일반의 참여를 가능케 한다는 장점이 있다.⁶¹⁾ 그러나 사법의 처리라는 이름 하에 새로운 단위의 사법체계를 만들 우려가 있고, 사법의 처리가 보다 온화하다는 이유 때문에 소년사법 체계에 들어오지 않았던 소년들을 광범위하게 소년사법체제로 끌어들일 우려가 있으며, 사법의 처리에 적용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남용될 염려가 있으며, 소년의 적법절차상의 권리를 무시할 우려가 있다.⁶²⁾

나. 소년법원

사건이 정식으로 소년법원에 이송되면 소년법원에 대하여 비행신청(Delinquency Petition)이 되고, 신청을 받아 심판기일이 정해지고, 사실인정절차에서 소년법원에서 비행사실을 인정하면 처분절차에 돌입하여 소년에 대한 처분을 결정한다. 소년법원에서 실시하는 처분으로는 보호관찰, 집중지도감독, 자택 구금, 전자감독, 보호소(shelter facility), 대리가정 위탁(foster care), 그룹홈(group home), 중간처우시설(halfway house), 소년원(training center), 피해배상명령, 사회봉사명령 등이 있다.⁶³⁾

1) 보호관찰(Probation)

공식처분의 하나로서 보호관찰은 비교적 단순하고 일반화되어 소년법원 판사가 자주 사용하는 처분 중의 하나이다. 보호관찰은 보호관찰직원에게 전화나 우편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보고만 하면 지역 내에서는 아무런 행동의 제약을 받지 않는 무조건부 보호관찰(unconditional probation)과 보호관찰을 받는 외에 일정시간 동안 사회봉사활동을 하거나 피해배상, 특별 직업·교육·치료프로그램에의 참가 등의 조건이 부가되는 조건부 보호관찰(conditional probation)이 있다. 최근에 보호관찰 소년의 재범을 막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집중보호관찰(Intensive Supervised Probation: ISP)이 도입되어 점차 확대 실시되고 있다. 집중보호관찰제도는 성인범이나 비행소년에 대한 고

61) 이승현, 소년보호이념과 선의권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23쪽.

62) Clemens Bartollas, Juvenile Delinquency, New York, 1985, p.546.

63) 처분의 각각 유형에 관한 상세한 소개는 이승현, 소년보호이념과 선의권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25-28쪽.

도의 통제 및 감시를 통해 공공의 안전을 어느 정도 보장한다는 점에서 자유형에 대한 대안적 제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⁶⁴⁾

보호관찰 기간은 주마다 차이가 나는데, 워싱턴 주는 1년, 캘리포니아 주는 6개월, 뉴욕 주는 2년이며, 일리노이 주는 5년으로 최장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일부 주에서는 사건 통고 및 소년법원의 심리를 거쳐 1회 이상 최장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도록 허용하기도 한다.⁶⁵⁾

미국에서 보호관찰관의 역할은 중요한데, 대부분의 주에서 소년에 대한 초기 심리를 맡는 조사관이 보호관찰관이다. 보호관찰관은 소년의 성장과정이나 가정환경을 조사하고, 법원과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 등 전문가 간의 중개자 역할을 한다. 그리고 보호관찰관은 사실에 관한 자료와 소년의 비행 배경 등에 관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판사에게 적당한 처분을 권고하는 역할까지 하며, 소년에게 보호관찰이 부과되면 소년의 수용 여부나 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선택 등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만일 소년이 수용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용시설에서 소년을 감독하는 자와 협조하여 소년에 대한 감독 등 소년에 대한 전반적인 처우에 간섭할 권한을 갖고 있다⁶⁶⁾.

2) 대리가정(Foster Home) 위탁처분

대리가정 위탁처분이란 비행소년을 위하여 자원봉사하는 개인에게 소년을 위탁하는 처분이다. 대부분 주에서는 비행소년이 친부모가 없거나 경제적·정신적 또는 가정적으로 보호에 어려움이 있을 때 대리가정에 보내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리가정이 실제의 가정을 대신할 정도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청소년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는 경우가 많고, 대리가정을 지원하는 자원봉사자의 수도 매우 적다⁶⁷⁾.

64) Gennaro F. Vito and Deborah G. Wilson, The American Justice System, Sage Publications, 1985, p.93-94.

65) Gennaro F. Vito and Deborah G. Wilson, The American Justice System, Sage Publications, 1985, p.93-94.

66) Gennaro F. Vito and Deborah G. Wilson, The American Justice System, Sage Publications, 1985, p.93-94.

67) Clemens Bartollas, Juvenile Delinquency, 2nd edition,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1990, p.439.

3) 그룹홈(Group Home) 위탁처분

그룹홈은 미국에서 소년법을 다루는 가장 일반적인 시설로서, 사회사업가 등이 13명 내지 25명 정도의 비행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소규모시설이다. 감금시설이 없고, 소년들이 학교나 직장을 다닐 수 있으며, 전문적인 치료 대신에 동료나 교사들과 어울려 자유롭게 지내도록 훈련을 하는 것이 그 특징이다.

4) 중간처우시설(Halfway House) 위탁처분

소년원 등의 시설과 사회의 중간에 위치한다고 하여 이름 붙여진 중간처우소 위탁처분은 그룹홈의 한 형태로서, 소년원으로 보내질 소년의 적응 준비를 돕거나 소년원에서 사회로 복귀한 소년의 사회적응 준비를 돕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 시설들은 주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주정부가 계약을 통해 시설을 운영하는 개인에게 위탁한다.⁶⁸⁾

5) 생존훈련프로그램(Survival Programs)

생존훈련프로그램은 극기훈련 등을 통해 비행소년을 교정하려는 처분방식이다. 대표적인 생존프로그램의 하나인 황야탐험프로그램(wilderness)은 비행소년에게 황야탐험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거나 동료와의 협력과 신뢰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자연내 처우프로그램이다. 황야체험은 보통 3-4주간 이루어지고, 기본교육, 장기탐험, 단독생존훈련, 최종평가기간 등의 4단계로 나뉜다.⁶⁹⁾

6) 야외교정시설(Forestry Camps) 처분

야외교정시설처분은 미성년자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과 처음으로 청소년국(Youth Bureau)에 위탁된 청소년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시설 내 처분이다. 평균 6-7개월의

68) Clemens Bartollas, Juvenile Delinquency, 2nd edition,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1990, p.440.

69) Clemens Bartollas, Juvenile Delinquency, 2nd edition,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1990, p.441.

수용기간 동안 근로와 자연을 통해 심성의 순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직업교육이나 교과교육은 거의 하지 않고 작업을 위주로 한다. 주로 소년을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수시로 사회와 접촉하는 것을 허용하고 소년뿐만 아니라 부모에 대한 상담도 실시한다.⁷⁰⁾

7) 소년원(Training School) 송치처분

소년원송치처분은 시설 내에 구금하는 처분으로서 중죄를 저지른 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로 교과교육과 직업훈련 등을 통해 소년을 개선하려고 한다. 주에서 운영하는 공립소년원 외에 사립소년원도 있는데 사립소년원은 수용할 청소년을 선택할 수 있고, 주로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다.⁷¹⁾

다. 형사법원

소년 중대사건은 소년법원이 아닌 성인과 동일한 형사절차로 진행되기도 한다. 소년사건이 형사법원에 이송되는 절차로, 소년법원이 재판권을 포기하는 경우로, 소년법원의 재량으로 포기하는 경우(45개주), 법률에 의해 추정적으로 포기하는 경우(15개주), 의무적 관할포기를 하는 경우(15개주)가 있다. 소년법원과 형사법원이 재판권을 공유하고 있는 주도 있는데(15개주), 이 경우 소년법원과 형사법원 중 어디에 사건을 송치할 것인가의 판단은 검사의 재량에 속한다. 특정 범죄행위를 소년법원의 관할에서 포기하는 규정을 둔 주(29개주)나 과거에 형사법원에서 다루어졌던 적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는 그 후 발생하는 사건에 대하여도 형사법원의 관할로 규정한 주도 있다(34개주). 형사법원으로부터 소년법원으로 관할이 역이송(reverse waiver) 규정을 둔 주도 있다(24개주).

70) Clemens Bartollas, Juvenile Delinquency, 2nd edition,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1990, p.441.

71) Clemens Bartollas, Juvenile Delinquency, 2nd edition,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1990, p.442

라. 이송 및 관할 포기

1) 판사의 관할포기(judicial waiver)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18세 이상의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법원에서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으나, 성인범죄자가 아닌 18세 미만의 소년범죄자가 형사법원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이다. 하나는 소년범죄자를 애초부터 소년법원에서 '관할포기(waiver)'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소년범죄사건을 소년법원에서 형사법원으로 '이송(transfer)'하는 방법이다. 관할포기란 소년법원에 속한 사건을 범죄의 종류, 연령, 교정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소년법원에서 관할을 포기하고 형사법원으로 송치하는 것을 말한다.

관할포기는 다시 '의무적 관할포기(mandatory waiver)'와 '재량적 관할포기(discretionary waiver)', '추정적 관할포기(presumptive waiver)'로 구분할 수 있고, 이송은 '검사의 이송(prosecutorial discretion)'과 '판사의 이송(judicial transfer)'로 구분할 수 있다.⁷²⁾

(1) 의무적 관할포기(mandatory waiver)

의무적 관할포기는 18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이미 성인으로 분류되는 경우, 과거에 형사법원으로 이송되어 유죄확정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소년법원에서 아예 퇴출된 경우 등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된다면 소년사법권한이 더 이상 관여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첫 번째는 일부 주에서는 기본연령기준의 상한이 18세 미만이 아니라 16세 혹은 17세로 되어 있어 18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소년법원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이다. 두 번째는 과거에 중범죄를 저질렀거나 이미 형사법원으로 이송될 만큼의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로 30개 주에서 시행하고 있다. 셋째는 오직 플로리다 주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세 번 중범죄를 저지른 소년은 무조건 성인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경우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소년들은 소년법원을 거치지

72) Joseph Samborn, Prosecuting Juvenile Offenders in Criminal Court, in *Controversies in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By Benekos, Peter J., Merlo, Alida V., 2nd ed. New York: Routledge, 2014, p.175-176.

않고 바로 형사법원으로 기소되어 성인과 동일한 형사소송절차를 밟게 되며, 판사의 재량권도 통하지 않는다.⁷³⁾

(2) 재량적 관할포기(discretionary waiver)

재량적 관할포기는 판사 또는 검사가 소년범죄자를 형사법원으로 이송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의무적 관할포기와는 달리 재량적 관할포기, 즉 이송은 소년사건에 대한 심리가 소년법원에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판사나 검사가 해당사건을 성인법원으로 보낼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송이 이루어지기 전 소년으로서의 법적 지위는 사건을 저지른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이러한 법적 지위는 이송결정에 따라 성인의 지위로 바뀔 수 있다.⁷⁴⁾

2) 입법적 관할배제(Statutory Exclusion)

입법적 관할배제(Statutory Exclusion)란 살인이나 무장강도 등 중대범죄에 대하여 소년법원의 관할을 배제하는 것으로 앨라배마 주를 비롯하여 29개주에서 이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다.

3) 이송(transfer)

이송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판사 이송으로, 매우 효과가 높지 않고 재사회화가 불가능한 소년들에 대하여, 판사가 이송을 하기에 비록 어리지만 너무 많은 범죄를 저질렀고 이미 소년사법제도 내에서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경험했음에도 개선이 안 되는 소년에게 사용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검사 이송(Prosecutorial discretion)으로, 형사법원에서 좀 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집단으로서 주로 검찰단계에서 이송이 결정된다. 검사들의

73) Joseph Samborn, Prosecuting Juvenile Offenders in Criminal Court, in *Controversies in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By Benekos, Peter J., Merlo, Alida V., 2nd ed. New York: Routledge, 2014, p.176-177.

74) Joseph Samborn, Prosecuting Juvenile Offenders in Criminal Court, in *Controversies in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By Benekos, Peter J., Merlo, Alida V., 2nd ed. New York: Routledge, 2014, p.177.

경우에는 보다 만성적이면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들을 대상으로 사용한다. 이러한 경향으로 인해 현재 43개 주에서는 판사와 검사 모두의 이송권한을 인정하고 있다.⁷⁵⁾

판사의 이송결정은 범죄사실(폭력정도, 총기사용, 피해정도), 이전의 범죄행위, 처분기록(재판참여횟수, 이전의 치료효과), 연령(법원이 개입하기 시작한 때로부터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반면, 검사의 이송결정은 범죄사실, 이전의 범죄행위, 연령을 고려하여 결정된다.⁷⁶⁾

4) 소년법원으로의 재이송(reverse transfer)

소년범죄자에게 의무적 관할포기를 적용한다면, 그 사건은 반드시 형사법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성인법원으로 보낸 소년사건의 경우 반드시 형사법원에서만 다루는 것은 아니다. 상당수 주는 형사법원 판사나 검사가 사건을 소년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년법원으로의 재이송은 형사법원 판사가 소년법원의 조치를 고려해서 결정되는데, 전통적으로 검사의 이송사건(prosecutorial discretion cases)에 제한된다. 왜냐하면 판사의 이송사건은 이미 소년부 판사가 충분히 검토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검사의 이송사건만 재이송을 허용하는 주는 코네티컷(Connecticut), 몬타나(Montana), 네브라스카(Nebraska), 뉴욕(New York) 주이다. 만일, 형사법원이 검사의 이송사건을 검토한 결과 유죄를 인정할만한 상당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면 그 사건은 소년법원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 이 경우 형사법원의 관할권은 사라지게 된다.⁷⁷⁾

성인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소년법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역이송(reverse transfer)’이라고 한다. 이처럼 유죄확정 이후 소년법원으로

75) Joseph Samborn, Prosecuting Juvenile Offenders in Criminal Court, in *Controversies in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By Benekos, Peter J., Merlo, Alida V., 2nd ed. New York: Routledge, 2014, p.178.

76) Joseph Samborn, Prosecuting Juvenile Offenders in Criminal Court, in *Controversies in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By Benekos, Peter J., Merlo, Alida V., 2nd ed. New York: Routledge, 2014, p.180.

77) Joseph Samborn, Prosecuting Juvenile Offenders in Criminal Court, in *Controversies in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By Benekos, Peter J., Merlo, Alida V., 2nd ed. New York: Routledge, 2014, p.184.

역이송되는 경우는 검사로부터 이송사건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소년법원으로의 재이송 결정 후 양형이 결정되는 경우에, 몇몇 주들은 ‘소년사건 배제범죄(offense exclusion)’에 해당하는 양형보다 덜한 양형을 선고받을 경우 반드시 소년법원으로 돌려보내 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다.⁷⁸⁾

5) 결합판결(Blended Sentencing)

일정한 소년범죄자에 대하여 소년과 성인의 형벌을 결합시키는 판결을 하는 주도 있다. 첫째, 소년법원에서 소년법원의 처분과 형사벌을 함께 선고하는 주도 있다. 이 경우 소년이 소년법원의 처분을 종료하고,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사벌을 과하지 않지만, 소년법원의 처분을 종료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소년에게 형사벌이 부과된다(14개주). 둘째, 소년법원으로부터 형사법원에 이송된 사건의 판결에서, 소년법원에서만 부과할 수 있는 처분을 내리는 경우도 있다(17개주). 성인과 마찬가지로 형사법원에 기소된 소년에게, 소년법원의 처분을 부과하는 것으로 엄벌효과를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다.⁷⁹⁾

〈표 3-5〉 미국 각주의 이송제도 현황⁸⁰⁾

주(state)	관할 포기(Judicial Waiver)			검사 이송 (Prosecutorial discretion)	입법적 관할 배제 (Statutory exclusion)	역이송 (Reserve Waiver)	성인취급 (once an adult/ always an adult)	결합판결 (Blended sentencing)	
	재량적 (Discretionary)	추정적 (Presumptive)	의무적 (Mandatory)					소년법원 (Juvenile)	형사법원 (Criminal)
주 개수 (Number of states)	45	15	15	15	29	24	34	14	17
Alabama	■				■		■		
Alaska	■	■			■			■	

78) Joseph Samborn, Prosecuting Juvenile Offenders in Criminal Court, in *Controversies in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By Benekos, Peter J., Merlo, Alida V., 2nd ed. New York: Routledge, 2014, p.185.

79) NCJJ & OJJDP, *Juvenile Offenders and Victims: 2014 National Report*, Pittsburgh, PA: National Center for Juvenile Justice, 2014, p.106.

80) NCJJ & OJJDP, *Juvenile Offenders and Victims: 2014 National Report*, Pittsburgh, PA: National Center for Juvenile Justice, 2014, p.100.

주(state)	관할 포기 (Judicial Waiver)			검사 이송 (Prosecutorial discretion)	입법적 관할 배제 (Statutory exclusion)	역이송 (Reserve Waiver)	성인취급 (once an adult/ always an adult)	결합판결 (Blended sentencing)	
	재량적 (Discretionary)	추정적 (Presumptive)	의무적 (Mandatory)					소년법원 (Juvenile)	형사법원 (Criminal)
Arizona	■			■	■	■	■		
Arkansas	■			■		■		■	■
California	■	■		■	■	■	■		■
Colorado	■	■		■		■		■	■
Connecticut			■			■		■	
Delaware	■		■		■	■	■		
Dist.of Columbia	■	■		■			■		
Florida	■			■	■		■		■
Georgia	■		■	■	■	■			
Hawaii	■						■		
Idaho	■				■		■		■
Illinois	■	■	■		■		■	■	■
Indiana	■		■		■		■		
Iowa	■				■	■	■		■
Kansas	■	■					■	■	
Kentucky	■		■			■			■
Louisiana	■		■	■	■				
Maine	■	■					■		
Maryland	■				■	■	■		
Massachusetts					■			■	■
Michigan	■			■			■	■	■
Minnesota	■	■			■		■	■	
Mississippi	■				■	■	■		
Missouri	■						■		■
Montana				■	■	■		■	
Nebraska				■		■			■
Nevada	■	■			■	■	■		
New Hampshire	■	■					■		
New Jersey	■	■	■						
New Mexico					■				■

주(state)	관할 포기(Judicial Waiver)			검사 이송 (Prosecutorial discretion)	입법적 관할 배제 (Statutory exclusion)	역이송 (Reserve Waiver)	성인취급 (once an adult/ always an adult)	결합판결 (Blended sentencing)	
	재량적 (Discretionary)	추정적 (Presumptive)	의무적 (Mandatory)					소년법원 (Juvenile)	형사법원 (Criminal)
New York					■	■			
North Carolina	■		■				■		
North Dakota	■	■	■				■		
Ohio	■		■				■	■	
Oklahoma	■			■	■	■	■		■
Oregon	■				■	■	■		
Pennsylvania	■	■			■	■	■		
Rhode Island	■	■	■				■	■	
South Carolina	■		■		■				
South Dakota	■				■	■	■		
Tennessee	■					■	■		
Texas	■						■	■	
Utah	■	■			■		■		
Vermont	■			■	■	■			
Virginia	■		■	■		■	■		■
Washington	■				■		■		
West Virginia	■		■						■
Wisconsin	■				■	■	■		■
Wyoming	■			■		■			

4. 미국의 소년강력범 대응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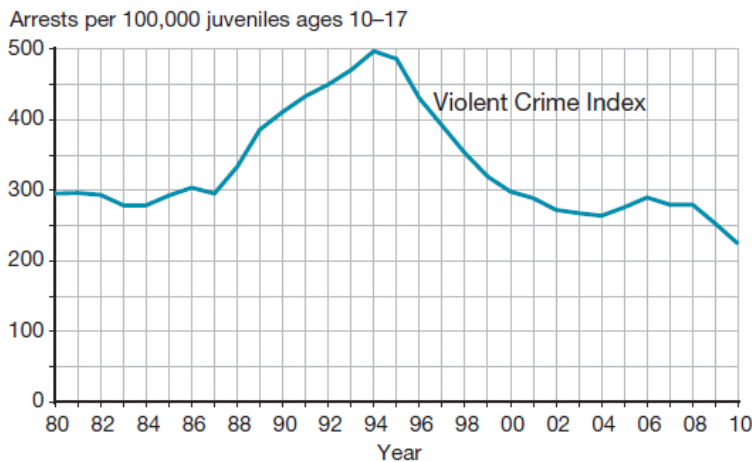
가. 소년강력범죄의 발생현황

미국 표준소년법원법에 따르면, 19세 미만 소년범죄사건은 소년법원에서 심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16세 이상 소년이 범한 중대범죄로서 형사처분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형사법원에 송치하도록 하고 있고, 16세 이상 소년의 중대 사건에 대하여는 소년법원이 재판권을 포기할 수 있다. 최근 소년강력범죄가 증가하자, 몇몇 주에서 소년연령을 낮추는 외에 성인법정으로의 자동송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거나, 판사가 중대한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에게 구금시설에 송치

하거나 성인교도소에 수용하는 형을 선택하거나 병과할 수 있도록 하는 혼합판결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⁸¹⁾

통합범죄보고서(Uniform Crime Reports : UCR)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18세 이하 소년의 체포건수는 968,534건으로, 폭력범죄의 경우 전체 범죄율의 11.7%, 재산범죄의 경우 전체 범죄율의 1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⁸²⁾

폭력범죄⁸³⁾의 경우 1980년부터 2010년까지의 경향을 살펴보면, 1987년부터 1994년까지 크게 증가하다가 1995년부터 크게 감소하여 2005년 이후부터는 유지-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1994년 대비 약 55.0% 감소, 2010년 기준).⁸⁴⁾



출처. Sickmund & Puzzanchera(2014). National Reports Juvenile Offenders and Victims. p.125

[그림 3-5] 미국 17세 이하 청소년 폭력범죄율의 변화(1980~2010)

재산범죄⁸⁵⁾의 경우 폭력범죄와 달리 1980년부터 1994년까지 거의 변화가 없다가 1995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감소-유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1988

81) Franklin E. Zimring, American Youth Violence,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p.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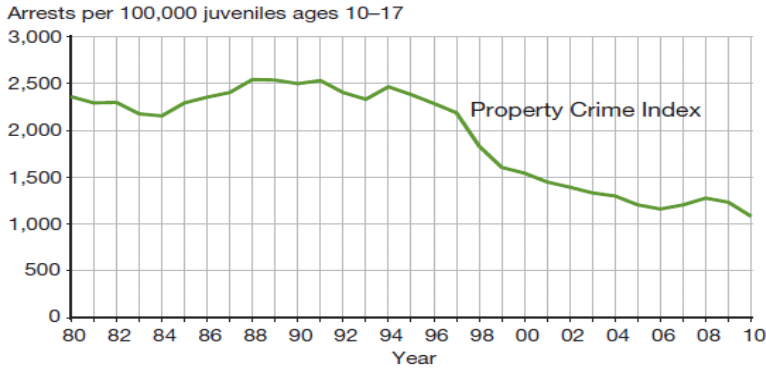
82) Bartollas and Miller, Juvenile Justice in America(8th eds.), 2017, p.31.

83) 폭력범죄에는 살인(murder), 강간(forcible rape), 강도(robbery), 폭행(aggravated assault)가 포함되는데, 강도를 제외하고 2000년대 이후 모두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84) NCJJ & OJJDP, Juvenile Offenders and Victims: 2014 National Report, Pittsburgh, PA: National Center for Juvenile Justice, 2014, p.125.

85) 재산범죄에는 주거침입(burglary), 절도(larceny-theft), 자동차절도(motor vehicle theft), 방화(arson)가 포함되는데, 1980년대 이후 모두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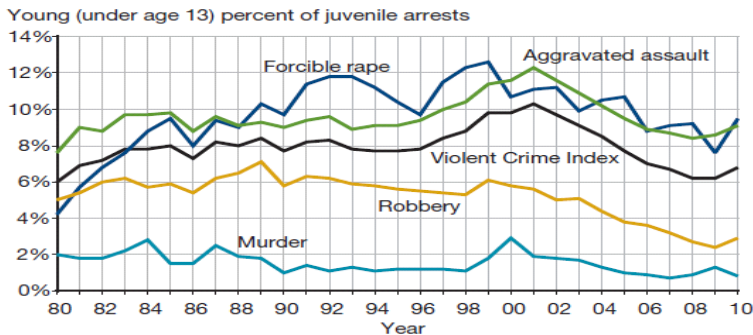
년 대비 약 54.0% 감소, 2006년 기준).⁸⁶⁾



출처. Sickmund & Puzzanchera(2014). National Reports Juvenile Offenders and Victims. p.130

[그림 3-6] 미국 17세 이하 청소년 재산범죄율의 변화(1980~2010)

전체 청소년범죄 중에서 폭력범죄를 저지른 10-12세 청소년의 비율은 1980년 이후 2001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0년 6.6%까지 감소하였다. 폭력범죄의 유형 중에서는 살인을 제외하고 강도, 강간, 폭행이 모두 그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⁸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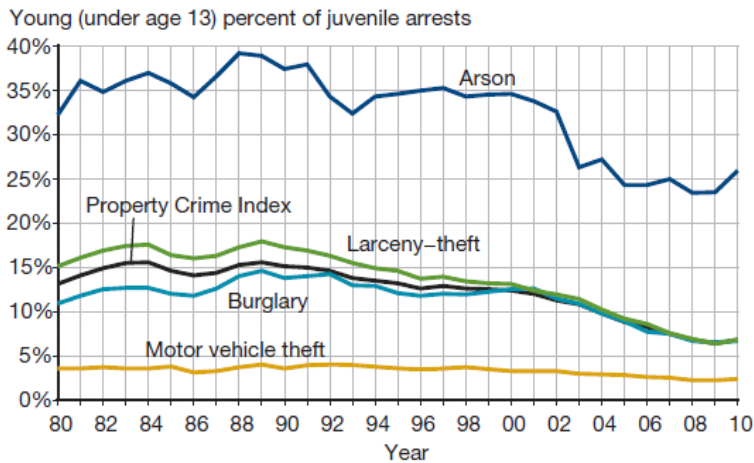
출처. Sickmund & Puzzanchera(2014). National Reports Juvenile Offenders and Victims. p.123

[그림 3-7] 미국 12세 이하 청소년 폭력범죄율의 변화(1980~2010)

86) NCJJ & OJJDP, Juvenile Offenders and Victims: 2014 National Report, Pittsburgh, PA: National Center for Juvenile Justice, 2014, p.130.

87) NCJJ & OJJDP, Juvenile Offenders and Victims: 2014 National Report, Pittsburgh, PA: National Center for Juvenile Justice, 2014, p.123.

다른 한편으로 12세 이하 소년이 저지른 재산범죄의 비중은 1980년대는 꾸준히 유지되다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1980년부터 2010년까지 재판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주거침입은 66.0%, 절도는 82.0%, 방화는 43.0%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⁸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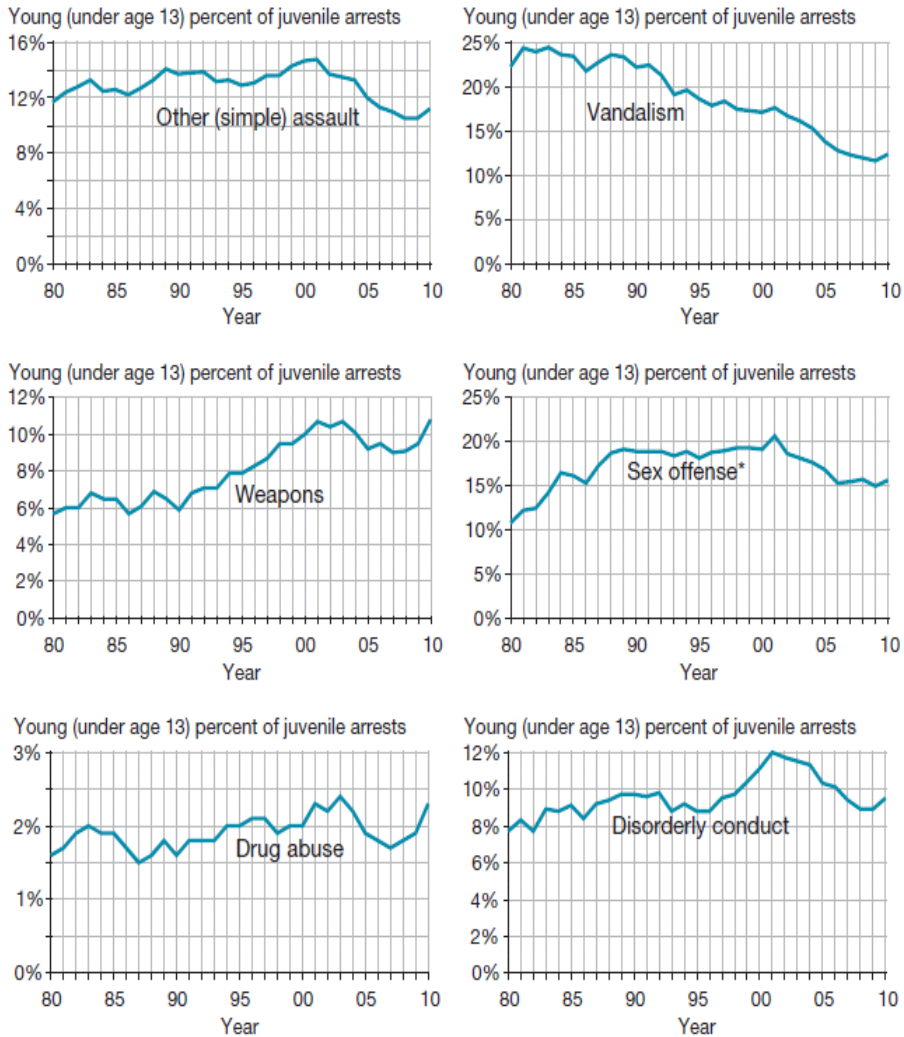
출처. Sickmund & Puzzanchera(2014). National Reports Juvenile Offenders and Victims. p.123

[그림 3-8] 미국 12세 이하 소년 재산범죄율의 변화(1980~2010)

그러나 1980년부터 2010년까지 10~12세 청소년이 저지른 기타 범죄유형을 살펴보면, 총기(101%) 및 마약(103%) 위반은 두 배로 증가하였고, 성범죄(67%), 무질서행동(65%), 야간통행위반(28%)은 모두 증가한 경향을 보였다. 종합해 보면, 10~12세 청소년의 경우 전반적인 범죄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성범죄, 무기소지, 마약위반은 과거와 비교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⁸⁹⁾

88) NCJJ & OJJDP. Juvenile Offenders and Victims: 2014 National Report, Pittsburgh, PA: National Center for Juvenile Justice, 2014, p.123.

89) NCJJ & OJJDP. Juvenile Offenders and Victims: 2014 National Report, Pittsburgh, PA: National Center for Juvenile Justice, 2014, p.123.



출처. Sickmund & Puzzanchera(2014). National Reports Juvenile Offenders and Victims. p.124

[그림 3-9] 미국 12세 이하 청소년 기타 범죄율의 변화(1980~2010)

나. 소년강력법 관련 판례동향

1) *McKeiver v. Pennsylvania*, 403 U.S. 528, 91 S. Ct. 1976 (1971)

16살의 Joseph McKeiver는 강도, 절도, 장물취득으로 기소되었다. 그와 20~30대 정도 되는 다른 공범자는 3명의 청소년을 쫓아가 25센트를 갈취하였다. McKeiver는

담당검사에게 심문 전에 잠시만 만나달라고 요청을 하였다. 심문 후 담당검사는 배심원 재판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거절하였다. 결국 McKeiver는 소년재판을 통해 보호관찰을 받았다. 주 대법원은 당시 연방대법원의 결정을 인용하면서 소년재판과정에서 소년사범의 이념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도 적법절차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주 대법원은 하급심의 판결을 인정하면서 적법절차의 권리가 모두 잘 지켜졌고, 배심원 재판이 전통적인 소년법원의 절차를 훼손시킬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제14조에 의한 적법절차 준수 의무가 소년법원의 배심원 재판에서는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Gault 판례와 Winship 판례의 영향으로 소년법원에서 사실증심의 재판이 이루어짐으로써 판결의 정확성이 높아진 것은 긍정적이지만, McKeiver 판례를 통해 연방대법원은 재판과정에서 배심원이 판사보다 더 정확한지는 알려진 바가 없으며, 오히려 배심재판이 소년법원의 비공식적인 분위기를 해치고 소년범죄자에 대해 적대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⁹⁰⁾

2) Breed v. Johns 421 U.S. 519, 95 S. Ct. 1779 (1975)

1970년 17살의 Gary Johns는 무장강도혐의로 기소를 당했다. LA 소년법원은 Johns를 무장강도혐의와 다른 두 개의 사건을 소년사범절차에 따라 처리를 하였다. 심문과정에서 판사는 사건보류를 통해 Johns를 형사사건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하였다. 변호사는 인신보호영장을 신청하고 형사법원으로 이송은 수정헌법 제5조 일사부재리원칙(double jeopardy)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소년사범절차는 재판(trial)이 아니기 때문에 Johns는 두 번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지도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변호사의 이의제기를 기각하였다. 연방대법원은 항고심에서 소년법원이 형법에 저촉되는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죄자를 처리하는 것은 형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과 동일하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Johns의 형사사건 이송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소년법원의 사건보류는 일사부재리에 따라서는 할 수 없게 되었다.⁹¹⁾

90) NCJJ & OJJDP, Juvenile Offenders and Victims: 2014 National Report, Pittsburgh, PA: National Center for Juvenile Justice, 2014, p.90-91

91) NCJJ & OJJDP, Juvenile Offenders and Victims: 2014 National Report, Pittsburgh, PA: National Center for Juvenile Justice, 2014, p.91.

3) Schall v. Martin, 467 U.S. 253, 104 S. Ct. 2403 (1984)

1977년 14살 George Martin은 강도, 폭행, 무기소유로 기소되었다. 그와 두 명의 친구들은 장전된 총으로 한 명의 머리를 때리고 잠바와 신발을 빼앗았다. Martin은 소년법원에 송치되었고, 법원은 Martin이 풀려나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매우 위험한 인물로 판단하였다. Martin의 담당검사는 공정성의 훼손을 무릅쓰고 인권보호영장을 통해 예방시설(preventive detention)에 Martin을 가두었다. 항소법원은 재판 전 구금은 본질적으로 형벌이라는 이유를 들어 소년법원의 구금명령을 뒤집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예방시설의 필요성에 관한 헌법적 가치를 강조하였다. 연방대법원은 예방시설의 목적이 재판 전 발생할 수 있는 범죄로부터 소년과 사회를 보호하는 것을 정당화하는데 있지 소년범죄자를 처벌하는데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대법원은 잘못된 자유의 박탈로부터 소년범죄자를 보호할만한 충분한 절차, 즉 사실에 대한 고지, 구금의 이유에 대한 설명, 최대한 신속한 심문진행 등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고 보았다. 이 시기에 대법원은 청소년 복지에 우선적 관심을 가졌던 국친사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었다.⁹²⁾

4) Roper v. Simmons 543 U.S. 551, 125 S. Ct. 1183 (2005)

17살 Christopher Simmons와 두 명의 친구들은 주거침입 후 그 집에 있는 Shirley Crook을 살해하였다. Simmons는 체포되었고 그가 순순히 자백함에 따라 담당검사는 관할포기(waiver)를 신청하였다. 미주리 주는 소년법원과 형사법원의 구분이 17살로 정해져 있어서, Simmons은 성인과 동일한 법적 절차가 적용되었다. 당시 미주리 주는 배심재판을 통해 Simmons를 사형시키고자 하였다. Simmons에게 사형이 결정된 이후 연방대법원은 정신지체자에 대한 사형은 수정헌법 제8조와 제4조에서 금지하고 있다는 Atkins v. Virginia 판례를 결정하였다. Simmons는 미주리 대법원에 Atkins v. Virginia 판례의 논리를 따라 헌법이 18세 이하의 소년범죄자에 대한 사형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미주리 법원은 이에 동의를 하였고,

92) NCJJ & OJJDP. Juvenile Offenders and Victims: 2014 National Report, Pittsburgh, PA: National Center for Juvenile Justice, 2014, p.91.

그의 사형결정은 취소되었다. 연방대법원은 이 사안을 검토한 후, 18세 이하의 소년범죄자에 대해 사형을 부과하는 것은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을 금지하는 수정헌법 제8조를 위배한다는 근거를 들어 어떤 소년범죄자에 대해서라도 사형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연방대법원은 결정문에서 “책임감에 대한 미성숙과 발달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청소년은 친구나 동료의 유혹과 압력에 취약할 뿐 아니라, 청소년의 개인적인 성향은 성인처럼 고정된 것이 아니다(lack of maturity and an undeveloped sense of responsibility, juvenile’s susceptibility to peer pressure, and that the personality traits of juveniles are not as adults”라고 하였다. 연방대법원은 다른 나라의 사례와 사회상규의 발전을 고려하여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하였다.⁹³⁾

5) *Graham v. Florida* 560 U.S. 48, 130 S. Ct. 211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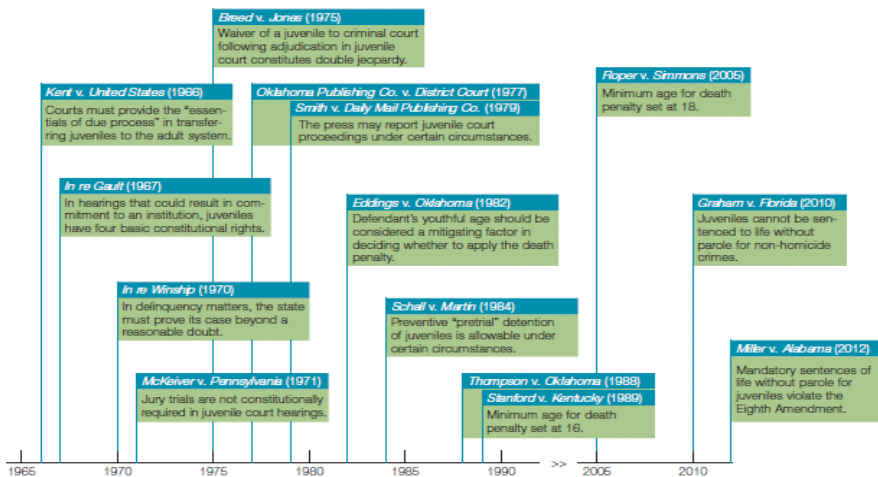
16살의 Graham은 2003년 주거침입강도로 체포되어 유죄협상(plea deal)을 통해 3년 동안의 보호관찰과 12개월 동안 구금명령(jail)을 받았다. Graham은 구금된 지 6개월 후인 2004년 6월 석방되었지만, 풀려난 지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무장강도 혐의로 체포되었다. 플로리다 주정부는 그를 보호관찰위반으로 기소하였다. 법원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열어 그에게 종신형(sentence of life imprisonment)을 선고하였다. Graham은 항소를 통해 그에게 내려진 종신형이 수정헌법 제8조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처벌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다. 연방대법원은 비살인(non-homicide)사건에 있어서 청소년범죄자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8조에 위배된다는 그의 주장에 손을 들어 주었다. 연방대법원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기준에 대한 국가적인 합의가 없다는 점, 청소년범죄자는 책임능력(culpability)에 있어 한계가 있다는 점, 비살인사건을 저지른 청소년범죄자에게 종신형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⁹⁴⁾

93) NCJJ & OJJDP. Juvenile Offenders and Victims: 2014 National Report, Pittsburgh, PA: National Center for Juvenile Justice, 2014, pp.91-92.

94) NCJJ & OJJDP. Juvenile Offenders and Victims: 2014 National Report, Pittsburgh, PA: National Center for Juvenile Justice, 2014, p.92.

6) Miller v. Alabama 567 U.S. 132 S. Ct. 2455 (2012)

14살의 Evan Miller는 친구와 둘이서 야구방망이로 동네사람을 때리고 그의 트레일러에 불을 질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처음에 Miller는 소년사건으로 재판을 받았으나, Alabama 주법에 따라 곧바로 형사법원으로 이송되었다. 담당검사는 Miller를 방화살인(murder in the course of arson)과 가석방 없는 최소한의 종신형에 해당하는 법률에 규정된 범죄(a mandatory minimum sentence of life without parole)로 기소를 하였다. Miller는 수정헌법 제8조를 위배한다며 항소를 하였다.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제8조가 살인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범죄자에 대해서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금지하고 있다고 판시하였다. 연방대법원은 어린 아이에 대한 사형을 금지시킨 Roper 판례와 비살인범죄자에 대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금지한 Graham 판례를 그 근거로 들었다. 연방대법원은 두 사건으로부터 논리적 정당성을 이끌어 내면서 청소년범죄자에 대해서는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적용하여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⁹⁵⁾

[그림 3-10] 미국의 강력범죄 관련 판례 흐름도⁹⁶⁾

95) NCJJ & OJJDP. Juvenile Offenders and Victims: 2014 National Report, Pittsburgh, PA: National Center for Juvenile Justice, 2014, p.92.

96) NCJJ & OJJDP. Juvenile Offenders and Victims: 2014 National Report, Pittsburgh, PA: National Center for Juvenile Justice, 2014, p.90.

다. 소년강력범에 대한 엄벌 효과성

1) 엄벌 효과성 긍정론

소년범죄자에 대한 보류, 이송 등 형사처분의 효과에 대한 경험적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체로 성인구금시설 경험 후 재범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범죄학자들이 수행한 경험적 연구들은 연구대상, 지역, 추적기간 등 방법론적으로 매우 다양한 연구들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 연구들은 형사법원으로 이송된 소년일수록 소년법원에서 처분받은 소년보다 재범(re-offending)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성인법원으로 이송된 소년일수록 소년법원에서 처분을 받은 소년보다 더 빨리 재범을 저지르고, 더 심각한 재범을 저지르는 경향도 발견되었다. 이러한 부정적 결과는 보호관찰과 같은 사회내 처분이든 구금과 같은 시설내 처분이든 마찬가지로 나타났다.⁹⁷⁾

이러한 양적인 결과 외에 4개 주에서 140명의 소년들과 심층면접을 진행한 연구(Forst et al, 1989), Florida 주에서 진행된 150명의 심각한 만성 소년범죄자와의 심층면접 연구(Bishop et al. 2000; Lanz-Kaduce et al. 2002), New Jersey와 California의 소년 시설에 구금된 소년들과 New York과 Arizona의 성인시설에 구금된 소년과의 비교연구 등 질적인 연구결과들은 소년들이 경험하는 소년법원과 성인법원의 반응의 차이를 잘 보여준다. 즉 성인교도소에서 재통합보다는 처벌위주의 엄한 분위기와 열악한 상황에서의 노출은 오히려 범죄유발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⁹⁸⁾

질적인 연구들에 따르면, 성인교도소의 일차적인 목적은 치료가 아닌 구금이며, 성인시설에 있는 소년들은 상담이나 직업훈련, 여타 치료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다. 이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성인과 함께 할 일 없이 보내며 노련한 성인범죄자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즉 성인교도소에서 소년들은 지배, 착취, 보복을 정당화시키는 규칙과 규범을 배우기도 하며, 불법적인 규범을 강화하고 과시하는 행동을 배우기도 한다. 일부는 성인범죄자로부터 범죄 동기나 범죄기술을 배우기도 한다. 반면,

97) Bishop., Donna M., *Juvenile Transfer in the United States, Reforming Juvenile Justice*, Doordrecht: Springer, 2009, p.97.

98) Bishop., Donna M., *Juvenile Transfer in the United States, Reforming Juvenile Justice*, Doordrecht: Springer, 2009, pp.97-98.

소년시설에서는 직원들과 소년들의 관계가 성인시설에 비해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일부 직원들은 소년들에 대해 관심이 없기도 하지만, 소수의 직원들은 소년들의 문제에 도움을 주고 적절히 행동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자 한다. 성인시설의 직원들과 비교할 때, 소년시설의 직원들은 상담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소년들의 관심사에 맞추어 도움을 제공하며, 소년들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하고, 소년들이 스스로를 깨닫고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우며, 소년들의 가족과의 관계개선에 더 신경을 쓰는 경향을 보였다. 연구자들이 공정성, 상담, 치료서비스,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을 기준으로 성인시설과 소년시설을 비교한 결과에서도 성인교정시설이 훨씬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인시설 내에는 나름대로 내부의 조직서열이 지배적으로 작용하는데 비해 소년시설 내에는 서로 동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분위기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것으로 나타났다.⁹⁹⁾

무엇보다 성인교정시설로 보내진 소년들의 경우에는 유죄판결(criminal conviction)이라는 엄청난 낙인(stigma)이 따라다닌다. 이러한 낙인은 사회내 처우든 시설내 처우든 마찬가지이다. 중범죄(felony)로 인한 유죄판결은 취업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뿐만 아니라 군대나 모든 공공기관에도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심지어 학생 대출이나 진학 등 교육 기회에 대한 접근도 불가능하다. 저렴한 공공주택의 입주도 불가능하다. 정상적인 사회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사회에 재통합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소년법원의 처분을 받아 성인이 되어 결혼과 직업을 가짐으로써 범죄를 중단하는 대다수 소년들과 달리 형사법원을 거친 소년들은 낙인으로 인해 직업기회나 사회적 기회가 제한되고 이러한 기간이 오랜 동안 지속됨으로써 재기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¹⁰⁰⁾

2) 엄벌효과성 부정론

소년범죄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부정적 효과를 강조하는 입장에 반론을 제기하는 학자들도 있다. 첫째는 소년들이 자신들의 행동에 책임을 질만큼 충분히 성숙하지

99) Bishop., Donna M., *Juvenile Transfer in the United States, Reforming Juvenile Justice*, Doordrecht: Springer, 2009, pp.98-99.

100) Bishop., Donna M., *Juvenile Transfer in the United States, Reforming Juvenile Justice*, Doordrecht: Springer, 2009, pp.99-100.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이다. 이들에 따르면, 소년들의 미성숙은 법적 지식이나 법의 사용 등과 관련한 인지적 능력, 충동을 통제하는 능력, 동료집단의 압력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주장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의 문제점은 첫째, 이러한 능력을 제대로 측정하고 정책에 의미 있게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춘기 시절 성숙의 수준은 너무나 빠르고 거꾸로 변하기도 하는 등 사람마다 차이가 크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시점의 성숙도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앞서 언급한대로 미성숙의 세 가지 측면의 상호작용을 측정하기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인지능력은 뛰어나지만 충동조절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볼 것인지, 인지능력과 충동조절은 잘 되는데, 갱과 관련한 사건에 개입한 경우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도 쉽지 않다. 무엇보다 이들은 모든 청소년이 미성숙하여 이들을 관대하게 처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근거가 약하다고 주장한다. 일부 소년들에게 해당하는 책임능력의 부족이 모든 소년들에 대한 형벌배제(penal immunity)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¹⁰¹⁾

두 번째 문제점으로 이들은 소년을 성인과 함께 구금하는 것이 문제점은 있을 수 있으나 폭력성향이 높은 소년이 성인과 함께 수용됨으로써 파생되는 안전(safety)은 무시되고 있다는 점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의 학자들은 문제를 단지 나이만으로 구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적절하고 유해한 범죄자와 그렇지 않은 범죄자를 함께 수용하는 성인구금시설의 문제로 접근해야 하고, 소년범죄자의 형사법원으로의 이송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¹⁰²⁾

세 번째 문제점으로 형사법원으로 이송되어 처분을 받은 소년들이 소년법원에서 처분을 받은 소년들에 비해 재범을 더 많이 저지른다는 주장에 대해 그러한 연구결과들의 연구설계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한다. 예를 들어, New Jersey와 New York의 비교 연구에서는 현재 기소된 범죄와 과거 비행력 정보를 신뢰할 수 없고, 법원에서 받은 처분기록은 분석에 빠져 있다고 비판한다. 또한 대부분의 심각한 범죄는 소년법원에서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만으로 소년법원의 표본에 비해 형사법원의 표본

101) Joseph Samborn, Prosecuting Juvenile Offenders in Criminal Court, *Controversies in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New York: Routledge, 2014, p.188.

102) Joseph Samborn, Prosecuting Juvenile Offenders in Criminal Court, *Controversies in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New York: Routledge, 2014, p.189.

이 더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¹⁰³⁾

라. 소년강력법 대응 관련 최근 논의¹⁰⁴⁾

2017년 3월 뉴욕타임즈에서는 뉴욕입법부에서 통과된 형사책임 연령을 높이는 법안(Raise the Age)에 대한 찬사가 끊이지 않았다. 정치 일각에선 정당의 승리라고 자축하였고 지지자들은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역사적인 보호라고 칭하였다. 이 법안의 통과는 향후 뉴욕주에서 16-17세의 소년범죄자를 대하는 방식의 주요한 변화를 의미하며, 소년범죄자가 사법시스템의 관할이 아닌 사회서비스와 특별 훈련과정 아래에 놓이게 되는 주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¹⁰⁵⁾

그동안 뉴욕주는 16-17세 소년범죄자를 형사처벌하는 미국 내 유일한 두 개의 주(나머지는 North Carolina) 가운데 하나였다. 이러한 역행적 태도(retrograde attitudes)로 인하여 금번 조치는 꼭 필요했지만, 이 사건은 Andrew M. Cuomo 주지사의 진보적 이슈에 대한 정치적 승리라고 봐야 한다고 언론에서 평가되고 있다. Cuomo 주지사는 2015년 성인교도소에서 자살을 한 소년범의 유가족 앞에서 “뉴욕주 시민은 가장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사람들이지만, 모두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연설한 바 있다.¹⁰⁶⁾

그러나 이 법안의 통가가 모든 것을 담고 있지는 않다. 이 법안은 지난 몇 주간의 격렬한 협상 끝에 통과된 것이기는 하나, 여러 하위 조항에서 실망스러운 부분도 남겨두었다. 소년범죄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경범죄로 기소된 16-17세 청소년은 가정법원에서 소송을 처리하게 된다. 하지만 비폭력적 중범죄(nonviolent felony) 사건의 경우에는 신설된 ‘소년부(youth part)’나 가정법원이 아닌 여전히 형법법원의 관할에

103) Joseph Samborn, Prosecuting Juvenile Offenders in Criminal Court, Controversies in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New York: Routledge, 2014, p.190.

104) New Times, Raise the Age,’ Now Law in New York, Is Still a Subject of Debate, APRIL 10, 2017(<https://www.nytimes.com/2017/04/10/nyregion/raise-the-age-new-york.html>, 2017. 11.28. 최종검색).

105) New Times, Raise the Age,’ Now Law in New York, Is Still a Subject of Debate, APRIL 10, 2017(<https://www.nytimes.com/2017/04/10/nyregion/raise-the-age-new-york.html>, 2017. 11.28. 최종검색).

106) New Times, Raise the Age,’ Now Law in New York, Is Still a Subject of Debate, APRIL 10, 2017(<https://www.nytimes.com/2017/04/10/nyregion/raise-the-age-new-york.html>, 2017. 11.28. 최종검색).

있게 됨으로써 더 복잡해지게 되었다. 만일 지방검사가 “예외적 상황(extraordinary circumstances, 법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않으면, 16-17세 소년 범죄자는 30일 이후 자동적으로 가정법원으로 보내진다. 뉴욕주에서 매년 발생하는 20,000명 이상의 소년범죄자 중 약 1%를 차지하는 폭력 중범죄(violent felony) 사건도 ① 피해자의 심각한 신체상해 여부, ② 피고인의 무기사용 여부, ③ 형법에 저촉되는 성행위 여부 등 세 가지 사실에서 문제가 없으면 소년부(youth part)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였다.¹⁰⁷⁾

이 법안으로 소년범죄자의 구금규칙도 바뀐다. 2018년 10월 1일부터 17세 미만 소년범은 더 이상 주 소속의 구치소(country jails)에 수감되지 않으며, 2019년부터는 18세의 청소년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범죄에 대해 세심히 계획된 접근법이며, 소년범죄자에 대한 의식이 조금씩 형성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지사의 고문변호사인 Alphonso David는 “이 법안은 공공의 안전과 개인의 권리를 균형있게 반영하고 있다. 우리는 연령상한에 관한 이 법률안이 매우 포괄적이라고 믿는다. 비록 ‘예외적 상황(extraordinary circumstances)’이라는 구절이 법률적으로 정의되어 있지는 않지만, ‘현저한, 이례적인, 놀라운, 엄청난, 믿을 수 없는’ 것으로 폭넓게 이해될 수 있고, 체포된 대다수의 소년들이 가정법원 단계에서 끝날 것이다”라고 말했다.¹⁰⁸⁾

이 법안은 그동안 16-17세 소년들에게 형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져왔던 Children’s Defense Fund-Newyork의 소년사법 담당자인 Beth Powers와 같은 지지자들에게도 환영받았다. Powers는 이 법안이 “수 천 명의 소년들을 가정법원으로 보낼 수 있는 기념비적인 단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¹⁰⁹⁾ 뉴욕주의 이번 입법안의 통과는 다른 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그동안 소년범에 대하여 형사법원에서 문제를 처리해왔던 관행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고, 소년법원에서 다루는 것이 중요함

107) New Times, Raise the Age,’ Now Law in New York, Is Still a Subject of Debate, APRIL 10, 2017(<https://www.nytimes.com/2017/04/10/nyregion/raise-the-age-new-york.html>, 2017. 11.28. 최종검색).

108) New Times, Raise the Age,’ Now Law in New York, Is Still a Subject of Debate, APRIL 10, 2017(<https://www.nytimes.com/2017/04/10/nyregion/raise-the-age-new-york.html>, 2017. 11.28. 최종검색).

109) New Times, Raise the Age,’ Now Law in New York, Is Still a Subject of Debate, APRIL 10, 2017(<https://www.nytimes.com/2017/04/10/nyregion/raise-the-age-new-york.html>, 2017. 11.28. 최종검색).

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제3절 영국의 소년강력범 대응체계

1. 영국 소년사법의 역사

영국은 1908년 「아동법(Children Act)」에 따라 소년법원이 설립되어 죄를 범한 7세 이상 16세 이하 소년에 대하여 소년사법이 관여하기 시작했다. 동법은 범죄를 범한 7세 이상 16세 미만의 소년을 그 대상으로 하였고, 14세 미만 소년에 대한 구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14세와 15세 소년에 대한 구금은 다른 방법에 의한 처분이 불가능할 때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되었다.¹¹⁰⁾ 영국의 초기 소년법원 형태는 사회화된 소년법원 형태가 아니라 성인과 동일한 형사법원을 수정하여 처벌적 색채가 강한 수정된 형사법원이었다.¹¹¹⁾ 법원 설립 초기에 영국은 소년법원에서도 성인재판과 동일하게 치안판사가 심판을 하고, 다만 소년범죄자가 성인범죄자와의 접촉에 의한 악풍감염의 폐해를 피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하였다.

영국의 초기 소년사법의 근간은 형사재판이고 케어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복지적 요소는 2차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1908년법에 아동헌장에 있는 소년복지에 관한 여러 규정을 포함시켜, 1933년 「아동·청소년법(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소년법원의 대상이 되는 연령상한이 15세에서 16세로 인상되었고, 연령 하한도 7세에서 8세로 상향되었다. 1948년 「형사사법법(Criminal Justice Act)」은 오늘날 소년원과 유사한 갱생센터(attendance centre)를 설립하여 범죄 소년의 여가시간을 교정에 참여하게 할 뿐만 아니라, 1948년 「아동법(Children Act)」은 소년원의 대상이었던 방임아동을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부의 소관으로 하여, 범죄를 범한 소년과 범죄를 범하지 않은 소년을 분리하였다.¹¹²⁾

110) 이승현, “영국 소년사법의 최근동향”, 소년보호연구 제18호, 2012, 160쪽.

111) Allison Morris & Henri Giller, Understanding Juvenile Justice, Routledge Kegan & Paul, 1987, p.67.

112) 이승현, “영국 소년사법의 최근동향”, 소년보호연구 제18호, 2012, 160쪽.

1961년 「형사사법법(Criminal Justice Act)」의 개정으로 소년법원에서의 구금기간이 최대 96개월까지로 제한되었고, 보스탈훈련명령(Borstal Training Order)의 적용연령이 15세로 인하되고 수용기간도 2년으로 단축되었다. 1963년 「아동·청소년법」의 개정으로 소년사법의 기능이 보다 복지적인 처우로 전환되었다. 노동당 정권 하의 1969년 「아동·청소년법」은 개선모델을 채용하여 소년사법의 복지화를 진행하는 한편, 처벌 성격이 강한 치안판사의 권한을 약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부문에 그 권한을 주어 지방자치단체의 소년법원 기능을 승인하였다. 또한 소년원은 소년구치소(remand home)와 결합된 지역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하에 두었다. 동법은 범죄소년을 복지의 대상으로 하였지만 실제로 완전히 실시되지는 않았고 보수당정권으로 넘겨져 1970년에 들어서면서 응보모델로의 회귀현상을 보였다.¹¹³⁾

1980년대의 소년사법은 빠른 변화기를 맞이하여, 1982년 형사사법법(Criminal Justice Act 1982)은 보스탈훈련명령을 폐지하고 소년구금명령(youth custody order)을 도입하였다. 소년구금명령은 소년에 대한 처분은 범죄에 비례한다는 양형사상의 개념이 도입되어 부정기형을 폐지하고 15세 이상 21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부과하는 시설수용처분이다. 구금에 있어서 수용기간의 단축이 이루어져 단기수용명령(detention centre order)의 경우도 3개월에서 6개월이었던 것이 21일에서 4개월로 줄어들었다. 이후 다이버전 정책, 예를 들면 경찰의 경고제도(cautioning) 등이 대폭 도입되고, 구금에 대체하여 중간처우프로그램이 도입되었다. 사회봉사명령(community order)의 적용연령 하한도 17세에서 16세로 인하되었다. 감독명령의 경우 준수사항을 법원이 직접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¹¹⁴⁾

1988년 형사사법법(Criminal Justice Act 1988)에서는 소년구금명령과 단기수용명령이 폐지되고, 소년범시설수용명령(detention in young offenders institution)이 도입되었다. 이 수용명령은 14세 이상 21세 미만의 남자청소년과 15세 이상 21세 미만의 여자청소년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처분으로, 연령 및 성별에 따라 수용 가능한 기간의 장기와 단기가 구분되었다.

1990년대에는 소년범죄에 대한 보수적인 정치적 대응 경향이 강해지고, 대중매체

113) 이승현, “영국 소년사법의 최근동향”, 소년보호연구 제18호, 2012, 161쪽.

114) 이승현, “영국 소년사법의 최근동향”, 소년보호연구 제18호, 2012, 161쪽.

에 의해 소년범죄에 대한 부정적 측면을 과장하는 여론이 형성되었으며, 상습범의 비행이 소년범죄를 증가의 주요원인으로 평가되면서 소년사법의 방향이 복지에서 처벌로 변화하였다.¹¹⁵⁾ 1991년 형사사법법의 개정으로 소년연령이 18세 미만으로 인상되었고, 치안판사법원 내에 소년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명칭이 'Juvenile Court'에서 'Youth Court'로 바뀌었다. 1994년 형사사법 및 공공질서법(Criminal Justice and Public Order Act)에 따라 소년범 시설수용명령의 최장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고, 12세에서 14세 누범소년에 대한 구금처분으로 수용훈련명령(Secure Training Order)을 새롭게 마련하였다.¹¹⁶⁾

1993년에는 영국 소년범죄 역사상 유명한 제임스 벌저 사건(James Bulger Case)¹¹⁷⁾이 발생하여 소년사법 개혁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 사건 이후 엄벌화 정책이 도입되는 반면, 다이버전정책은 후퇴하였다. 예를 들면 안전훈련센터의 창설, 저연령 소년에 대한 구금의 확충, 구금기간의 상한 인상 등 보수당 정부는 소년범죄대책을 명확하게 내세웠다.¹¹⁸⁾

1994년 형사사법 및 공공질서법(Criminal Justice and Public Order Act 1994)에서 소년범 시설수용명령의 수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고, 12세부터 14세까지 누범소년에 대한 구금처분인 안전훈련명령(secure training order)이 신설되었다. 1997년 범죄(양형)법(Crime (Sentences) Law 1997)의 개정으로 외출금지명령의 적용하한이 16세에서 10세로 인하되었고, 법원이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결합명령을 함에 있어서 본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법원이 10세 이상 18세 미만 소년의 유죄가 인정되는 시점에서 이름을 공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¹¹⁹⁾

1997년 노동당정부도 엄벌화 노선을 계승하여 『더이상 허용되지 않는다(no more

115) 김은경/김지선/이승현 외, 21세기 소년사법 개혁의 방향과 과제(I): III.대안의 모색, 한국형사정책연구, 2007, 70쪽.

116) 강경래, “각국의 소년사법제도 최근동향: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보호 통권 제17호, 법무부, 2005, 23쪽.

117) James Bulger 사건은 1993년 3월 당시 10세의 소년 2명이 영국 리버풀 교외에서 2세의 아동을 살해한 사건으로, 쇼핑센터에서 엄마와 떨어진 벌저를 근처의 선로 옆까지 데리고 나가 심한 폭행을 한 다음 선로 위에 둔 채로 가서 사망하게 하였다. 영국에서 역사상 살인죄의 기소로는 최연소이었다. 그 후 재판에서는 15년 이하의 부정기구금형이 선고되었지만, 2001년에 가석방이 되어 사회복귀 되었다. 소년에게 비행력이 있었던 점, 폭력영화의 영향이 지적된 점 외에, 소년에 대한 구금형의 의의, 중대사건의 소년범죄자의 사회복귀의 방식 등이 논의되었다.

118) 이승현, “영국 소년사법의 최근동향”, 소년보호연구 제18호, 2012, 162-163쪽.

119) 이승현, “영국 소년사법의 최근동향”, 소년보호연구 제18호, 2012, 163쪽.

excuses)¹²⁰⁾』를 표어로 하고 있고, ① 범죄소년의 재범의 방지, ② 소년 및 그 보호자에게 소년의 범죄행위를 직시하게 할 책임 부여, ③ 초범 소년에 대한 조기개입을 위한 사회내처우 마련, ④ 체포로부터 처분까지의 절차의 신속화 및 효율화, ⑤ 소년사법관계기관의 연계 강화, ⑥ 소년사법절차의 투명성 확보, ⑦ 소년사법절차에서 피해자의 의견 반영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소년사법제도 개혁을 제안하였고, 이후 1998년법에서 실제로 구체화되었다.¹²¹⁾

2. 영국 소년사법에서의 연령기준

현행법상 형사책임 연령은 10세이며, 다른 EU국가와 비교하면 낮은 것이 특징이다. 10세라는 연령 설정의 장점은 조기개입에 의해 범죄를 예방하고 청소년에게 스스로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10~11세는 범죄적 행동에 빠지기 시작하는 연령이므로 조기에 국가가 개입함으로써 범죄로의 진입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10세에게 형사책임을 지운다고 하는 것이 10세부터 성인범죄와 동일하게 취급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시설수용을 명하는 수용 및 훈련명령의 대상도 12세 이상이고, 10세와 11세의 소년이 시설에 수용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1998년법에서 이전에 존재하던 책임무능력 추정원칙이 폐지됨에 따라 저연령범죄에 대한 책임은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¹²²⁾

소년법원의 대상연령도 10세부터 17세까지이다. 물론 1908년 아동법에서는 소년법원의 대상이 7세부터 15세까지였고, 다만 구금형의 선고에 있어서는 14세 이상으로 되어 있었다. 1933년 아동 및 청소년법에서 상한이 16세로 인상되었고, 이후 제2차 세계대전 후 소년범죄자에 대한 종신형이 폐지되고 구금의 사용도 제한이 되어 구금의 선고 하한이 15세로 인상되었다. 한편, 1991년 형사사법법에서는 소년법원의 대상이 17세까지 확대되고, 청년의 범죄와도 구별되게 되어 16세·17세를 준성인(near adult)으로 보아 다른 연령층과 구별을 두었다. 그리고 10세에서 13세까지를 아동(child), 14세부터 17세까지를 청소년(young person)이라고 하였다.

120) no more excuses(<http://www.homeoffice.gov.uk/documents/jou-no-excuses?view=html>, 2017. 12.1. 최종검색)

121) 이승현, “영국 소년사법의 최근동향”, 소년보호연구 제18호, 2012, 163쪽.

122) 이승현, “영국 소년사법의 최근동향”, 소년보호연구 제18호, 2012, 165쪽.

3. 영국 소년사법절차

가. 경찰단계 사건처리

소년범죄에 있어서 경찰이 많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어, 경미범죄에 대하여 경찰이 비공식적 경고(informal warning)에 의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이 처분은 정식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소년의 갱생에 있어 더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다이버전 처분이다. 비공식적 경고에 의해 처리된 사건은 공적으로 기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후 형사절차에서 원용되지는 않는다. 경찰관이 비행사실을 입증할만한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고, 범죄소년이 스스로 죄를 인정하고 있고, 전력이 없어 소추하지 않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보호자와 함께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경찰관은 법원에 송치하지 않고 견책(reprimand)이나 최종경고(final warning)를 한다(1998년법 제65조, 제66조).

「범죄자의 법적 원조, 선고, 처벌에 관한 법률(Legal Aid, Sentencing and Punishment of Offenders Act 2012)」은 최종경고계획(Final Warning Scheme)이라고 알려진 견책 및 경고조항(reprimands and warnings)을 폐지하고 제135조에 청소년 주의(youth caution)를 도입하였다. 청소년 주의(youth caution)은 공식적인 비사법적 처분으로, 10-17세 소년 범죄자에게 기소에 대한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청소년 주의(youth caution)는 소년의 범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있지만 기소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 부과될 수 있다. 주의에는 준수사항이 따르며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 형벌이 부과되지는 않지만, 이후 형사소송절차에서 언급될 수는 있다.¹²³⁾

통상 최종경고가 선고되면 가족의 참가 등을 포함한 지역사회와의 개입프로그램이 실시된다. 초범은 견책이지만, 2회는 경고, 3회에는 기소된다. 경고를 받은 자는 소년 범죄대응팀에 위탁되거나 사회복귀프로그램에 참가해야 한다.¹²⁴⁾

123) Ministry of Justice, Youth Cautions Guidance for Police and Youth Offending Teams, Youth Justice Board, Ministry of Justice, 2013, p.5.

124) 이승현, “영국 소년사법의 최근동향”, 소년보호연구 제18호, 2012, 166쪽; Anthony Bottoms & James Dignan, *Youth Justice in Great Britain*, in Michael Tonry & Anthony N. Doob, *Youth Crime and Youth Justice: Comparative and Cross-national Perspective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Journals, 2004, pp.79-111; Graham Walters, *Criminal Proceedings Against Juveniles*, Sweet & Maxwell, 1984, pp.20-21; John Graham, *Juvenile Crime and Justice in England and Wales*, in Nicholas Bala, Joseph P. Hornick & Howard N. Snyder,

나. 검찰단계 사건처리

경찰에서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사건은 검찰청(crown prosecution service)으로 송치된다. 검사는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의 유무를 판단하고, 증거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소를 유지한다. 검사가 소추된 사안을 입증하기 위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공소를 취소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서 소추된 죄명을 변경할 수도 있다. 소년사건의 경우에는 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거나 검사가 공소를 유지할만한 공익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 상당의 의견을 첨부하여 사건을 경찰에게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다.¹²⁵⁾

다. 소년법원

영국의 소년법원은 형사법원의 색채가 강한 치안판사법원(Magistrate Court)이다. 실질적으로 형벌이 선고되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소년법원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 절차도 성인을 취급하는 법원과 동일하게 당사자주의를 취하고 있어 검찰이 입증 책임을 지지만 성인 절차보다도 단순하고 비공개 심리로 이루어진다. 소년법원은 18세 미만의 소년이 피고인으로서 유죄인정을 한 때에 처분을 선고할 수 있다. 처분을 선고할 때에는 사안이 중대하지 않고 벌금 이하의 처분이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이 유죄인정과 함께 처분을 선고하지만, 그 이상의 처분이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관찰관이나 사회복지사에게 판결전조사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¹²⁶⁾

소년법원에서 선고할 수 있는 처분으로는 사회내처우, 사회내처우의 부가처분, 구금처분(시설내처우) 등 3종류가 있다. 사회내처우에는 절대적 석방(absolute discharge), 조건부석방(conditional discharge), 벌금(fine), 위탁명령(referral order), 피해회복명령(reparation order), 행동계획명령(action plan order), 감독명령(supervision order), 갱생센터 출두명령(attendance centre order), 지역사회복귀명령(community rehabilitation order), 사회내처벌명령(community punishment order) 등이 있다. 또한 사회내처우와

Juvenile Justice Systems: An International Comparison of Problems and Solutions, Thompson Educational Publishing, Inc., 2001, pp.67-88.

125) Walters, *supra* note 14, pp.20-21.

126) 이승현, “영국 소년사법의 최근동향”, 소년보호연구 제18호, 2012, 167쪽.

함께 병합하여 선고할 수 있는 부가처분으로는 외출제한명령(curfew order), 배제명령(exclusion order), 약물치료·검사명령(drug treatment and testing order), 배상명령(compensation order), 집중감독감시프로그램(intensive supervision and surveillance programme), 집중양육프로그램(intensive fostering program), 보호자교육명령(parenting order) 등이 있다. 범죄의 중대성, 범죄경력, 공공에 대한 위험성 등에 의해 사회내처우가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년에 대하여 구금처분이 선고된다. 소년에 대한 구금처분에는 구금 및 훈련명령(detention and training order)이 있다. 이는 15세~17세의 소년 및 법원이 상습범이라고 인정한 12~14세의 소년에게 적용 가능한 처분이다. 실질적인 형벌이라고 할 수 있다. 구금처분의 기간은 최장 2년이고 선고된 기간의 1/2은 구금시설에 수용되고, 나머지 1/2은 소년범죄대응팀(Youth Offender Teams)의 감독 하에 사회내처우를 받게 된다. 법원은 필요에 따라 소년이 집중감독감시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것을 사회내처우의 이행조건으로 할 수 있다.¹²⁷⁾

사회봉사명령(community service order)은 40시간부터 240시간까지 일정 기간 동안 청소년에게 무급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작업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주말 저녁 시간 등의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봉사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이 명령은 대상자의 동의가 없거나 지역에서 봉사할 수 있는 작업이 없는 경우에는 명령할 수 없다. 이 명령은 보호관찰소 사회서비스팀(Probation Community Service Team)에 의해 감독된다. 사회 내 봉사의 예로는 구세군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의 보조, 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나 주택의 보수작업 등이 있다.

라. 형사법원

10세 이상 비행사실이 인정되는 18세 미만의 범죄소년의 사건은 원칙적으로 소년법원의 약식재판(summary trial)으로 심리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일부 사건은 성인 형사사건을 주로 심리하는 형사법원에서 심리한다. 살인죄로 기소된 경우뿐만 아니라, 성인의 법정형이 14년 이상 구금형에 해당하는 사건, 강제추행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14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무모한 운전으로 인한 과실치사사건, 알코올

127) Andrew Ashworth, Paul Cavadino, Bryan Gibson, John Harding, Andrew Rutherford, Peter Seago & Lorna Whyte, *The Youth Court*, Waterside Press, 1992, pp.33-37.

또는 약물 남용 후 음주운전에 의한 과실치사사건 등 중대한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소년법원이 배심재판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사건은 유죄인정 이전에 형사법원에 이송된다. 소년이 모살의 사실로 유죄가 된 경우에는 형사법원은 반드시 무기구금형을 부과해야 한다(2000년법 제90조). 기타 고살의 사실로 유죄로 된 경우(2000년법 제90조)나 성인이라면 14년 이상 구금형을 부과할 가능성이 있는 일정한 중대범죄(2000년 제91조)로 유죄로 된 경우에는 성인에게 과할 구금형의 최상 한도에 해당하는 구금형을 소년에게도 부과할 수 있다. 소년이 성범죄 또는 기타 일정한 범죄를 범한 경우로 소년이 재범을 저지름으로 인해 공공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큰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어 형사법원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하여는 통상보다도 장기의 구금형이 선고된다(2003년법 제226조, 제228조).

4. 영국의 소년강력범 대응실태

가. 소년강력범죄의 대응실태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소년사법시스템에서는 18세 미만의 청소년의 범죄 및 재범 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고, 영국 소년사법에서 소년범의 수는 2016년 3월까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소년사법에 초기진입한 소년(First Time Entrants: FTEs)의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2006년 3월 말에 비해 유죄판결받은 소년은 83%, 주의(caution) 혹은 유죄판결(court conviction)을 받은 소년은 81% 감소했으며, 구금된 청소년의 수도 66% 감소했다. 재범자와 재범의 총 수도 전년 대비 각각 15%, 10%씩 지속적으로 하락한 반면, 소년(2015년 3월)의 12개월 내 재범율은 37.9%로 비록 2006년 3월 말 보다는 4.3% 높아졌지만, 전년에 비해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다.

1) 체포(Arrests)와 주의(youth cautions) 현황

2016년 3월 말, 경찰 통계에 의하면 영국과 웨일즈에서 총 896,200명이 체포되었고 그 중 88,600명이 10-17세의 청소년으로 전체의 10%를 차지했다. 이는 전체인구 대비 10세 이상 청소년의 수와 같은 비율이다. 청소년의 체포건수는 2015년 3월에 비해 7% 감소했으며 2006년 3월 말에 비해 75%가 감소했다. 이는 2007년 이래로 처음으로

감소한 것이다. 흑인, 아시아계 및 소수민족(BAME) 그룹에서는 2016년 3월 말에 21,900명(25%)의 청소년을 체포했으며 흑인은 10,800명(12%)을 차지했다. 성별에 따르면, 여성은 14,900명(전체의 17%), 남성은 73,700명(전체의 83%)을 차지했다. 2016년 3월 말에 경찰은 18,000건의 소년 주의(cautions) 처분(이전 견책 및 최종 경고[previously reprimands and final warnings])을 내렸다. 이는 전년도 21,700건에 비해 17% 감소한 수치이며 2006년 3월 말의 122,300건에 비하면 85% 감소한 수치이다.¹²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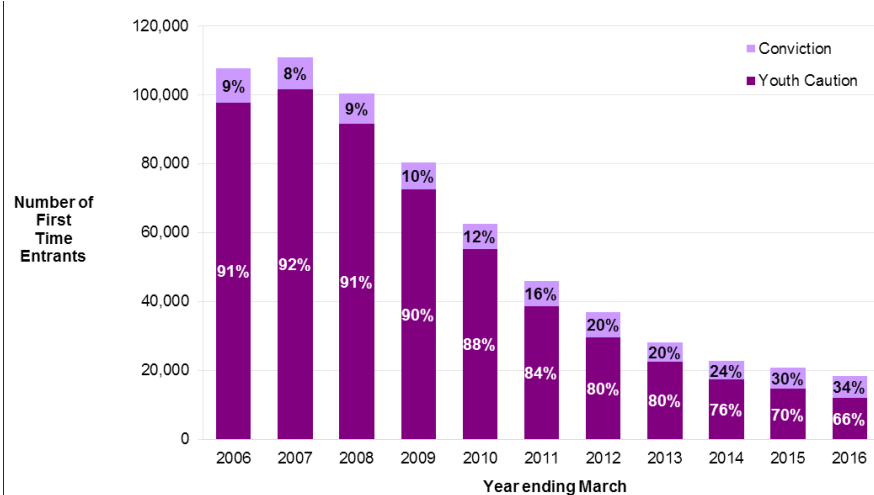
2) 초기진입(First Time Entrants: FTEs) 현황

소년사법단계 초기진입자 수는 2007년 3월 말을 정점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고, 2016년 3월 말에는 초기진입자가 18,300명이었다. 이것은 전년도 대비 12% 감소한 것이며, 2006년 3월 말과 비교했을 때에 83%의 감소를 나타낸다. 2016년 3월 말에까지 18,300명의 초기진입자 중 66%가 주의(caution)를 받았으며, 그 외에는 대부분 지역사회 처분(communities sentences)을 받았다. 2006년 3월 말, 소년 주의 처분을 받은 초기진입자의 비율은 90%였는데, 이 역시도 2007년 3월 이후 매년 감소했다. 재범을 제외하고, 소년 초범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고 있다. 2016년 3월 말, PNC에 기록되어 처벌(주의나 유죄판결)을 받은 10-17세의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는 45,200건이었다. 이 중 40%가 초범이었고, 나머지는 재범이었다. 이는 2006년 3월까지 청소년이 저지른 약 218,100건의 범죄 중 49%가 초범이었던 것과 비교되는 수치이다.¹²⁹⁾

2016년 3월말, 소년사법단계 초기진입자 중 10-14세인 소년범은 31%였고, 전체 초기진입자의 평균연령은 15.2세였다. 2016년 3월까지 소수민족 그룹의 청소년이 전체 초기진입자 중 19%를 차지했고, 백인 청소년은 72%(9%는 알려지지 않았음)였는데, 이는 2006년 3월의 11%의 소수민족 그룹, 85%의 백인 청소년(3%는 알려지지 않음)과 비교되는 수치이다. 그리고 2016년 3월 말, 여자 소년범은 초기진입자의 21%를 차지했고, 남자들은 78%였다(나머지 1%는 알려지지 않음).¹³⁰⁾

128) U.K. Youth Justice Board, Youth Justice Statistics 2015/16 England and Wales Executive Summary, Ministry of Justice, 2017, p.5.

129) U.K. Youth Justice Board, Youth Justice Statistics 2015/16 England and Wales Executive Summary, Ministry of Justice, 2017, p.6.



[그림 3-11] 소년사법단계에 들어온 초기진입자 추이¹³¹⁾

3) 주의 또는 법원 유죄판결 받은 청소년 현황

2016년 3월까지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에서 청소년 주의(youth caution) 혹은 법원 판결을 받은 청소년은 32,900명이다. 이는 2015년 3월 말보다 13%, 그리고 2011년 3월보다 61% 감소한 수치이다. 2011년 3월 말과 비교하여 소수민족 그룹에서 주의처분을 받거나 법원판결을 받은 청소년의 수가 47%가 감소하였고, 백인 청소년은 65%가 감소하였다. 또한 2016년 3월 말, 주의 및 법원판결을 받은 소수민족 그룹의 청소년은 전체의 22%였고, 백인 청소년은 75%였다(나머지 4%는 알려지지 않음). 성별에 따른 비교로서 2016년 3월 말, 여자 청소년은 18%를 차지한 반면 남자 청소년은 82%였다. 10-14세의 청소년은 전체 소년범의 24%를 차지했고, 나머지 76%는 15-17세 인 것으로 나타났다.¹³²⁾

130) U.K. Youth Justice Board, Youth Justice Statistics 2015/16 England and Wales Executive Summary, Ministry of Justice, 2017, p.7.

131) U.K. Youth Justice Board, Youth Justice Statistics 2015/16 England and Wales Executive Summary, Ministry of Justice, 2017, p.4.

132) U.K. Youth Justice Board, Youth Justice Statistics 2015/16 England and Wales Executive Summary, Ministry of Justice, 2017, p.7.

4) 혐의가 입증된 소년사건

2016년 3월까지 범죄가 입증된 소년 사건은 총 79,600건이다. 하지만 이는 감소하고 있는 추이이다. 2015년 3월과 비교했을 때 9%, 그리고 2006년 3월 말과 비교했을 때는 74%가 감소한 것이다. 소년들이 저지르는 가장 일반적인 유형의 범죄는 대인 폭력(전체의 26%), 도난 및 절도(14%), 형사상 피해(12%)이다. 2006년 말과 비교했을 때, 모든 유형의 범죄는 감소하였고, 특히 절도, 자동차 범죄 및 공공질서에 관한 범죄수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범죄유형별 감소율의 차이는 범죄 유형의 비율의 변화를 가져왔다. 2016년 3월 말을 기준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범죄는 폭력으로서 2006년 3월에 비해 8% 증가하여 가장 많이 증가한 범죄이다. 마약 범죄 역시 약 4% 증가했다. 반면에 자동차 관련범죄는 8%로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으며, 도난 및 절도는 4% 감소했다.¹³³⁾

5) 재구금 소년범

2016년 3월 말, 청소년의 재구금을 포함한 법원의 판결은 16,300건이 있었는데, 이는 2015년에 비해 12%, 2011년에 비해 51% 감소한 수치이다. 대부분(87%)의 경우 청소년은 석방(bail)되었고 3%의 경우 청소년은 지역사회에서의 보호처분(remanded in the community with intervention)을 받았다. 그리고 나머지 9%는 소년 구금시설로 송치되었다. 2016년 3월 말, 재구금된 인원 중 소년범은 210명이었고, 이는 전체 대비 평균 22%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또한 이는 2006년 3월말에 구금된 평균 구금인구가 620명과 동일한 비율이다. 2016년 3월 말, 최초로 구금판결을 받은 청소년 중 64%가 구금 직후 구속되지 않았고 27%는 무죄로, 38%는 구금되지 않는 형을 선고 받았다.¹³⁴⁾

6) 법원의 선고

2016년 3월,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27,900명의 청소년이 법원의 선고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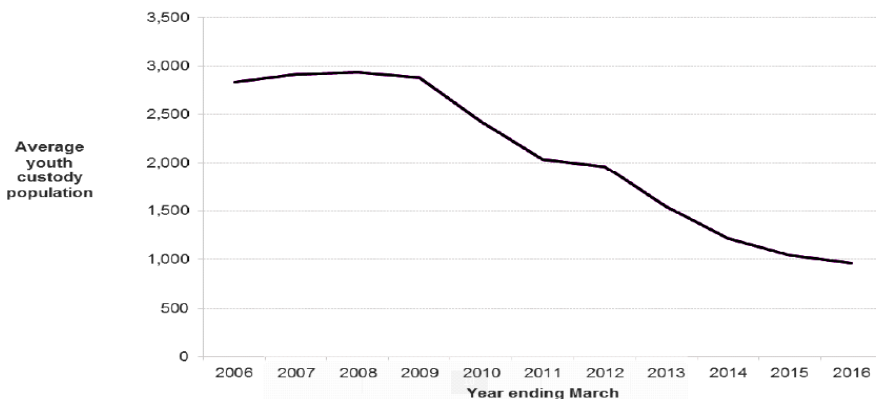
133) U.K. Youth Justice Board, Youth Justice Statistics 2015/16 England and Wales Executive Summary, Ministry of Justice, 2017, p.8.

134) U.K. Youth Justice Board, Youth Justice Statistics 2015/16 England and Wales Executive Summary, Ministry of Justice, 2017, pp.8-9.

이 수치는 전년도에 비해 10%, 2006년 3월말에 비해서는 71% 감소한 것이다. 그중 68%는 지역사회 형(referral 형과 재사회화 명령 포함)으로서 가장 일반적으로 부과된 형으로 나타났다. 2016년 3월, 1,700명의 소년들은 즉각적인 구속을 선고 받았다(모든 선고자의 6%). 이 수치는 1,800명의 소년들이 즉시구금을 선고받았을 때인 2015년 3월말보다 9%가 감소한 것이며, 2006년 3월(6,100명) 이후 73%가 감소한 것이다. 기소될 수 있는 (더 심각한) 범죄에 대한 선고의 경우, 소년범의 구금 기간은 2016년 3월 기준으로 16.1개월이었으며, 이는 2015년 3월 기준의 14.8개월, 2006년 3월 말 기준의 11.4개월보다 증가한 것이다.¹³⁵⁾

7) 소년보호시설 구금

소년보호시설(youth secure estate)에는 10-17세의 소년범만이 처분을 받아 들어오게 된다. 하지만 만약 짧은 형을 선고받았거나, 제도의 혼란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 필요할 경우에는 18세의 청소년들도 이러한 시설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2016년 3월 말을 기준으로, 구금된 소년범은 평균 960명이다. 평균 구금 인구는 전년도에 비해 8% 줄었고, 2006년 3월말에 비해 66% 감소했다.¹³⁶⁾



[그림 3-12] 18세 이하 구금인구(2006~2016)¹³⁷⁾

135) U.K. Youth Justice Board, Youth Justice Statistics 2015/16 England and Wales Executive Summary, Ministry of Justice, 2017, p.9.

136) U.K. Youth Justice Board, Youth Justice Statistics 2015/16 England and Wales Executive Summary, Ministry of Justice, 2017, p.9.

137) U.K. Youth Justice Board, Youth Justice Statistics 2015/16 England and Wales Executive

구금시설의 수가 줄어들었음에도 범죄집단에 소속된 청소년의 평균수는 전년도에 비해 증가했다. 특히 마약범죄 뿐만 아니라 성범죄도 증가했다. 2011년 3월 말과 비교할 때, 강력범죄 집단에 소속되어있는 청소년의 비율이 증가했다. 강도, 성범죄로 인해 구금된 청소년의 비율은 2011년 3월까지 52%에서 2016년 3월에는 68%까지 증가했다. 가장 큰 증가는 2011년 3월 10%가 증가된 폭력 범죄(24%에서 34%로 증가)이고, 성범죄 또한 이 기간에 5%에서 10%로 증가하였다. 반면에 가장 큰 감소는 16%에서 2%로 감소한 질서 위반(breach of statutory order)이었다.¹³⁸⁾

2016년 3월 기준, 구금된 소년범의 58%가 백인이었다. 소수민족 그룹의 구금된 소년범은 18세 미만 보호 인구 중 41%를 차지했다. 이는 같은해 주의 및 유죄판결을 받은 소수민족 그룹의 소년범 중 22%가 소수민족 그룹이었다는 것과 비교되는 수치이다. 한편 구금된 흑인 소년은 2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해 주의 및 법원 판결을 받은 소년 중 75%가 백인, 9%가 흑인 출신이라는 것과 비교된다. 성별에 따른 비교로서 2016년 3월 기준, 여자 청소년은 전체 구금인구의 4%로, 2006년 3월에 비해 8% 감소한 수치이다. 또한 이는 주의 혹은 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여자 청소년이 18%인 것과도 비교된다. 그리고 소년보호시설 처분을 받은 소년범이 평균적으로 시설에서 보낸 일수는 2016년 3월 기준, 118일인데, 이는 전년도의 110일보다 8일 증가한 수치이다. 2016년 기준, 소년범이 보낸 일수를 계산해보면, 재구금은 59일, DTO는 112일, 91조에 의한 판결은 278일, 다른 형은 394일이었다.¹³⁹⁾

8) 재범률(Reoffending)

주의(caution)처분을 받았거나 법원에 구금되지 않은 유죄판결, 그리고 2015년 3월 당시 만기인 구금 처분을 받은 소년은 총 36,300명이었다. 이는 재범통계를 산출하는데 사용된 추적조사 소년범의 수이다. 이 중 13,700명은 1년 추적관찰기간동안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범율이 37.9%임을 나타내지만, 과거 증가추세에 있던

Summary, Ministry of Justice, 2017, p.10.

138) U.K. Youth Justice Board, Youth Justice Statistics 2015/16 England and Wales Executive Summary, Ministry of Justice, 2017, pp.6-7.

139) U.K. Youth Justice Board, Youth Justice Statistics 2015/16 England and Wales Executive Summary, Ministry of Justice, 2017, pp.6-7.

것과 비교했을 때 전년도(38.0%)에 이은 안정적인 수치이다. 하지만 이 비율은 2004년 추적조사보다 4.3% 증가한 값이다. 추적조사 집단 내의 소년 재범자는 2007년 3월 이후 매년 줄어들었다. 또한 2014년 3월에 비해 재범자의 수는 15%, 재범자가 저지른 범죄의 수는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범한 소년범은 총 45,300회의 재범을 저질렀고, 이를 평균적으로 환산하면 재범자당 3.3회 재범을 저지른 꼴이다. 구금되었던 소년범의 재범률은 68.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전년대비 1.5% 증가한 수치이지만, 2004년에 비해서는 6.8% 감소한 수치이다.¹⁴⁰⁾

9) 범죄경력(Criminal history)

2016년 3월 말 기준, 주의 및 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은 소년범들은 평균적으로 이전에 2.2건의 범죄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5년 3월 기준 2.3건에서 약간 감소한 것으로, 2006년 3월의 1.7건보다는 증가한 수치이다. 범죄경력이 있는 소년 즉 소년 재범자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 2015년 3월 기준, 74%의 소년범이 이전 범죄 경력을 가지고 있었고, 2015년 3월에는 77%, 2006년 3월에는 88%가 있었다. 가장 광범위한 범죄경력(15범 혹은 더욱 많은 이전의 주의 및 판결)을 받은 소년의 대다수는 즉각적 구속처분이 43%, 지역사회형(26%)으로 선고되었다. 소년 초범의 경우 이러한 처분 유형에 대한 선고비율은 각각 2%, 31%로 나타났다. 범죄 경력이 없는 초범의 구금률은 2016년 3월 기준 12%였는데, 이는 지난 10년간의 비율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¹⁴¹⁾

10) 형사법원의 적시성 측정(The criminal court timeliness measure)

형사법원의 적시성 측정(The criminal court timeliness measure)은 형사사법제도에 서 형사사건이 사법체계에서 진행된 평균적인 시간을 측정한 것이다. 2016년 3월 기준, 소년범죄에 있어서 범죄가 발생한 시점에서 사건이 완료될 때까지(그리고 최종

140) U.K. Youth Justice Board, Youth Justice Statistics 2015/16 England and Wales Executive Summary, Ministry of Justice, 2017, p.13.

141) U.K. Youth Justice Board, Youth Justice Statistics 2015/16 England and Wales Executive Summary, Ministry of Justice, 2017, pp.13-14.

결정이 내려진) 평균 일수는 130일로 나타났다(중위수 94일). 이는 전년도의 125일(중위수 88일)에서 증가한 것이며, 2011년 3월 이후 지속적 증가추이를 보인다.¹⁴²⁾

5. 영국정부의 소년구금에 대한 인식과 대응

21세기 초 영국과 웨일즈의 청소년 법정 분위기는 토니 블레어 총리의 칙령에서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 '기회가 주어져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처벌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 갱생 및 재적응을 위한 기회와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실패하면 처벌적 구금이 뒤따르게 된다. 2004년 12월에 발표된 범죄자 사례 관리 통계에 따르면, 구금 시설에 수용된 15-17세 소년범의 수는 1993년의 769건에서 2002년의 2,089건으로 증가했다. 2004년 11월까지 18세 이하 청소년 3211명(그룹홈 242명, 보안 교육 센터 223명, 구금시설 2746명)이 구금되었다.¹⁴³⁾ 이것은 신노동당(New Labour)이 1997년에 권력을 잡은 이후로 약 24%의 증가를 보였다. 또한 기소 대상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15-17세 소년의 평균 형량은 1992년 9.2개월에서 2001년 10.8개월로 증가했다. 입법 개혁, 특히 1994년 「형사사법 및 공공질서법(Criminal Justice and Public Order Act 1994)」과 1998년의 「범죄 및 무질서법(Crime and Disorder Act 1998)」은 아동 구금의 단초가 되었다. 1992년 15세 미만의 소년 약 100명이 구속되었다. 그러나 2001년에는 15세 미만의 소년 800명에게 선고되어, 800%의 증가추세를 보였다. 법률로 인해 더 많은 여자청소년들이 구금되었고, 여자청소년의 구금은 남자청소년과 관련된 비율보다 높다. 비록 남자청소년에 비해 여자청소년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지난 10년간 여자청소년의 구금은 400% 증가했다. 이것은 여자청소년들의 범죄가 보다 흉포화되지는 않았다는 데이터와 대비되는 결과이다. 한편,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백인과 흑인 아이들과 소년들의 범죄패턴은 큰 차이가 없음을 보고하고 있다.¹⁴⁴⁾

142) U.K. Youth Justice Board, Youth Justice Statistics 2015/16 England and Wales Executive Summary, Ministry of Justice, 2017, p.14.

143) NOMS, Offender Management Caseload Statistics 2003, National Statistics, 2004, p.1.

144) John Muncie, Barry Goldson, England and Wales: The New Correctionalism, in Comparative Youth Justice, By John Muncie, Barry Goldson, ed. London: SAGE, 2006, pp.43-44.

그러나 통계는 유의미한 지역적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는 청소년 구금 판결에서 법원간의 광범위한 불균형을 반영한다. 이들은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서남부의 10개 지역사회마다 1개의 구속형에서 서부 중부 지방과 북서부의 5개 중 1개까지 이른다. 지역주의는 또한 각기 다른 분야에서의 국가 법규 및 소년 사법 표준의 우연한 이행에도 반영되어있다. 실제로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웨일즈와 영국에서 정책과 실천의 차이를 발견하였는데, 중요한 것은 웨일즈 의회 정부가 범죄예방보다는 보건 및 사회 서비스의 포트폴리오에서 청소년 사법 서비스를 선정하여, 잠재적으로 영국의 '범죄자 우선' 철학과는 대별되는 '청소년 우선'적 관점을 우선순위에 놓은 것이다.¹⁴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잉글랜드와 웨일즈에는 유럽의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은 소년범들이 구금되고 있는데, 구금된 소년범수는 프랑스의 4배, 네덜란드의 12배,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의 160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범의 재범율이 88%에 이르며, 괴롭힘, 자해 및 자살로 이어지는 부적절하고 잔인한 처우에 대한 실증증거가 증가함에 따라, 소년범의 구금은 '값 비싼 실패'임이 분명하다.¹⁴⁶⁾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은 가능한 한 소년범이 구금으로부터 보호되어야하며,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고, 인류애와 존중으로 대우 받아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협약 제37조 소년에 대한 구금은 최후의 수단으로, 그리고 가장 짧은 기간 동안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잉글랜드에서의 형법적용 연령의 감소와 형량의 증가는 이러한 조항들과 직접적인 저촉된다. 또한 여자 청소년을 위한 기관이 적기 때문에, 성인과 동일한 시설에 수용된다. 이것은 UNCRC에 위배되며,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청소년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으로 고려되지 않는 한, 성인과 분리되어야 한다. UNCRC의 영국 시행에 관한 2002년 유엔의 보고에 따르면, 범죄에 대한 책임을 극도로 어린 나이의 소년에게 적용하거나, 체벌을 금지하지 않는 처벌적 관점은 청소년을 폭력, 괴롭힘 및 자해로부터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한다고 보고한다. 2004년 11월 유엔 아동 권리위원회 위원장인 야프 도크(Jaap Doek)는 그해에 구금된 두 자녀의 사망을 상기시키며 잉글랜드와 웨일즈가 왜 청소년의 불법 감금

145) John Muncie, Barry Goldson, England and Wales: The New Correctionalism, in Comparative Youth Justice, By John Muncie, Barry Goldson, ed. London: SAGE, 2006, p.44.

146) John Muncie, Barry Goldson, England and Wales: The New Correctionalism, Comparative Youth Justice, London: SAGE, 2006, p.44.

을 계속해서 용인하고 있는지 묻고, 학대를 예방할 긴급행동계획을 촉구했다.¹⁴⁷⁾

제4절 독일의 소년강력범 대응체계

1. 독일의 소년사법 역사

초창기 독일에서는 소년관련 규정이 형법에 특별규정으로 존재하였다. 형사처벌 연령은 12세였고, 18세 미만자에 대한 형벌감경과 사형 금지규정이 있었으며, 사면의 형태로 집행유예가 존재했다. 소년은 일반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일반법원에서 처벌받았고, 소년행형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었다. 1882년 Franz von Listz가 마부르크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에 대한 교육사상에 지지를 얻게 되었고, 1890년부터 청소년법원운동이 활성화되어 소년범죄자에 대한 특별한 처우에 대한 요구가 생기기 시작하였다.¹⁴⁸⁾ 1908년 소년법원이 설치되었고, 1912년에는 라인란트(Rheinland) 주에 소년교도소가 설립되었다.

현행 독일 소년법의 전신은 1922년의 제국소년복지법(Reichsjugendwohl-fahrtsgesetz)과 1923년 제국소년법원법(Reich Jugendgerichtsgesetz)이라는 소년형법과 소년보호에 관한 이중적인 입법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이는 한편으로는 청소년의 일탈행위에 대한 형법적 대응을 근본으로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교육적 요청을 고려한 것이다. 특히 1923년에 비행청소년에 처우와 관련한 논쟁 이후 최초로 청소년을 위한 특별법으로 「소년법원법(Jugendgerichtsgesetz: JGG)」이 제정됨으로써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소년(Jugendlicher)에게 형벌과 교육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형벌은 교육처분으로 소년의 교화·개선에 불충분할 때에만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관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년법원 절차도 비공개성, 기소법정주의에 대한 제한 등을 두고, 소년보호관으로 하여금 범죄소년에 대한 인격 조사와 원호적 보호를 담당하도록 하였다.¹⁴⁹⁾

147) John Muncie, Barry Goldson, England and Wales: The New Correctionalism, Comparative Youth Justice, London: SAGE, 2006, pp.44-45.

148) 김성은 외, 청소년형법,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32쪽.

149) 이승현, 소년보호이념과 선의권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34쪽.

이후 나치정권 아래 제국소년법원법이 1943년에 개정되었다. 동법에서는 형사처벌 연령을 13세로, 소년에 대하여 성인형법이 적용되었으며, 단기 자유박탈로 구금이라는 징계처분의 새로운 제재방식과 소년부정기형, 치료 및 양호시설 수용처분이 도입되었으며, 집행유예가 폐지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나치정권의 이데올로기를 제거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1953년 소년법원법이 부분적으로 개정되었다. 형사처벌연령을 14세로 하고, 보호관찰관의 투입과 병행한 소년형이 재도입되었으며, 소년형에 대한 선고유예제도(제27조), 운전면허 박탈처분이 도입되었으며, 청년에 대한 소년형법 적용가능성이 열렸다.¹⁵⁰⁾

1970년대 말부터의 '실무에 의한 소년형법 개혁(Jugendstrafrechtsreform durch die Praxis)'이 이루어졌다. '실무에 의한 소년형법개혁'이란 일반적으로 1970년대 말부터 1990년대의 소년법원법 제1차 개정법의 성립까지 기존 법제도의 구조를 전제로 하여, 그 가능성을 추구하는 형태로 실무운용을 중심으로 행해진 독일의 소년사법개혁을 말한다. 이는 소년범죄의 일과성(一過性)·자연소멸성과 자유박탈처분의 유해성이라고 하는 범죄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실무에 의한 소년형법 개혁의 특징은 ① 비공식적인 사건처리의 확충, ② 미결구금을 포함한 자유박탈처분의 회피, ③ 작업 지시나 원호지시, 사회훈련과정, 손해회복, 행위자·피해자의 화해라는 '새로운 사회 내처우'의 실험과 제도화, ④ 이들에 수반하는 소년사법 종사자의 역할 전환에 있다. 개혁의 배경에는 사회복지사 등 새롭게 등장한 전문가가 소년사법의 담당자가 되었고, 사회참여 활동이 활발해지고 사회 차원의 확충도 진행되었다는 점 등이 있다.¹⁵¹⁾

소년형법개혁의 성과를 바탕으로 1990년 8월 30일 제1차 소년법원법 개정법이 마련되었는데, 이 법에서는 새로운 사회내처우를 위한 준수사항을 확장하여 가해자·피해자 조정제도, 사회화 훈련과정, 보호준수사항 등을 도입하였고, 소년의 부정기형을 폐지하였고, 2년 이하 소년형은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하는 집행유예를 실시하였으며(제21조 제2항), 14세-15세의 소년에 대한 미결구금을 제한하는 요건을 두었으며(제72조), 검사에 의한 다이버전 가능성을 확대하였으며(제45조, 제47조), 소년구금에 대하여는 필요적 변호(제68조)를 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¹⁵²⁾

150) Ostendorf, Jugendstrafrecht, 8.Aufl. Nomos, 2015, Rn.16 ff.

151) 守山正/後藤弘子, ビギナーズ少年法, 成文堂, 2005, 287頁.

152) Ostendorf, Jugendstrafrecht, 8.Aufl. Nomos, 2015, Rn.16 ff.

2006년 12월 30일 제2차 사법현대화 법률에 따라 피해자보호를 위한 소년부 관할이 확장되고(제41조), 피해자 교육권자의 공판출석권이 인정되었으며(제48조), 공판절차에서 교육권자 및 법정대리인 배제규정이 도입되었다(제51조 제2항~제5항, 제68조 제3호). 또한 약식 소년재판(제78조 제3항)과, 소년에 대한 부대소송(제80조 제3항)이 가능해졌으며, 청년에 대한 부대소송의 일반적 허용이 이루어졌다(제109조 제2항). 2007년 12월 13일 제2차 소년법원법 개정법과 소년행형 주법에 따라 소년형법의 목적규정이 도입되었고(제2조 제1항), 자유박탈 제재의 집행에서 새로운 권리구제수단이 마련되었으며(제92조), 소년행형의 세부적 규율이 가능해졌다. 2008년 7월 8일에는 소년형법상 유죄판결을 받은 소년과 청년에 대한 사후적 보안감호가 도입되었다(제7조 제2-4항). 2009년 7월 29일에는 미결구금법 개정되면서 성인과 마찬가지로 청년의 경우에도 지체없이 필요적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형사소송법 제140조 제1항), 청년의 경우에도 구금결정에 대한 소년법원 보조인 등의 참여가 가능해졌다(제72조b). 2012년 9월 4일에는 소년법원의 처분유형 확장을 위한 법률이 마련되면서 경고구금(Warnschussarrest)제도가 도입되었고(제16조a), 집행유예의 사후결정을 위한 유보(Vorbewährung)가 법제화되었으며(제61조~제61조b), 살인범죄의 경우 청년에 대한 형벌 상한을 15년으로 상향조정하였다(제105조 제3항). 2012년 12월 5일 보안감호의 거리요청(BVerfG)에 대한 독일연방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라 사후적 보안감호를 폐지하고(정신병원 수용의 종료결정이 있는 경우 제외) 및 유보적 보안감호를 신설하였다(제7조 제2항).¹⁵³⁾

2. 독일 소년사법에서의 연령기준

범죄소년에 대한 처리는 형벌이든 보호처분이든 모두 소년법원(Jugendgericht)에서 이루어진다. 소년법원법은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소년(Jugendliche)과 18세 이상 21세 미만의 청년(Heranzwachsende)이 형법상 가벌행위를 범한 경우를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독일 소년법원법 제1조). 18세 이상 21세 미만의 청년은 행위 시 그 인격을 환경적 모든 조건과 함께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도덕적, 정신적 교육이 소년과 같을 정도로

153) Ostendorf, Jugendstrafrecht, 8.Aufl. Nomos, 2015, Rn.18 ff.

인정되는 경우나 행위의 종류, 환경, 동기로 보아 소년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특별법인 소년법원법의 적용을 받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일반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동법 제105조).¹⁵⁴⁾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에 의한 촉법행위나 범죄가 되지 않는 우범행위와 유사한 행위에 대하여는 소년법원법상 어떠한 처분도 부과되지 않는다. 도덕적·정신적 성숙도로 보아 형법상의 책임능력을 가진 자에 한하여 소년법원법에 의한 처분이 가능하고, 책임능력을 결한 소년에게는 후견판사에 의한 교육적 처분 즉, 아동 및 청소년보호법(Kinder- und Jugendhilfegesetz)에 기초하여 가정에서의 교육을 촉진하기 위한 급부 (§§16-21 SGB VIII)나 교육을 위한 원조 (§§27-40 SGB(Sozialgesetzbuch Aachtes Buch) VIII)가 이루어질 수 있다.¹⁵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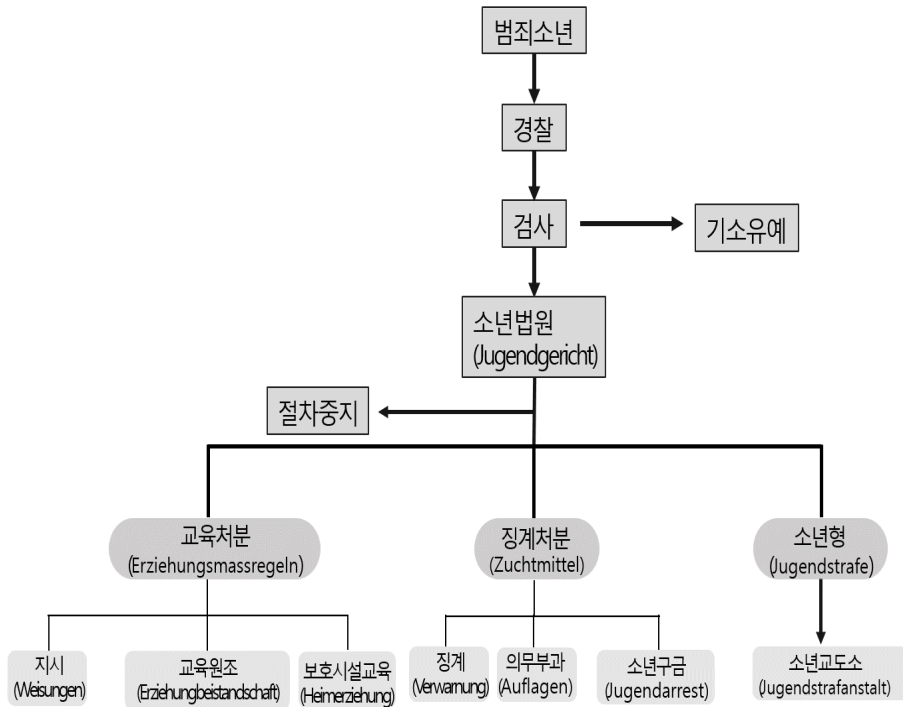
3. 독일의 소년사법절차

독일은 우리나라와 달리 소년보호처분절차와 형사처분절차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 소년법원은 보호처분의 성격이 강한 교육처분(Erziehungsmassregeln), 보호처분 및 형벌로서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징계처분(Zuchtmittel), 형벌인 소년형(Jugendstrafe)을 부과할 수 있다. 독일 소년법원법 제5조 제2항에서 “소년의 범행이 교육처분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 징계처분 또는 소년형을 과한다.”고 규정하여, 소년법원이 우선적으로 소년보호이념에 따라 교육처분을 먼저 실시하고, 형사절차는 교육처분과 징계처분 모두가 불가능할 때 비로소 보충적인 형태로 가능하다¹⁵⁶⁾.

154) Hartwig Bischoff, Die Problematik des § 105 JGG in der richtlichen Praxis und in Der Rechtspolitischen Diskussion, Ein Trojanisches Pferd im Rechtsstaat Hrsg.: Gerken, Jutta/Schumann. Karl. F., Pfaffenweiler, 1988, S. 54.

155) 이승현, 소년보호이념과 선의권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36쪽.

156) 양화식, 소년법상 검사선의주의: 해석론과 입법론, 수원대학교 사회과학논총 12호, 13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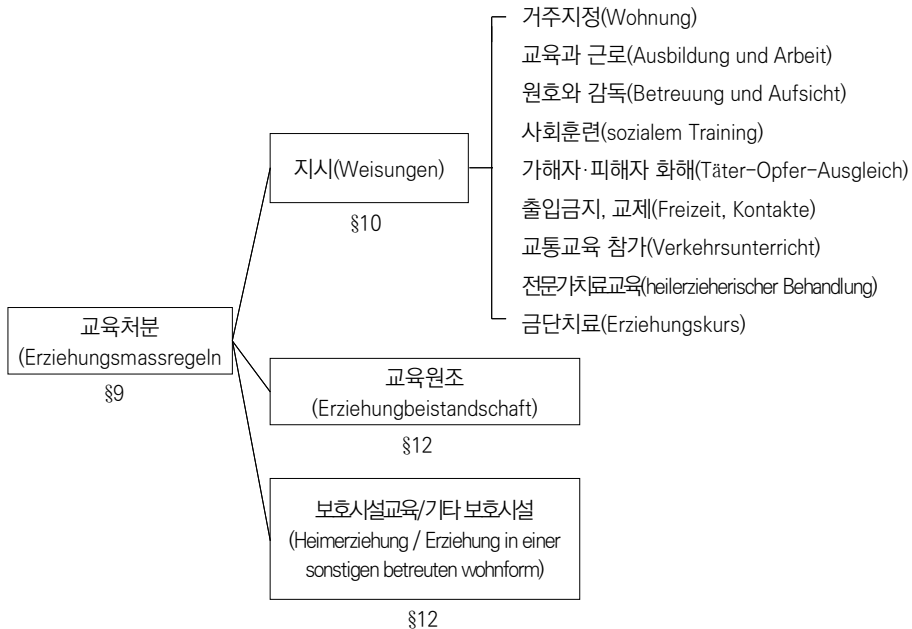


[그림 3-13] 독일 소년사법 절차도

가. 교육처분(Erziehungsmassregeln)

교육처분은 범죄소년의 정상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교육지시(Erteilung von Weisungen), 교육원조(Erziehungsbeistandschaft), 선도시설원조(Fürsorgeerziehung) 등이 있다(소년법원법 제9조). 교육처분은 소년법원 법상 가장 가벼운 처분으로써, 소년법원법 제5조 제2항과 제17조 제2항의 보충성의 원칙(Subsidiaritätsprinzip)에 따라 비행소년에 대해 일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처분이다. 징계처분과 소년형이 그 처벌의 중함으로 인해 범죄소년의 개선 및 재사회화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교육처분으로 범죄청소년을 처리하게 된다. 통설판례에 의하면, 교육처분의 부과는 교육적인 필요에 기초하여야 하며, 범죄행위에 대한 징벌을 위한 교육처분의 부과는 허용되지 않는다.¹⁵⁷⁾

157) Peter-Alexis Albrecht, Jugendstrafrecht, München, 2000, S.158ff.

[그림 3-14] 교육처분의 유형¹⁵⁸⁾

1) 교육지시(Erteilung von Weisungen)

교육지시(Erteilung von Weisungen)는 소년의 생활상태 규제 및 그를 통한 교육증진을 위한 것으로, 소년판사는 ① 거주장소에 관한 지시, ② 일정한 가정 또는 시설에의 거주, ③ 직업훈련이나 근로, ④ 노무의 제공, ⑤ 특정한 자의 원호 또는 감독에 따를 것, ⑥ 사회훈련 코스에의 참가, ⑦ 행위자와 피해자의 화해 노력, ⑧ 특정한 자와의 교제, 음식점·유흥장의 출입 금지, ⑨ 교통교육 참가 등을 명할 수 있다(제10조). 그리고 판사는 교육권자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소년에 대한 전문가 치료교육처우(heilerzieherischer Handlung)나 금단치료(Entziehungskurs)를 명할 수 있다(제11조). 교육지시를 함에 있어서는 소년의 생활태도를 감안하여 기대할 수 없는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제10조). 지시의 기간은 2년 미만으로 특정한 자의 원호·감독에 따르는 것은 1년, 사회훈련 코스에의 참가는 6월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제11조). 그러나 교육

158) 이승현, 소년보호이념과 선의권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38쪽.

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관은 지시를 변경·해제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을 3년까지 연기할 수도 있다. 이때 소년이 지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로서 소년구금(Jugendarrest)을 할 수 있다(제11조 제3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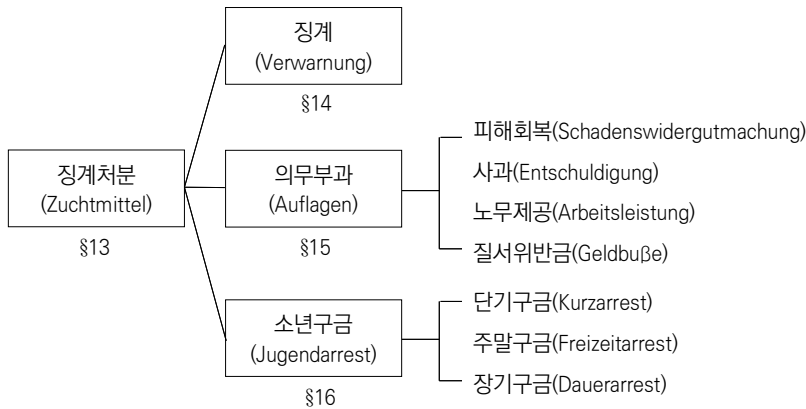
2) 교육원조(Erziehungsbeistandschaft)

교육원조(Erziehungsbeistandschaft)란 아동청소년법상 제도가 보호처분의 하나로 부과되는 것으로, 소년이 성장과정에서 문제를 극복하고 홀로 설 수 있도록 교육적 원조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원조의 부과요건으로는 ① 보호처분의 일반적 요건이 갖추어지고 비례성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② 행위자가 16세 미만의 소년에게만 실시되고, ③ 민법상 후견제도와 다른 제재이므로 소년의 복지에 상응하는 교육이 보장되지 않으며, ④ 교육원조가 다른 제재수단에 비해 가장 적절하고 필요한 도움이라는 보호필요성이 존재하여야 하며, ⑤ 청소년국(Jugendamt)와 의견일치를 보아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원조는 소년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에 종료된다.¹⁵⁹⁾

나. 징계처분(Zuchtmittel)

징계처분은 소년에 대하여 소년형은 필요치 않으나 그가 행한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행해지는 것으로, 징계(Verwarnung), 의무부과(Erteilung von Auflagen), 소년구금(Jugendarrest)이 있다(제13조 제2항). 학설·판례에 의하면, 징계처분의 의의는 징벌적임과 동시에 교육적이라는 점, 응보나 속죄, 행위·행위자의 공적 비난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소년형과 구별된다.

159) 법제연구원, 2006 독일법령용어 해설집, 2006, 162쪽.

[그림 3-15] 징계처분의 유형¹⁶⁰⁾

1) 징계(Verwarnung)

징계(Verwarnung)는 소년에 대한 훈계로서 소년이 저지른 행위의 불법성이 강하게 비난되도록 하여야 하고, 소년의 장래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제14조). 이 처분은 소년법원법 제45조 제2항과 제47조 제1항에 의거한 경고(Ermahnung)보다는 중한 처벌이어야 하고, 실무상으로는 다른 처분과 병행하여 이루어진다.

2) 의무부과(Erteilung von Auflagen)

의무부과(Erteilung von Auflagen)에는 피해배상,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인 사과, 노무제공, 공공시설을 위한 질서위반금 등이 포함되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소년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이 의무도 교육적 견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후에 판사가 면제할 수 있고, 불이행한 경우에 구금할 수 있다(제15조).

3) 소년구금(Jugendarrest)

소년구금(Jugendarrest)은 징계별적인 색채가 강한 징계처분으로서 독자적으로 과해지는 것이고, 소년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과해질 수 있다(제11

160) 이승현, 소년보호이념과 선의권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40쪽.

조 제3항, 제15조 제3항). 물론 소년구금은 교육적 처분이지만 비행사적 처분으로서 주말구금처분(Freizeitarrrest), 단기구금처분(Kurzarrest), 장기구금처분(Dauerarrest)이 있고, 그 집행은 소년구금 집행령(Jugendarrestvollzugsordnung: JAvollzO)에 의한 특별한 소년구금시설, 주말구금시설에서 이루어진다(소년구금집행령 제1조)¹⁶¹⁾. 현행법상 주말구금은 최장 2일, 단기구금은 최장 4일, 장기 구금은 1주 이상 4주 미만의 구금이 과해질 수 있다.

소년의 명예감정에의 압력작용을 중시하는 형태로 나치시대에 도입된 소년구금은 전후에도 “3S”(Short, Sharp, Shock) 정책 가운데에서 주목을 받았던 시기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제도 도입의 역사적 경위와 함께 구금 후의 재범률의 규모나 구금 자체의 악영향이 문제시되고 있고, 소년법원법 제1차 개정에서는 소년구금의 기간을 단축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의 입법논의는 보다 더 나아가 소년구금을 시설내의 사회훈련 코스로 재편성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¹⁶²⁾.

다. 소년형(Jugendstrafe)

소년형은 소년교도소(Jugendstrafanstalt)에서 집행되는 자유형으로, 소년의 행위에 나타난 악성이 교육처분이나 징계처분으로 충분치 않은 경우 또는 책임의 중대성으로 형벌이 필요한 경우에 선고된다(제17조). 소년형의 최고한도는 5년이고 최저한도는 6개월이나, 예외적으로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중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장기를 10년으로 한다(제18조). 소년법원법 제1차 개정은 부정기형을 폐지하는 한편, 보호관찰을 위한 소년형의 연기 대상을 2년 미만의 소년형의 경우로까지 확대하고 있다(제21조 제1항, 제2항).

소년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소년법원은 일정한 기간의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를 유예하거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청년에 대하여도 소년형법에 적용할 경우에는 소년에 관한 처분이 모두 적용되며, 일반형법을 적용할 때에도 종신자유형 대신에 10년 내지 15년의 자유형을 선고할 수 있다(제106조).

소년형은 교육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부과되어야 하며(제18조 제2항), 그

161) 신동운, “서독소년법원법상 소년구금제도”, 청소년범죄연구 제5집, 1987, 216쪽.

162) 守山正/後藤弘子, ビギナーズ少年法, 成文堂, 2005, 292頁.

집행도 교육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제91조, 제92조). 그러므로 특별예방뿐만 아니라 속죄가 소년형의 목적이거나 부과이유로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 예방을 고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그렇지만 최근 그밖에 ‘형벌에 의한 교육’에 대한 원리적인 의문이나, 장기의 자유형을 ‘교육’으로 정당화하는 것에 대한 범죄학적·형사정책학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일환으로 소년형의 교육적인 부과와 ‘책임의 중대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는 큰 이론적 과제가 되고 있다.

또한, 독일에서는 소년행형법(Jugendstrafvollzugsgesetz)이 제정되어 있지 않고, 일반법인 행형법(Strafvollzugsgesetz, StVollzG)과 행정규칙으로서의 “소년행형에 관한 연방행정규칙(Bundeseinheitliche Verwaltungsvorschriften zum Jugendstrafvollzug: VVJug)”에 의해, 소년의 행형관계가 실질적으로 규율되고 있다. 이는 법치국가원칙·사회국가원칙에 저촉되며, 그것을 전제로 하는 소년형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하는 학설상의 견해나 하급심판례도 있다. 이에 따라 2004년에는 연방법무부가 “소년행형의 규정에 관한 법안”을 작성하는 등 소년행형법 제정을 향한 기운이 높아지고 있다.¹⁶³⁾

4. 독일의 소년강력범 대응실태

가. 소년형법상 제재현황

1970년대부터 소년법원법상 제재현황을 살펴보면, 교육처분의 비율은 1970년 10.4%에서 점차 늘어나 2016년 현재 24.3%가 된 반면에, 징계처분의 비율은 1970년대 80%대에서 2016년 현재 65.3%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형은 증감을 반복하다, 최근에는 수치가 안정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이는 교육처분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구금을 전제로 하는 징계나 소년형이 소년의 재사회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163) 武内謙治, ドイツ少年刑法改革のための諸提案, 現代人文社, 2005, 117頁.

〈표 3-6〉 소년형법상 제재 현황¹⁶⁴⁾

(단위 : 명(%))

연도	전체	교육처분 (Erziehungs- massregeln)	징계처분 (Zuchtmittel)	소년형 (Jugendstrafe)
1970	125,901 (100)	13,153 (10.4)	101,061 (80.3)	11,687 (9.3)
1980	186,409 (100)	41,312 (22.2)	127,115 (68.2)	17,982 (9.6)
1990	108,471 (100)	32,861 (30.3)	63,507 (58.5)	12,103 (11.2)
1995	107,243 (100)	15,045 (14.0)	78,318 (73.0)	13,880 (12.9)
1999	135,043 (100)	18,577 (13.7)	98,821 (73.2)	17,645 (13.1)
2000	136,576 (100)	19,026 (13.9)	99,797 (73.1)	17,753 (13.0)
2001	140,158 (100)	20,107 (14.3)	102,329 (73.0)	17,722 (12.6)
2002	148,390 (100)	21,909 (14.8)	108,797 (73.3)	17,684 (11.9)
2003	148,998 (100)	22,411 (15.0)	109,299 (73.4)	17,288 (11.6)
2004	154,778 (100)	23,901 (15.4)	113,458 (73.3)	17,419 (11.3)
2012	142,131 (100)	30,123 (21.2)	97,205 (68.4)	14,803 (10.4)
2013	126,682 (100)	27,948 (22.1)	85,547 (67.5)	13,187 (10.4)
2014	112,417 (100)	26,088 (23.2)	74,557 (66.3)	11,772 (10.5)
2015	102,598 (100)	24,297 (23.7)	67,751 (66.0)	10,550 (10.3)
2016	96,619 (100)	23,479 (24.3)	63,107 (65.3)	10,033 (10.4)

164) Statistisches Bundesamt, Fachserie 10, Reihe 3, Strafverfolgung: bis 1990 alte Bundesgebiet
ab 1995 altes Bundesgebiet einschließlich Berlin-Ost, 2015, S.314-315.

최근 5년간 소년형을 받은 소년범죄자 수를 살펴보면, 전체 사건의 약 10%가 소년형으로 집행되고 있고, 대체로 2년 미만의 단기 자유형이 많다. 독일의 소년강력범은 상해와 강도 유형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표 3-7〉 소년강력범의 소년형 집행현황¹⁶⁵⁾

(단위 : 명(%))

구분		총계	6개월 이하	6-9개월 미만	9개월- 1년 미만	1-2년 미만	2-3년	3-5년	5-10년 미만
소년형 전체	2012	14,803	2,020	2,307	2,904	5,409	1,405	662	96
	2013	13,187	1,692	2,117	2,656	4,811	1,281	564	66
	2014	11,772	1,494	1,928	2,423	4,234	1,074	547	72
	2015	10,550	1,308	1,767	2,098	3,847	980	467	83
	2016	10,033	1,226	1,662	2,043	3,621	994	415	72
강간	2012	193	7	15	24	84	30	31	2
	2013	166	2	18	17	81	23	22	3
	2014	131	6	4	24	61	19	16	1
	2015	156	11	12	25	70	17	16	5
	2016	141	5	12	26	64	23	7	4
살인	2012	74	1	-	2	12	3	24	12
	2013	60	-	-	3	7	6	23	21
	2014	54	1	-	1	6	6	16	24
	2015	45	-	1	1	5	5	15	18
	2016	43	-	-	-	1	8	9	25
상해	2012	4,110	533	734	876	1,395	387	167	18
	2013	3,419	473	598	718	1,139	331	148	12
	2014	2,907	392	517	587	996	273	133	9
	2015	2,487	317	461	494	855	221	122	17
	2016	2,365	251	386	471	881	250	111	15
강도	2012	2,739	162	258	471	1,206	389	229	24
	2013	2,502	145	228	428	1,158	344	180	19
	2014	2,231	114	223	404	967	295	202	26
	2015	1,967	130	199	326	841	285	163	23
	2016	1,808	91	155	331	816	268	132	15

165) Statistisches Bundesamt, Fachserie 10, Reihe 3, Strafverfolgung: bis 1990 alte Bundesgebiet ab 1995 altes Bundesgebiet einschließlich Berlin-Ost, 2015, S.289.

나. 소년강력법에 대한 독일의 엄벌화 논의

1) 1990년대 엄벌화 논의

1970년대 말부터 '실무에 의한 소년형법 개혁'의 성과가 1990년 소년법원법 제1차 개정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1990년 초반부터 우익과 소년에 의한 폭력범죄의 빈발과 1990년대 중반부터 소년범죄의 저연령화·흉악화, 특히 14세 미만의 아동에 의한 촉법행위의 증가를 배경으로 엄벌화 요구가 강하였다. 1993년의 "폭력 및 과격주의에 대한 독일기독교민주동맹(CDU)·기독교사회동맹(CSU) 연방회파의 입법제안"은 미결구금 요건의 재검토 외에, 선거권을 갖는 자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완전한 책임을 져야 하며, 교육사상과 아울러 중대범죄에 대한 일반의 보호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유로 18세 이상 21세 미만의 청년에 대한 원칙적 일반형법 적용의 강화, 소년형의 상한의 인상 등 소년법원법의 개정에 대한 제안을 하였다.¹⁶⁶⁾

또한, Bayern 주는 1996년의 "피해자 보호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안"을 시작으로, 1997년과 1998년에 "소년법원법을 개정하기 위한 법률안"을 연방참의원에 제출하고, 소년법원법의 개정을 주장하였다.¹⁶⁷⁾ 자세한 사항으로는 청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일반형법 적용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점, 청년에 의한 중대범죄에 소년법원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소년형의 상한을 15년으로 인상하여야 한다는 점, 보호관찰을 위한 형의 연기를 선고하는 때에 소년구금을 병과하는 '초기구금(Einstiegsarrest)'을 도입하여야 하는 점 등이 제안되었다. 이러한 엄벌화 요구와 함께, 형사책임 연령을 14세에서 12세로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¹⁶⁸⁾

(1) 연방에서의 논의사항

소년범죄의 원인이나 그에 대한 대응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하여는 제13차 연방의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사회민주당(SPD)의 대질문과 그에 대한 연방정부의

166) Initiative der CDU/CSU-Bundestagsfraktion gegen Gewalt und Extremismus, DVJJ- Journal 2, 1993, S.103 참조.

167) Gesetzesantrag des Freistaates Bayern, "Entwurf eines Gesetzes zur Änderung des Strafgesetzbuchs, des Jugendgerichtsgesetzes und anderer Gesetze vom 17.08.1999", BR-Drs. 449/99.

168) Detlev Frehsee, "12-/13Jährige zum Jugendgericht? Heranwachsende zum Strafgericht?", DVJJ- Journal Jg. 7, Heft 4, 1996, S.316.

회답, 연합90·녹색당의 제안 “공공의 안전의 강화 - 소년범죄의 감소”와 SPD의 제안 “소년형법과 예방전략”이라는 일련의 움직임 가운데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한 것¹⁶⁹⁾은 “빈곤의 유년화(幼年化)”라고 표현되는 빈곤화 현상의 소년층으로의 확대와 소년범죄와의 관련성에 관해서였다. 연방정부는 빈곤의 확대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그에 대하여 SPD와 연합90/녹색당은 사회적인 변혁이나 실업, 빈부격차의 확대, 그리고 그에 기반한 소년에 대한 전망 상실의 소년범죄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¹⁷⁰⁾

SPD와 연합90·녹색당은 젊은이의 범죄를 형벌의 준엄화에 의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은 환상이라고 지적하고, 사회정책이나 교육정책 등에 의한 “전체로 눈을 돌린 예방(eine ganzheitlich ansetzende Prävention)”이나 “우선적 소년범죄예방(die primäre Jugendkriminalprävention)”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소년의 생활 조건에 영향을 주는 지역사회 계획의 입안·결정·실시에 소년 자신이 관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아동권리협약 제12조를 이행하도록 해야 하고, 소년의 참여권을 포괄적이고 실효적으로 인정할 것 등도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언급되었다. 형사책임 연령의 인하, 폐쇄적인 시설 수용, 소년형의 잦은 부과, 청년을 일반형법에 의해 처단하는 것 등과 같은 조치에 의해서는 적극적인 변화를 바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SPD와 연합90·녹색당은 소년사법에서도 “형벌에 대한 교육의 우월”을 주장하고, 행위자-피해자 화해의 확대를 중심으로, 자유박탈의 회피와 사회내처분의 확충을 더욱 추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⁷¹⁾

그렇지만 연방정부도 형벌이 근본적인 소년범죄의 대책일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당시 야당과 공통된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뉘앙스의 차이는 있지만, 자유박탈처분의 회피와 사회내처분의 확충이라는 기초 위에 전개된 “실무에 의한 소년형법 개혁”에서 범죄증가의 직접적인 원인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며, 오히려 그 노선은 계승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본 점에 있어서는 연방정부도 공통된 인식을 보였다. 그러한 의미에서, “실무에 의한 소년형법 개혁”의 성과는 정치의 장에서도

169) Entschließungsantrag der Fraktion der SPD, Jugendstrafrecht und Präventions -strategien vom 12.11.1997, BT-Drs.13/8972.

170) Entschließungsantrag der Fraktion der SPD, Jugendstrafrecht und Präventions -strategien vom 12.11.1997, BT-Drs.13/8972.

171) Entschließungsantrag der Fraktion der SPD, Jugendstrafrecht und Präventions -strategien vom 12.11.1997, BT-Drs.13/8972.

일치되어 승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¹⁷²⁾

(2) 엄벌화 논의에 대한 비판의견

엄벌화를 요구하는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경찰통계를 이용한 논의나 소년범죄 대책으로서 형벌정책에 대해서는, 실제의 위험이 성인으로부터 비롯되었고 소년이 대부분 범죄자라기보다는 피해자라는 점에 대하여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지 피해나 경험적인 제재의 결과에만 기초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있었다¹⁷³⁾. 형사책임 연령의 인하 요구에 대해서는 정신의학적인 비판 외에도, 나치(Nazis) 시대의 경험을 예로 드는 형태의 비판도 있었다¹⁷⁴⁾. 청년(Heranwachsende)에 대한 원칙적 일반형법 적용의 강화 요구 역시 그것이 청년에 대한 완전한 소년법원법의 적용을 요구하는 '1970년대 중반 이후 존재하고 있는 일반적인 합의(allgemeine Konsens)'에 반한다는 강한 비판이 제기되었다¹⁷⁵⁾. 최근에는 청년이 처해 있는 사회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주목하여야 하며, 그 점을 고려하여 유연한 대응이 가능한 소년법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¹⁷⁶⁾.

소년사법 관련 전문가도 엄벌화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제1회 소년법관 및 소년계 검사 연방회의는 소년범죄가 사회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고, 소년형이라는 전혀 유익하지 못한 수단에 의하여, 정치와 사회의 해태에 대응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한다고 결의하고 있다¹⁷⁷⁾. 오히려 필요한 것은 복지정책과 사회내처분의 확충, 그리고 개별적인 소년의 사정을 감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소년범죄의 문제는 사회와의 관계에서 파악되어야 한다고 하는 마그데부르크 회의(Magdeburger Initiative)에서는 소년의 폭력범죄는 어른이 양성한 과잉 경쟁사회의 이면(裏面)이며,

172) Entschließungsantrag der Fraktion der SPD, Jugendstrafrecht und Präventions -strategien vom 12.11.1997, BT-Drs.13/8972.

173) Wolfgang Heinz, "Reformbedarf des Jugendstrafrechts?", MschrKrim Jg.81 Ht.6, 1998, S.399ff.

174) Heribert Ostendorf, Der Strafjustitielle Umgang mit Kindern, DVJJ-Journal 4/1997, S.376.

175) Frieder Dünkel, Heranwachsende im (Jugend-) Kriminalrecht, ZStW Jg.105 Ht.1, 1993, S.164.

176) 武内謙治, "ドイツの嚴罰化定策をめぐる動向", 「改正」少年法を批判する, 日本評論社, 2000, 219頁.

177) Resolutionen des 1. Bundestreffens der Jugendrichter/innen und Jugendstaatsanwälte/innen von 8. bis 10. Dezember 1993 in Villingen-Schwenningen, DVJJ-Journal 4/1993, S.320ff.

소년 대부분이 전망의 상실이나 사회적 배제에 대한 불안에 직면하고 있으며, 소년이 사회에 위협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의해 소년이 성장의 기회를 위협받고 있다고 한다. 소년과의 파트너십(partnership)과 대화라는 “새로운 문화”를 어른이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 마그데부르크 회의에서는 형벌에 위하력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자유박탈처분의 회피와 사회내처분의 확충을 보다 더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소년형법은 “소년을 위한 법(ein Recht für die Jugend)”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⁷⁸⁾

2) 2000년대 이후 엄벌화 논의

2000년 이후 소년법원법 개정과 관련한 논의가 다시 재점화되었다. 12세~14세 범주자에 대한 가족법상 준수사항을 이용한 청소년형법상 통제를 지금보다 더 이전 단계에서 실시하고, 19세~21세 청년에 대하여는 일반 성인형법을 적용하고 절차를 더욱 신속하게 하자는 법개정 요구가 있었다. 이에 대하여 독일 소년법원법 및 소년법원보 조협회의 소년형법개정위원회에서는 범죄학과 교육학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개정안에서는 형사미성년 연령을 14세 이하로 유지할 것, 자유박탈처분은 16세 이상에게 허용할 것, 청년은 소년형법에 포함하여야 하며, 21~24세 범주자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소년법원법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청소년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 갈등해결 절차를 우선적용할 것, 형벌배제사유로 경미한 범죄는 제외하여야 한다는 원칙과 소년범죄자가 성인범죄자보다 불리한 지위에 있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 등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하였다. 소년구금과 같은 징계처분은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¹⁷⁹⁾

2003년 연방상원에서 ‘소년범죄 투쟁개선을 위한 법률안’을 제안하였으나, 2005년 연방의회의 재선거로 회기말 처리되지 못하고 끝난 이후, 2006년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에서 동일한 법률안을 다수결로 의결하였다. 동법률안은 19~21세 청년범죄자에 대하여 청소년형법을 적용하는 것을 예외적인 경우로 국한하고, 중범죄자에 대하여는

178) Magdeburger Initiative, Forum zum Jugend und Kriminalität, ZfJ Jg.86 Ht.9, 1999, S.337ff.

179) Walter Michael, Die Krise der Jugend und die Antwort des Strafrechts, ZStW 113, 2001, S.743ff; 김성은 외, 청소년형법,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57-58쪽.

15년 이하의 소년형을 선고하고, 소년구금은 반드시 소년형의 집행유예와 결합하여 소년법이 사실상 무죄판결을 받는 곳한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운전금지를 독자적 제재로 허용하고 교육처분의 통일성을 강화하여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¹⁸⁰⁾

다. 2002년 독일 소년법원법 개정제안서의 주요 쟁점사항

독일 소년법원법 개정과정에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이러한 사항이 독일 소년법원 및 소년법원보조협회(DVJJ) 제2차 소년형법 개정위원회가 2002년에 제출한 ‘소년법원법 개정제안서’에 상세히 정리되어 있다. 이들 논의 내용 중에 다수가 소년형 별과 소년연령과 관련된 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부분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징계처분에 관한 개선논의

징계처분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사법실무에서 도외시 되었던 피해원상회복과 가해자-피해자 조정제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금전부담명령의 경우 성인형법의 벌금형의 한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한이 정해질 것을 주장하였다. 소년구금에 대하여는 여가구금, 단기구금을 폐지하고 장기구금을 2주 상향으로 하여 사회훈련과정 또는 소년교육시설 과정으로 구성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소년구금이 주는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측면이 크기 때문에 성인형법에서도 1개월 자유형을 폐지한 것은 부정적 결과를 낳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¹⁸¹⁾

2) 소년형에 관한 개선논의

소년법원법 제17조에서는 소년형의 요건으로 ‘죄책의 중대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유해한 성향(schädliche Neigung)’을 삭제하자는 주장이 있다. 이는 법제정

180) 김성은 외, 청소년형법,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60쪽.

181) DVJJ, 2. Jugendstrafrechtsreform-Kommission, Vorschläge für eine Reform des Jugendstrafrechts. Abschlussbericht der Kommissionsberatungen von März 2001 bis August 2002, S.71 ff. (<http://www.dvjj.de/sites/default/files/medien/imce/documente/downloads/JGG-Kommission.pdf>, 2017.12.11. 최종검색).

당시부터 유해한 성향이라는 용어가 불명확한 개념이고, 이것 자체가 유해하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그러나 죄책의 중대성만 남기는 경우에도 가장 중대한 폭력범죄와의 강력범죄가 문제될 경우 죄책의 중요성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가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대하여 ‘유해한 성향’을 ‘사회의 보호를 위하여’라는 표현으로 변경하자는 주장도 있다.¹⁸²⁾

3) 경고구금에 관한 개선논의

소년형의 집행을 유예할 때 최대 4주까지 소년구금을 할 수 있는 경고구금(Warnschussarrest)은 우리나라 8호처분 도입당시와 유사하게 비판을 받고 있고 폐지 주장이 제기되었다. 경고구금은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유해하며, 경고구금 대신 예방적 처우를 강화하면 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또한 소년구금의 조건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년구금이 결정되어 집행된 이후 소년형의 부과조건을 긍정하는 것은 헌법상 정당화될 수 없다는 비판도 있었다. 선고된 형 가운데 1개월의 부분집행을 허용하자는 주자에 대하여는 1개월에 대한 부분집행은 단기자유박탈의 피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비판하였다.¹⁸³⁾

4) 소년보호관찰기간에 대한 개정논의

현행 독일 소년법원법 제22조에 의하면 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은 2년 이하 3년 이하의 기간 내에서 법원이 결정한다. 보호관찰 기간은 소년형의 집행유예결정이 내려지면 집행되는데, 보호관찰 개시 후 1년으로 단축하거나, 보호관찰 기간 종료되기 전에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보호관찰 기간을 개인적 문제에 따라 차별화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 2년으로 하향하자는 논의도 있었다.¹⁸⁴⁾

182) DVJJ, 2. Jugendstrafrechtsreform-Kommission, Vorschläge für eine Reform des Jugendstrafrechts. Abschlussbericht der Kommissionsberatungen von März 2001 bis August 2002, S.86 ff. (<http://www.dvjj.de/sites/default/files/medien/imce/documente/downloads/JGG-Kommission.pdf>, 2017.12.11. 최종검색).

183) DVJJ, 2. Jugendstrafrechtsreform-Kommission, Vorschläge für eine Reform des Jugendstrafrechts. Abschlussbericht der Kommissionsberatungen von März 2001 bis August 2002, S.81 (<http://www.dvjj.de/sites/default/files/medien/imce/documente/downloads/JGG-Kommission.pdf>, 2017.12.11. 최종검색).

5) 소년형법의 처벌연령 논의

18세 이상 21세 미만 청년에 대하여는 일반 소년과 같이 소년법원법에 따라 처우하는 것에 대하여 기민당에서는 청년을 성인형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이는 소년법원법의 개정논의를 1953년 이전 논의로 회귀하는 것이므로, 동개정 제안서에서는 형사처벌연령을 14세로 유지하고, 청년에 대한 소년형법 적용 외에 21세 이상 25세 미만 범죄자를 '연소성인(Jungerwachsene)', 규정하여 제한적으로 소년형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¹⁸⁵⁾

라. 독일에서의 소년강력법에 대응 효과성 검증연구

독일의 소년강력법의 재범예방 관련 연구에 따르면, 여러 가지 위험요인을 갖고 있는 소년강력법에 대하여 형법적 개입보다는 최대한 조기에 이들에 대한 특별한 개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성공적인 가족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가족프로그램에서는 불우한 환경에 있는 유치원생에 대한 놀이 교육치료나 취학 후 학습지원 등을 통해 사회적 책임감과 학습동기를 고취함으로써 문제가 있는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재범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보았다.¹⁸⁶⁾

청소년범죄자 중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마지막 수단으로서 수용시설에서의 교육을 통한 사회 재통합이 필요하다는 연구도 있다. 소년형을 선고받은 14세~18세 범죄자들에게 소년원보다 수용시설에서 교육이 더욱더 효과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시설위탁 교육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범을 보일 수 있는

184) DVJJ, 2. Jugendstrafrechtsreform-Kommission, Vorschläge für eine Reform des Jugendstrafrechts. Abschlussbericht der Kommissionsberatungen von März 2001 bis August 2002, S.93-94. (<http://www.dvjj.de/sites/default/files/medien/imce/documente/downloads/JGG-Kommission.pdf>, 2017.12.11. 최종검색).

185) DVJJ, 2. Jugendstrafrechtsreform-Kommission, Vorschläge für eine Reform des Jugendstrafrechts. Abschlussbericht der Kommissionsberatungen von März 2001 bis August 2002, S.6-10 (<http://www.dvjj.de/sites/default/files/medien/imce/documente/downloads/JGG-Kommission.pdf>, 2017.12.11. 최종검색).

186) Dieter Rössner/Britta Bannenberg, Empirisch gesicherte Erkenntnisse über kriminalpräventive Wirkungen: Düsseldorfer Gutachten: Eine Sekundäranalyse der kriminalpräventiven Wirkungsforschung, 2002.

교육자, 규범합치적인 행동을 하는 인물들에 의한 사회적 지원, 사회의 규범과 구조에 관한 명확한 지침, 인지적·사회적 능력의 함양 및 삶에 대한 자신감, 일관성, 확고한 구조에 대한 체험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¹⁸⁷⁾

제5절 노르웨이의 소년강력범 대응체계

1. 노르웨이의 소년사법 역사

북유럽 소년사법 모델의 역사는 19세기 후반 노르웨이에서 시작한다.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과 같이 1842년 노르웨이 형법은 소년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다. 당시 형사책임의 연령은 10세였다. 10-15세 아동이 저지른 범죄는 처벌이 가능했으며 해당 아동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형법적 특성을 이해한 나이라고 규정되어있었다. 이러한 10-15세 아동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은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었다. 19세기 후반 위 연령대의 약 200명의 아동이 태형(corporal punishment)나 자유형을 선고받았다.¹⁸⁸⁾

1974년에 법원은 15세 이하의 아동을 교도소 구금대신 인가받은 소년원(reformatory school)에 위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어떠한 시설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초기 소년원 위탁은 법률로만 가능성이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곧 자선단체에서 운영하는 아동의 집(children's home)이 관련법에 규정됨에 따라 이는 위탁시설 발전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인식되어 갔다. 그리고 관련법에 규정된 시설의 조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운영기준을 조정하면서 위탁시설들은 주의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1890년대 즈음에는 유죄선고를 받은 범죄아동에 대한 또 다른 새로운 시설들도 설립되었다.¹⁸⁹⁾

버나드 게츠는 법학교수이자 새로운 형법, 형소법, 아동복지법을 준비하기 위한

187) Oliver Pomplun/Friedrich Lösel, Jugendhilfe statt Untersuchungshaft: Eine Evaluationsstudie zur Heimunterbringung, Centaurus Verlag & Media, 1998, S.13ff.; 김성은 외, 청소년형법,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32쪽.

188) Tapio Lappi-Seppala, "Nordic Youth Justice", Crime and Justice Vo. 40 No.1,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1. p.201.

189) Tapio Lappi-Seppala, "Nordic Youth Justice", Crime and Justice Vo. 40 No.1,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1. p.202.

독립된 세 개 위원회의 장을 맡았던 사람으로 노르웨이 소년사법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1886년의 형법에 대한 첫 번째 제안에서는 형사책임연령을 10세에서 16세로 인상하는 내용이 제시되었다. 또한 검사들에게는 16세 이하의 아동을 공공 소년원(public reformatory institutions)에 위탁할 수 있는 권한을 주도록 하였다. 1892년 새로운 아동복지법에 대한 제안에서는 소년원 위탁을 형사책임연령 이하의 아동에게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범죄의 군대에 있어 더 많은 신병들을 구성하는” 모든 아동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 제시되었다. 아동복지법은 “형법의 부록(Appendix to the Criminal Law)”로서 의회에 제출되었고, 법률의 제목은 형사사법시스템과 아동복지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였다. 그 후 주에서 소년원 설립을 요구함으로써 소년원의 지위가 더욱 강화되었고, 주에서 소년원을 운영하게 됨으로써 단순한 부적응 아동뿐만 아니라 범죄아동들도 수용할 수 있도록 대상범위가 확대되었다. 그리고 소년원은 사회적인 방어를 위한 일반적인 수단, 사회통제의 전체적인 시스템 하에서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아갔다.¹⁹⁰⁾

한편, 대상아동이 범죄자이었거나 범죄를 저지를 위험에 처해있다고 판단할 적합한 기관의 필요성이 있었다. 이를 위한 게츠의 해결책은 시당국, 비전문가, 주 공무원으로 구성된 아동복지위원회(Child Welfare Board)였다. 지방위원회는 북유럽국가들의 전통적인 지방자치정부의 일반적인 구조였기 때문에 게츠의 제안은 그렇게 급진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아동복지위원회에게는 학교위원회나 다른 지자체 위원회가 가진 권한 이상의 권한이 주어졌다. 또한 아동복지위원회는 아동의 부모로부터 친권을 박탈하는 권한 및 아동 및 그 부모의 의견에 반하여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위탁 결정은 다른 국가에서는 주로 법원에 의해 이루어지는 부분이다.¹⁹¹⁾

1999년 노르웨이 정부는 아동 및 청소년 범죄에 대한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의 목표는 아동,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고 적극적인 대처하고자 하는 노력을 강화시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아동, 청소년, 부모, 자원 봉사 단체 및 관련 기관의

190) Tapio Lappi-Seppala, “Nordic Youth Justice”, Crime and Justice Vo. 40 No.1,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1. p.202.

191) Tapio Lappi-Seppala, “Nordic Youth Justice”, Crime and Justice Vo. 40 No.1,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1. p.202.

참여를 독려하고, 지방 정부 및 중앙정부의 협력뿐만 아니라 하위 조직인 학교, 경찰, 아동복지 서비스, 교육심리 서비스, 보건 서비스, 아동청소년 의학, 문화 및 여가관련 행정 등 다양한 서비스 기관간 협력을 증대시키고자 하였다. 5개년 계획은 다양한 기관의 실천계획 및 방향을 담고 있으며 노르웨이 아동·가족부의 지휘 아래 5개 정부 부처가 준비하였다.¹⁹²⁾

2. 노르웨이의 소년사법에서의 연령기준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및 스웨덴과 같은 스칸디나비아 반도 국가에서 형사책임의 연령기준은 15세로 규정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1987년에 14세에서 15세로 변경하였고 이는 1990년에 발효되었다.¹⁹³⁾

대부분의 국가는 별도의 소년법을 두고 소년법원을 설치하여 소년에게는 성인과는 구별된 절차를 적용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15세를 기준으로 15세 미만의 소년에게는 형사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아동복지체계에서 다루고 있지만 15세 이상의 범죄소년에 대해서는 성인과 동일한 일반형사절차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연령군을 세분화하여 15-17세 범죄소년의 경우 아동복지와 형사사법시스템에서 관여하며, 18-20세 범죄소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다루도록 하고 특정한 경우 아동복지시스템이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북유럽 소년사법시스템은 아동복지시스템과 성인사법시스템에 균형을 맞추고 있다.¹⁹⁴⁾ 또한 15세 이하의 소년에게 형사기소를 할 수는 없지만 소년이 범죄를 저질렀거나 다른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지만 소년이 그 현장에 있었던 경우 소년의 행동에 대한 수사, 구금 등은 가능하다¹⁹⁵⁾. 또한 경찰의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수사가 이루어지기 전이나 수사 중, 혹은 수사가 완료된 직후에 대상 소년의 가정이나 사회복지시스템에 이러한 상황을 알려주어야 한다.¹⁹⁶⁾

192) Storgaard, A., "Juvenile justice in Scandinavia", Journal of Scandinavian Studies in Criminology and Crime Prevention, 2005; 5(2): p.190.

193) Stogaard, A., "Juvenile Justice in Scandinavia", Journal of Scandinavian Studies in Criminology and Crime Prevention, 2005 5(2), p.192.

194) Tapio Lappi-Seppala, "Nordic Youth Justice", Crime and Justice Vol.40 No.1,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1, pp.199-200.

195) Stogaard, A., "Juvenile Justice in Scandinavia", Journal of Scandinavian Studies in Criminology and Crime Prevention, 2005 5(2), p193, p195.

196) Stogaard, A., "Juvenile Justice in Scandinavia", Journal of Scandinavian Studies in

3. 노르웨이의 소년사법제도

가. 노르웨이의 소년사법절차

노르웨이에서는 15세 이하의 소년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이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아동복지체계에서 다루어지며 15세에서 18세 미만의 범죄소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체계와 사법체계의 개입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즉, 노르웨이에서는 18세 미만의 범죄소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아동복지적인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노르웨이 소년사법절차는 소년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게 되고 경찰은 수사결과를 아동복지위원회에 회부하며 수사가 완료되면 경찰검사나 지방검사에 사건을 송치한다. 사건을 송치 받은 검사는 사안이 중하지 않은 경우 불기소처분을 하고 자체적으로 벌금을 부과하거나, 아동복지위원회에 회부하고 사안이 중한 경우에는 형사법원에 기소하게 된다.¹⁹⁷⁾ 노르웨이의 경우도 소년법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처럼 검사의 기소재량이 큰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소년사건이 발생하면 검사(public prosecutor)는 사건을 아동보호를 의미하는 'barnevern'이라는 부서로 직접 보낸다. 그렇지 않으면 판사가 재판이후 소년을 아동보호부서(barnevern)로 보낼 수 있다. 경찰이 수집한 증거는 사회복지사에게 전달되며 이는 기소가 아니라 처우를 위하여 사용된다.¹⁹⁸⁾

처우에 있어서 보통의 첫 번째 단계는 아동보호부서가 아동에 대하여 긴급보호조치(emergency custody)를 취하고 청소년의 집(youth home)을 의미하는 'undomshjem'이라는 소년시설에 위탁한다. 부모나 보호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위원회를 소집한다. 이 단계에서 변호사가 대상 소년의 부모를 변호할 수 있으며 심각한 사건의 경우에는 법적인 비용이 들지 않는다. 아동보호위원회 회의에서 아동보호위원회는 (국가개입)아동의 보호에 반대하는 변호사와 부모의 주장을 듣게 된다. 이 경우 위원회의 회의의 핵심은 소년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가 아니라 소년에 대한 적절한 처우가 무엇인가에 있다. 1953년부터 설치되어 운영되는 소년복지위

Criminology and Crime Prevention, 2005 5(2), p195.

197) 박재현, “노르웨이 소년사법절차 고찰”, 사법연수원 교수논문집 제10집, 2013, 270~272쪽.

198) Katherine Van Wormer, The Hidden Juvenile Justice System in Norway: A Journey Back in Time, Federal Probation 54, 1990, p.57.

위원회는 5명의 구성원으로 구성되며 지방자치위원회에 의하여 선출된다. 대부분 위원회의 구성원은 여성이며, 비전문가인 일반인을 포함한다. 아동복지위원회는 아동의 보호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아동복지위원회는 어린 범죄자들에게 중강의 형사적·정치적인 기관이 된다. 소년에 대한 처우에 있어 경찰이 만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찰은 1년 이내에 다시 기소할 수 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소년에 대한 복지차원의 통제는 소년의 18세가 되면 종료되지만 노르웨이의 아동복지위원회의 통제에는 시간적인 제한이 없으며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¹⁹⁹⁾

미국의 소년법원제도와는 대조적으로 노르웨이의 모델은 철저히 사회복지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판사의 역할은 심리를 주재하며 적절한 법적인 절차들을 지키는 것이며 증거와 적절한 처우에 대한 의견제시를 하고 사건의 방향을 지시하는 역할은 바로 아동복지부(Child welfare office)에서 하고 있다. 아동복지위원회는 심리 이전에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아동복지부서를 통해서 확인하며, 심리이전에 긴급한 상황인 있는 경우에 대상 소년은 청소년의 집(youth home)이나 정신치료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 아동보호에 대한 부모의 권리는 박탈된다.²⁰⁰⁾

노르웨이에서는 청소년을 포함하여 누구나 최대 4시간 동안 경찰에 체포될 수 있다. 이 시간제한은 절대적인 효력을 갖는다. 이 조치는 임의적인 것이며, 형벌적 성격이 아니다. 따라서 경찰에 입건된 자가 유죄이거나, 나이에 있어서 형사 책임의 조건을 충족시켜야하는 것은 아니다.²⁰¹⁾ 피해자-가해자 중재는 15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 노르웨이에서는 기소된 사람이 15세 미만일 경우,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지 않지만, 범죄에 대한 보상금을 지불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한 전체적 구성은 혐의의 철회 또는 조건부 선고와 매우 흡사하다. 아무도 중재를 위해 출두하도록 명령받을 수는 없지만, 아동복지시스템은 중재를 위해 아동이 출두한다는 조치를 취하지 않기 위한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²⁰²⁾

199) Katherine Van Wormer, *The Hidden Juvenile Justice System in Norway: A Journey Back in Time*, Federal Probation 54, 1990, p.58.

200) Katherine Van Wormer, *The Hidden Juvenile Justice System in Norway: A Journey Back in Time*, Federal Probation 54, 1990, p.57.

201) Storgaard, A., "Juvenile justice in Scandinavia", *Journal of Scandinavian Studies in Criminology and Crime Prevention* 5(2), 2005, p.193.

202) Storgaard, A., "Juvenile justice in Scandinavia", *Journal of Scandinavian Studies in Criminology and Crime Prevention* 5(2), 2005, pp.194-195.

나. 소년관련 처분

15세를 기준으로 15세 이상의 범죄소년에 대하여 일반 형사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 법적으로는 성인에게 부과되는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 즉, 경고, 불기소처분, 벌금, 집행유예, 사회봉사명령, 구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범죄소년에 대해서 집행유예(suspended sentence), 보호관찰(probation), 개방형 교도소(open prison)에서의 단기간 구금이 주로 부과되고 있다.²⁰³⁾

1) 중재 (Mediation)

노르웨이에서도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전환처우로서 중재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중재제도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회복적사법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제도이다. 즉, 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당사자인 피해자, 가해자, 지역사회구성원이 사법절차진행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지역사회 내에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다.²⁰⁴⁾ 특히 피해자-가해자 중재는 주로 경찰이나 검사의 회부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노르웨이 중재화해위원회(Norwegian Mediation and Reconciliation Service)가 피해자 가해자 중재를 맡고 있다.²⁰⁵⁾ 중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사건은 자동적으로 공식적인 형사사법절차에서 전환되어 처리된다.²⁰⁶⁾

이러한 중재제도는 북유럽 국가 중 노르웨이에서 처음 시범적으로 실시된 이래, 1991년 노르웨이 전역에 도입되었으며 다른 북유럽국가들보다 가장 공식적인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²⁰⁷⁾ 기본적으로 모든 연령대에 활용이 가능한 제도이지만 주로 21세

203) Katherine Van Wormer, *The Hidden Juvenile Justice System in Norway: A Journey Back in Time*, Federal Probation 54, 1990, p.57.

204) Berit Albrecht, "Multicultural Challenges for Restorative Justice: Mediator's Experiences from Norway and Finland, *Journal of Scandinavian Studies in Criminology and Crime Prevention* 11:1, 2010, p.4.

205) Berit Albrecht, "Multicultural Challenges for Restorative Justice: Mediator's Experiences from Norway and Finland, *Journal of Scandinavian Studies in Criminology and Crime Prevention* 11:1, 2010, p.5.

206) Tapio Lappi-Seppala, "Nordic Youth Justice", *Crime and Justice* Vol. 40 No.1,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1, p.226.

207) Tapio Lappi-Seppala, "Nordic Youth Justice", *Crime and Justice* Vol. 40 No.1,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1, p.226.

이하의 소년범죄자들에게 적용되고 있다. 2008년 기준 15-17세 소년에 대해 적용된 형사사법절차의 30~40%가 중재제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²⁰⁸⁾

2) 청소년계약(youth contract)

1998년에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 지켜야할 조건에 해당하는 소위 ‘청소년계약(youth contract)’이라고 불리는 제도가 새롭게 덴마크에 도입되었다. 노르웨이도 덴마크의 영향을 받아 2000년도에 시범 운영기간을 거쳐 소년계약제도를 도입하였다.²⁰⁹⁾ 이러한 청소년계약제도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은 초범인 소년을 대상으로 소년이 저지른 범죄에 빠르게 그리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다.²¹⁰⁾ 가해 소년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 그리고 사회복지 관계자 모두 참여하도록 하고 계약에 사인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당사자가 소년의 행동에 보다 책임감을 가지도록 한다. 다른 모든 비구금적 처분들과 같이 소년 계약은 일정한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 뿐만 아니라 대상소년에게 학교를 마친 후 특정한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의 일정한 활동을 하도록 하는 의무사항을 부과한다. 대상소년이 정해진 기간 동안 계약의 내용을 잘 이행한 경우에 소년이 저지른 사건은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1년 후에 범죄기록에서 삭제된다. 보통 불기소처분의 기록은 2년 후에 삭제되고 있다.²¹¹⁾

208) Tapio Lappi-Seppala, “Nordic Youth Justice”, Crime and Justice Vol. 40 No.1,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1, p.227.

209) Stogaard, A., “Juvenile Justice in Scandinavia”, Journal of Scandinavian Studies in Criminology and Crime Prevention, 2005 5(2), p197.

210) 그러나 청소년 계약에 대한 평가연구결과에서, 그 과정을 현저하게 가속화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청소년 계약에 따른 혐의 취하와 일반적 혐의 취하 이후의 재범을 비교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계약이 재범의 가능성을 낮춘다는 것을 입증하지는 못했다고 보고한다. 이 연구는 다른 것들 중에서도 이미 혐의의 취하가 이전보다 더 적게 사용되었고, 다른 처벌을 받은 소년들보다는 재범률이 현저히 낮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놀라운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혐의 취하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소년범의 20%가 재범을 저지른 반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소년범은 33%가, 그리고 형을 선고받은 소년은 48%가 재범을 한 것이다. 가석방기간 동안(3개월 이상) 감옥에 간 적이 있다면 65%가 2년 내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범죄는 벌금보다 더 엄격한 형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이다(Storgaard, A., “Juvenile justice in Scandinavia”, Journal of Scandinavian Studies in Criminology and Crime Prevention 5(2), 2005, pp.196-197).

211) Stogaard, A., “Juvenile Justice in Scandinavia”, Journal of Scandinavian Studies in Criminology and Crime Prevention 5(2), 2005, p.196.

3) 사회봉사명령(Community Services Order)

사회봉사명령은 일반적으로 청소년에게 많이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북유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는 않으나, 노르웨이는 2002년 사회복지명령을 소위 '사회내 형벌(Community penalty)'로 변경했다. 이는 사건에 대한 신속하게 대응이 필요한 대상인 청소년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 노르웨이의 대법원 판사인 Matningsdal은 사회내 형벌을 개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Matningsdal은 이로 인하여, 집행유예가 더 적어지고 더욱 심한 형벌인 지역사회 형이 증가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이러한 예상은 전체범죄 대비 청소년 범죄의 비율을 볼 때 정당화될 수는 없다.²¹²⁾

또한 사회봉사명령은 거주, 출석, 또는 업무와 관련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데 노르웨이의 경우 대상소년의 거주지, 업무, 처우와 관련하여 개별화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사회봉사명령 시간은 460시간까지 가능하다.

4) 소년구금

노르웨이에 소년을 위한 특별한 구금시설이 없다. 그러나 소년 범죄자에 대한 대안적 제재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구금 시설에 보내지 않는다는 것을 규정한 법률 및 행정 규칙을 갖고 있다. 이러한 다이버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을 구금해야 하는 경우, 구금시설을 선택할 때 연령은 항상 중요한 요인이다. 노르웨이에서는 일반적으로 청소년이 구금시설 내에서 중범죄자와의 교류를 막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²¹³⁾

구금에도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아동복지당국에서 집행되는 법원에 의한 위탁명령이고 또 하나는 일반적인 교도소구금이다. 교도소에 구금되는 소년은 분리되어 개방형 시설에 수용된다. 또한 성인보다 구금기간이 짧다. 다른 북유럽국가들이 종신형 규정을 두고 있지만 노르웨이는 소년에 대한 종신형 규정을 삭제하고 최장기를 21년으로 규정하고 있다.²¹⁴⁾

212) Storgaard, A., "Juvenile justice in Scandinavia", Journal of Scandinavian Studies in Criminology and Crime Prevention 5(2), 2005, p.197.

213) Storgaard, A., "Juvenile justice in Scandinavia", Journal of Scandinavian Studies in Criminology and Crime Prevention 5(2), 2005, p.199-200.

214) Tapio Lappi-Seppala, "Nordic Youth Justice", Crime and Justice Vo. 40 No.1, The

4. 노르웨이의 소년강력법 대응실태

대륙법계나 앵글로색슨 관할권의 소년에 대한 형사제재와는 다르게 북유럽국가에서는 성인과 소년사이의 제재에 있어 차이가 많지 않다. 모든 성인에 대한 제재수단은 기본적으로 소년에게 부과가능하다. 그러나 특정한 소년을 위한 제재는 특성연령 이하의 소년에게만 적용되기도 한다.²¹⁵⁾

노르웨이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체포하거나 구금할 가능성을 배제한다. 그러나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도 4시간 규칙에 따르며 이 경우에는 사회 당국 또는 부모에게 알려야하는 특별규칙사항은 없다.²¹⁶⁾

1) 불기소(nonprosecution)

형사제재수단들 중 가장 활용도가 적은 것이 경찰경고조치(police warning)와 불기소결정(nonprosecution decisions)이다. 불기소처분은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제기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불기소의 범위는 매우 다양하고, 아동복지적 개입이라고 인식되고 있다. 불기소는 사건이 아동복지당국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경찰에 신고되는 경미한 범죄 수가 증가함에 따라 불기소는 사법시스템의 업무량을 덜어주는 수단으로 되어가고 있다. 불기소는 조건적인형태나 무조건적인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노르웨이의 경우 불기소는 조건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표 2-5-1>에 따르면 노르웨이에서는 100,000명당 약 400건 정도의 불기소사건이 있으며 이는 법원에서 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와 비교하면 반 이상 정도를 차지하는 수치이다.²¹⁷⁾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1, p.230.

215) Tapio Lappi-Seppala, "Nordic Youth Justice", Crime and Justice Vo. 40 No.1,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1. p.222.

216) Storgaard, A., "Juvenile justice in Scandinavia", Journal of Scandinavian Studies in Criminology and Crime Prevention 5(2), 2005, p.196.

217) Tapio Lappi-Seppala, "Nordic Youth Justice", Crime and Justice Vo. 40 No.1,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1. p.229.

〈표 3-8〉 대안적 형사제재²¹⁸⁾

구분	수치		100,000명당 수	
	15-17	18-20	15-17	18-20
무조건적 제재(unconditional)	62	1,013	32.6	582.2
무조건적제재(unconditional)+조건적 제재(conditional)	47	285	24.7	163.8
지역사회내 제재(community sentence)	455	450	239.5	258.6
조건적제재(conditional)+벌금(fine)	351	813	184.7	467.2
조건적 제재(conditional)	258	257	135.8	147.7
벌금(fine)	93	311	48.9	178.7
법원(courts)	1,266	3,129	666.3	1,798.3
벌금 티켓(ticket fine)	4,222	9,588	2,222.1	5,510.3
현장에서 벌금부과(on the spot fine)	1,038	10,319	546.3	5,930.5
조건적 불기소(conditional nonprosecution)	733	120	385.8	69.0
다이버전(out of court diversion)	5,993	20,027	3,154.2	11,509.8
총계	7,259	23,156	3,820.5	13,308.0

2) 형사제재

벌금은 북유럽국가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형벌이다. 벌금은 일반적인 재판이나 단순약식절차를 통하거나, 경찰이나 검사도 부과할 수 있다. 경찰의 벌금 부과권한은 대개 교통범죄로 제한되며 검사가 부과하는 벌금의 대다수도 교통범죄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일반형법상의 경범죄의 상당수도 검사의 벌금부과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른 북유럽국가와는 다르게 노르웨이는 법원보다 검사가 벌금을 부과하는 사건의 비중이 높다.²¹⁹⁾

218) Tapio Lappi-Seppala, "Nordic Youth Justice", Crime and Justice Vo. 40 No.1,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1, p.258.

219) Tapio Lappi-Seppala, "Nordic Youth Justice", Crime and Justice Vo. 40 No.1,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1, p.229.

〈표 3-9〉 연령별 형사제재 부과현황(2007)²²⁰⁾

구분	법원부과 벌금	검사부과 벌금	조건부 구금 (conditional prison sentence)	사회봉사 (community service)	구금
15-17	49	2,222	321	240	57
18-20	177	5,510	615	259	746

두 가지 주요 지역사회내 대안적 처우에는 조건적 선고(conditional sentence)와 사회봉사(communitiy service)가 있다. 노르웨이는 다른 북유럽국가가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중 하나만 활용하는데 반하여 두 가지 모두 형사제재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집행유예가 조금 더 일반적으로 활용된다. 구금의 기간에는 공식적인 기간 제한이 없지만 조건부선고가 2년 이상인 경우는 드물다. 조건부 구금은 감독(supervision), 벌금, 사회봉사가 병과될 수 있다. 〈표 2-5-2〉에 따르면 조건부 구금이 사회봉사보다 더 많이 부과되고 있으며 사회봉사명령은 연령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에 조건부 구금에 있어서는 15-17세 연령대 보다 18-20세의 연령대가 두 배 가까이 많게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2〉에서와 같이 구금은 15-17세보다 18-20세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²²¹⁾

5. 강력범죄에 대한 국가별 인식차

노르웨이의 경우 강력한 처벌을 추진하는 영국과 달리 강력범죄에 대하여도 복지적 관점에서 개입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과 노르웨이의 다양한 사회환경적 요소에 대한 성찰을 통해 노르웨이의 소년강력범 문제에 대한 제도적 접근노력을 볼 수 있는 문헌을 소개하고자 한다.²²²⁾

220) Tapio Lappi-Seppala, "Nordic Youth Justice", Crime and Justice Vo. 40 No.1,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1, p.230.

221) Tapio Lappi-Seppala, "Nordic Youth Justice", Crime and Justice Vo. 40 No.1,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1, p.232.

222) Green, A. David. "Comparing penal cultures: child-on child homicide in England and Norway", Crime and Justice 36(1), 2007, p.604-635.

영국과 노르웨이의 사례 비교

1. 발생사건

1) 영국 - James Bulger case

1993년 2월 12일 오후 리버풀 외곽의 Merseyside Bootle 지역에서 가출한 10살 소년 두 명(Robert Thompson and Jon Venables)이 Strand 쇼핑센터에서 2살 James Bulger를 납치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당시 Bulger의 엄마는 정육점에서 고기를 구매하고 있었고, 두 명의 소년이 Bulger를 납치하는 장면이 쇼핑센터의 CCTV에 포착되었다. 두 명의 소년은 Bulger를 2.5마일(약 4km) 떨어진 곳까지 데리고 가서 아이를 길에서 때렸다. 주위에는 최소 38명의 목격자가 있었지만, 그들 중 아무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날이 어두워지자 두 소년은 Bulger를 기차길로 데리고 가서 잔인하게 발로 차고 끝내 벽돌과 철봉으로 때려 죽였다. 그들은 Bulger의 시체를 옷이 벗겨진 채로 기차길에 내버려 둬으로써 나중에 기차에 깔리게까지 만들었다.

언론과 국민들은 흥분하였다. 두 소년은 2월 18일 체포되어 2월 20일 공식적으로 기소되었다. 2월 22일 수백명의 인파가 몰려들어 돌과 계란을 던지며 유죄판결을 주장하였다. 정신과 의사가 두 소년을 상담한 결과, 재판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정도라고 판단을 내렸다. 두 소년은 심리치료 없이 구속되어 9개월 뒤(1993년 11월) 납치와 살인혐의로 첫 번째 형사재판을 받았다. 두 소년은 납치와 살인혐의에 대해 유죄인정을 받았고, 10세부터 18세 사이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부정기형(최소 20년 이상)을 선고받았다. 재판을 마친 후 피해자 유족의 일부는 복수를 다짐하기도 하고 그들이 풀려나면 죽이겠다고도 하였다. 한 달 후(1993년 12월) 치안판사(Justice) Morland는 가석방 이전 최소 구금기간을 8년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하였고, 영국 대법원장 Taylor 판사는 가석방 이전 최소 구금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도 하였다.

1994년 7월 Howard 내무부 장관은 이 사건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신뢰를 고려할 때 최소 구금기간을 15년까지 늘릴 것을 주장하였다. Howard 장관에 따르면, 그는 두 소년을 절대로 풀어주지 말라는 278,300 건의 탄원서와 22,638 통의 편지를 받았고, 타블로이드 신문 Sun 紙를 통해 영원히 풀어주지 말라는 21,281 건의 쿠폰을 받았다. 1997년 영국 항소법원과 상원은 내무부 장관의 결정에 반박성명을 냈는데, 그 내용은 정부부처의 장관이 양형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유럽인권법원도 두 소년이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받았고 장관이 법원의 기능인 구금기간을 결정하는 것은 불법적이라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2000년 10월 26일 Woolf 대법원장이 이 사건의 담당판사가 최소 구금기간으로 판시한 8년, 즉 2001년 2월 21일까지 구금이 유효하다는 결정 외에 추가적인 구금기간은 결정되지 않았다. Woolf 판사의 언급이 발표된 2000년 10월 Tompson과 Venables는 1년 이내 풀려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Bulger의 어머니 Denise Fergus는 “그 두 명은 내가 그들을 감옥에 있게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두렵다. 나는 그들을 곤경에 처하게 하거나 죽일 의향은 없다. 다만, 사람들이 18살의 (위험한) 소년들이 이 지역을 활보하고 다닌다는 사실은 알았으면 한다. 만일 그가 Tompson이나 Venables라면, 나는 그들이 여전히 위험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들한테서 떨어지라고 말하고 싶다. 나는 그들이 언제든 살인자로 변할 것이

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였다.

이 사건은 영국 역사상 가장 어린 소년들이 저지른 가장 잔혹한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고, 영국의 사회적·도덕적 이슈에 관한 논쟁, 즉 싱글맘(single motherhood), 아동방임(home alone children), 그릇된 양육(bad parenting), 성인물 등급체계(rating system for video nasties), 폭력적인 비디오게임(violent video game)에 관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2) 노르웨이 - Silje Redergård case

노르웨이에서 이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이다. 영국에서 Bulger 사건이 발생한지 얼마 안 되어 1994년 10월 15일 노르웨이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 Trondheim 市 Heimdal 自治區에서 세 명의 6살 소년들이 함께 눈썰매를 타고 놀다가 5살이던 Silje Marie Redergård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세 명의 소년들은 처음에 Silje에게 옷을 벗겨도 되는지 물었고, Silje의 옷 일부를 벗기고 나서 그녀를 때리고 발로 차기 시작했다. 나중에는 둘로 Silje를 때리고 짓밟았다. 세 명의 소년들은 무의식 상태의 Silje를 공공 얼어붙은 바닥에 버려두었고, 결국 그녀는 저체온증으로 사망하였다. 세 명의 소년은 노르웨이 법률상 형사책임 연령인 15세 미만의 아이들로서 아무도 기소되지도 않았고 처벌받지도 않았다. 경찰이 간략하게 소년들을 심문하였으나 그들은 아동복지기관으로 보내졌고, 소년의 부모들도 그들이 더 이상 경찰조사에 응할 것을 철회하였다.

사회복지사와 심리학자로 구성된 팀은 지역사회가 세 명의 소년들을 만나서 질문하는 것은 물론 상담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오픈된 분위기(open environment)를 조성하였다. 물론 소년의 부모들은 아이들의 안전을 걱정하였으나, 아동복지기관의 팀은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소년들이 이 사건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설득하고 진정시켜 나갔다. 가족, 지역사회, 언론으로부터 집단적인 분노나 폭력은 없었고, 사법부의 보복적인 조치도 없었으며, 사건을 정치화하려는 정치인이나 정치적인 전략도 없었다.

언론매체만 관심을 가졌는데, 이 역시 사건이 발생한 첫 주 동안 집중적으로 기사가 보도되었을 뿐이다. Silje의 죽음은 언론에서 끔찍한 탈선이자 매우 비극적인 사건으로 다루어졌지만, 순진한 가해자들이 순진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나쁜 짓을 저지른 전혀 범죄적이지 않은 행위로 다루어졌다. 경찰은 일단 세 명의 소년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려고 하였으나, Trondheim 시장은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영국의 Bulger 사건과 동일선상에서 이번 사건을 다루려고 모여든 외국 기자들에게 (너무 선정적인 보도를 지양하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평화롭게 그들의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언론은 노르웨이의 법에 따라 범죄소년의 이름과 그들의 가족에 관한 정보를 익명으로 보도하였다.

피해자인 Silje의 어머니는 물론 경찰수사관에 이르기까지 관련 당사자 모두 유죄판결에 따른 처벌이 그 소년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것이고, 가장 좋은 길은 그 소년들이 하루빨리 지역사회에 재통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며, 그들에게 낙인지우는 일이 없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세 명의 소년들에게는 사건발생 후 일주일만 지나서 선생님들의 감시와 상담을 통해 이러한 조치가 취해질 유치원이 정해졌다.

Silje는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도 소년들과 함께 놀 기회가 있었고, Silje의 어머니 Beathe

Redergård는 세 명의 소년 중에서 두 명과 잘 아는 사이였다. 그녀는 언론인터뷰를 통해 언젠가는 자신이 딸을 죽인 소년들을 용서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후로도 Silje의 죽음을 다룬 보도는 많지 않았다. 간혹 다루더라도 어머니가 어떻게 소년들을 용서하는지의 과정에 초점을 맞추거나, 다른 살인 피해자의 가족과 어떻게 함께 어울리는지, 영국의 한 일간지가 이 사건을 독점보도하는 대가로 50만 크로네(약 45,000 파운드)를 제안했는데 그녀가 왜 거절하였는지에 대한 내용 등이었다.

사실 노르웨이 사례를 통해 참고할만한 정책교훈은 없지만, 당시 Trondheim 아동심리학자 중 일부는 그 사건이 지역사회 의 도덕적 건강성(moral health)이 붕괴되는 지표를 보여준다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이 주류 언론이나 정치인들에게 채택되지는 않았다. 다른 학자들은 이 사건이 폭력적인 TV프로그램의 문제점을 보여준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Silje를 죽인 소년들은 경찰조사에서 자신들이 유사한 아동프로그램에 영향을 받았다고도 하였다. Silje 사건이 발생할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Grete Faremo는 이 사건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는데, 당연하게도 이 사건이 형사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정부부처의 장관 중에서는 문화부장관(Culture Minister)과 아동부 장관(Children's Minister)만 이 사건을 언급하였다.

2. 두 국가의 대응차이의 원인

두 나라 모두 1990년대 초반 저연령 소년에 의한 잔인한 소년사건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 대응과정이 너무나 다르다. 이러한 차이점은 범죄에 대한 인식, 정치동학, 국민 여론, 뉴스 미디어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두 사례는 문화와 형벌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좋은 주제이기도 하다. 두 사례에 대한 뉴스보도와 정치적 논쟁을 통해 저자는 두 사건에 대응하는 국민여론과 정치동학을 형성하는 '보이지 않는 손'을 밝히고자 하였다.

1) 범죄율(crime rates)

1991년부터 2001년 사이 노르웨이에서는 전체 범죄율이 28% 증가한 반면, 영국에서는 같은 기간에 전체 범죄율이 11% 감소하였다. 하지만, 폭력범죄율은 1997년부터 2001년 사이에 노르웨이에서는 10%가 증가한 반면, 영국은 26%가 증가하였다. 살인율의 경우 1997년과 2001년 사이에 노르웨이에서는 인구 10만명당 0.95명으로 8% 증가한 반면, 영국에서는 인구 10만명당 1.61명으로 1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1년부터 2001년 사이 노르웨이의 수형자는 3% 증가하는데 그쳐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된 반면, 영국의 수형자는 같은 기간 동안 45%가 증가하였다. 노르웨이의 수형자 비율이 안정적인 이유 중 하나는 새로운 교도소를 짓지 않으면서 과밀수용을 억제하는 'prison queue'에 기인한다. 노르웨이에서는 교도소를 새로 짓지 않고 기존의 교도소를 최대한 활용하기 때문에 수형자의 수가 갑자기 증가하지 않는다.

범죄와 형벌에 대한 노르웨이의 태도를 영국과 비교하기란 쉽지 않다. 다른 스칸디나비아 국가와 달리 노르웨이는 '밤에 혼자 길을 걸을 때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는지'와 같은 질문이 포함된 Erobarometer survey에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스칸디나비아 국가

를 노르웨이의 간접지표로 간주해 본다면, 스칸디나비아 사람들은 범죄율이 유럽의 평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안전하다고 느끼는 경향을 보인다. 1989년 국제범죄피해조사(ICVS)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강도재범자의 구금형에 대해 노르웨이 국민의 13.8%만 동의를 나타냈다. 반면, 영국에서는 같은 기간 동일한 청소년 강도재범자의 구금형에 대해 38.2%가 동의를 나타냈다. 이러한 수치는 2000년 영국에서 다시 조사했을 때 51.0%까지 증가하여 다른 유럽 국가들과 큰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자료는 노르웨이에서 청소년 살인범죄에 대해 상대적으로 자제하고 인내심을 보이는 이유를 어느 정도 설명한다. 그러나 단순히 범죄율의 증가나 범죄율의 차이를 넘어서서 보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노르웨이와 영국의 범죄발생율의 차이가 Redergård와 Bulger 사례에 대한 대응의 차이를 충분히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2) 피해자 가족(the victims' families)

두 사례의 피해자 가족이 대응하는 방식도 왜 Bulger사건은 뉴스에서 그토록 오랫동안 다루었던 반면, Redergård 사건은 그렇지 않았는지를 어느 정도 설명한다. James Bulger 가족은 자식을 죽인 범죄자들의 처벌에 결코 만족을 하지 않았다. Bulger의 부모는 수차례 분노를 표출하였고 언론에 자주 출연하였다. Bulger의 어머니 Denise는 'Justice for James'라는 모임을 시작하여 Bulger를 죽인 Thompson과 Venables를 계속해서 구금시설에 가두도록 캠페인을 하였다. 이 모임에 속한 몇몇 회원들은 두 명의 청소년들이 풀려나자 위협을 가했고, 이러한 위협은 뉴스에 보도가 되었다.

Redergård의 어머니 역시 뉴스에 여러 차례 출연하였지만, 내용은 주로 용서에 대한 그녀의 믿음이었고 부모가 사건 자체를 다시 떠올리는 내용은 없었다.

Redergård 사건은 가족이 그 사건의 해결방식에 동의하고 만족했기 때문에 뉴스로서의 가치를 점차 상실해 가면서 결국 뉴스보도에서 사라져갔다. 반면, Bulger 사건은 13년 동안이나 지속적으로 뉴스가치를 이어갔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Bulger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사법부 결정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3) 형사책임 연령(age and criminal responsibility)

Bulger 사건의 가해자인 Thompson과 Venables는 형사책임 연령의 하한인 10세로 법적인 처벌대상에 포함되는 반면, Silje 사건의 가해자는 6세로 노르웨이 기준 15세 미만이기 때문에 처벌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만일 Bulger 사건의 가해자들이 만일 노르웨이에서 Bulger를 죽였다면 처벌을 받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처럼 형사책임의 연령기준은 두 국가에서 대응이 달라진 이유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그러나 법적인 처벌기준만으로는 두 사례의 차이를 모두 설명할 수 없다. 왜냐하면, Bulger 사건의 담당검사는 일부 범죄행위는 나이가 10살이건 그보다 어린건 명백히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난받을만하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분위기는 설사 Thompson과 Venables의 나이가 노르웨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6살이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대응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반면, Silje 사건의 가해자들은 비록 법적인 처벌대상이 아니었으나, 그들의 미성년의 지위를 보장하고 동정적으로 접근하려는 기록

들을 근거로 볼 때 설사 그들이 10세가 넘었다 하더라도 동일한 처분을 받았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4) 아동에 대한 개념(conceptions of childhood)

아동에 대한 개념은 문화적 맥락을 반영한다. 이미 굳어져 있는 아동의 개념에 다른 개념이 얹어지는 것 역시 문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미성년 아동이 살해범죄를 저지를 경우, 불행한 일이 아니라 사악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안정에 보다 바람직할 수 있다. 아동을 어디까지로 인정하고, 아동이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살인범죄를 '철없는 단순한 장난(mere babyish mischief)'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전대미문의 사악하고 잔혹한 행위(an act of unparalleled evil and barbarity)'로 볼 것인지의 차이를 의미하기도 한다. 전자는 1861년 영국에서 두 명의 8살 소년이 George Burgess라는 유아를 살해한 사건에서 찾아볼 수 있고, 후자는 1993년 발생한 Bulger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두 가지 반응의 차이는 형사사법제도의 정당성(justness)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 근거한다. 사법제도에 대한 광범위한 신뢰가 가능했던 영국 빅토리아 시대의 절제된 반응은 Burgess 사건의 가해자들에게 1개월의 구금형과 5년간 소년원 처분을 국민들이 받아들이 수 있도록 하였다. Bulger의 가해자들에게는 재량적 종신형이 선고되었으나 언론의 주된 관심은 구금시설의 환경이 얼마나 관대하고 유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었다. 이러한 차이는 아동의 유죄(childhood culpability)에 대한 개념이 고정되지 않고 유연할 뿐 아니라 오히려 사법에 대한 신뢰문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Bulger 사건과 Redergård 사건을 비교해 보면, 영국(비정상적이고 사악한 살인자)과 노르웨이(불행하고 순진한 살인자)의 아동개념이 믿음(faith)과 신뢰(trust)의 차이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천적 순진함(innate innocence)에 대한 믿음이 낙관적이라면, 타고난 사악함(born bad)에 대한 관점은 회의적이다. 영국의 회의적 반응은 1990년대 초반 경기침체와 맞물려 폭력적인 청소년범죄에 대한 언론의 부정적 보도에 기인한다. 반면, Silje 살해 당시 노르웨이는 아동의 순진함에 대한 낙관적인 믿음을 가지는 것이 그 반대의 경우보다 낫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떤 경우든 사악한 아동으로 규정되면 지역사회로부터 비난(censure)과 추방(expulsion)을 경험하게 되지만, 순진한 아동으로 받아들여지면 보다 자비롭고(humane) 재통합적인(reintegrative) 원조를 받을 수 있다.

아동에 대한 개념이야말로 왜 노르웨이에서 영국과 같이 청소년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책임주의적이고 처벌중심적인 반응에 대해 문화적 저항(cultural resistance)이 나타났는지를 부분적으로 설명한다. 즉, 노르웨이에서는 아동의 개념에 대한 신뢰와 재통합적 접근이 다른 국가에서와 달리 여전히 훼손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다.

5) 미디어 문화(media culture)

두 국가의 언론보도에 있어 가장 큰 차이는 영국의 경우 Bulger 사건을 다룸에 있어 일반인의 관점(the views of the public)이 지배적이었고, 유명 정치인의 발언(rhetoric)이 주로 보도되었던 반면, 노르웨이는 Silje 사건을 다룸에 있어 주로 전문가 의견을 다루면서 사건이 발생하게

된 맥락과 지역을 중심으로 보도를 하였다.

영국의 미디어 환경은 전 세계에서든 매우 경쟁적인 곳 중 하나이며, 영국에서 미디어 문화와 정치 문화는 깊이 연관되어 있다. 언론사 편집자들은 정부의 범죄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기대하며, 유명 언론소유자와 편집자들은 특정 정당 혹은 정치인과 관계를 형성한다. Bulger 사건이 발생하던 당시 영국 노동당은 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전략을 채택하려고 했고, 일부 언론사는 이러한 노동당 전략을 지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노르웨이는 전 세계에서 1인당 독자수가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이다. 영국과는 달리 노르웨이의 대부분 신문사들은 지역신문에 기반하고 있다. 비록 정치적 입장은 가지고 있지만, 영국보다 편집권은 독립적이고 객관적이다.

센세이셔널한 뉴스는 모든 나라의 언론에서 중요하다. 그러한 뉴스로 인해 경쟁력이 생기고 시장에서 지배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Bulger 사건이 터지자 당시 Blair 총리는 청소년비행이 날로 증가하고 공포화되어 가고 있다는 다소 과장된 언론의 보도를 논박하기보다는 그대로 따랐다. Blair 총리의 발언은 그가 공식통계를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정당화시켜 버렸다는 점에서 중요했다. Bulger 사건으로 촉발된 국민적 분노는 부분적으로 매우 예외적인 범죄사건을 과장확대해서 보도한 언론의 선정주의(sensationalism)와 관련이 있다.

양국 언론의 보도에 있어 차이는 Bulger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다룬 반면, Silje 사건은 그렇지 않았다. Bulger 사건은 납치, 잔인함, 고의적 살인에 관심을 집중한 반면, Silje 사건은 순진한 아이들에 의한 순진한 아이의 죽음으로 다루어졌다. Bulger 사건은 ‘형사사법(criminal justice)’의 프레임으로 개념화된 반면, Silje 사건은 ‘아동복지(child welfare)’의 프레임으로 개념화되었다.

6) 정치문화(political culture : ways of doing politics)

영국과 노르웨이의 정치문화 혹은 정치적 방식은 두 사건에 대응하는 양국의 차이를 상당부분 설명한다. 정치문화는 언론보도, 그리고 범죄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언론의 태도와 범죄에 대한 인식은 다시 정치문화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영국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은 언론이 정부에 대해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불신을 보도하는 것에 대한 뉴스가치를 높이고, 이는 적어도 범죄와 형벌의 전문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며, 오히려 정부에 반대하거나 권력을 획득하려는 정치인의 발언에 더 힘이 실리는 경향을 가져왔다. 반대로 노르웨이에서는 동료 시민들, 정치인,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은 편이었고, 이러한 신뢰는 정치적·사회적으로 불만이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포섭과 권력의 공유를 통해 제도에 대한 신뢰를 문화적으로 공고하게 만들었다.

영국과 노르웨이의 소년강력사건에 대한 개입형태를 살펴보면, 사건 발생 즉시 대상사건에 대한 보호나 처벌이냐의 관점에 따라 대응이 상당부분 달라짐을 알 수 있다. 형사처벌에 집중하는 영국과 달리 노르웨이는 가해소년에 대하여도 보호를 기본전제로 하고 그와 함께 언론통제와 피해자측을 위한 보호노력을 함께 기울이는

모습은 자극적인 언론보도와 처벌에만 집중하는 우리의 소년사법 대응이 변화해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제6절 외국의 소년강력범 대응체계를 통해본 시사점

우리나라가 소년사건에 대하여 검사선의주의를 취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은 전건 법원송치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일본은 연령을 비롯하여 소년사법절차에서의 기본적인 체계는 우리와 유사하다. 일본도 소년범의 흉악범죄가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강력처벌 움직임이 일고 있고, 이때마다 소년법을 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일본도 소년범죄의 경향으로 보면 특별히 소년강력범죄가 증가하였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보도되는 흉악사건은 여전이 나타나고 있다.

일본은 최근 공직선거법 연령 인하와 소년흉악사건으로 인해 소년법 적용연령 인하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여론이나 다른 법률과의 관계상 연령을 인하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소년강력범의 처우에 대한 점검과 소년범죄 통계현황을 비추어 봤을 때 실익을 찾기 어렵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내에서 소년법 적용연령 인하에 대하여 찬반논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체로 찬반 논거는 다음과 같이 나뉜다. 연령인하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① 국내 법률간 통일의 필요성, ② 민법·공직선거법과의 관계, ③ 여론의 동향, ④ 피해자 감정의 배려, ⑤ 외국의 소년연령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²²³⁾ 반면에, 연령인하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① 국내법상 통일은 인하의 이유로 할 수 없고, ② 통계상 소년사건의 증가·흉악화가 실제로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③ 재범방지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으며, ④ 최근 소년의 특성상 정신질환, 한부모 자녀, 발달장애, 빈곤 등의 문제도 고려해야 하며, ⑤ 우범소년에 대한 개입이 어려우며, ⑥ 현행법에서 대응가능한 것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²²⁴⁾ 이러한 논의 결과들은 현재 소년법 개정논의가 활발한 국내에도 시사하

223) 藤本哲也, 少年年齢の引下げと青年層構想, 戸籍時報 No.735, 2016, 63頁.

224) 内匠舞, 少年法の適用年齢引下げをめぐる議論, 国立国会図書館 調査と情報 ISSUE BRIEF No.963, 2017, 9-12頁.; 丸山雅夫, 少年法適用年齢の引下げ批判 (http://law.meijo-u.ac.jp/staff/contents/67-1/670106_maruyama.pdf, 2017.12.6. 최종검색)

는 바가 크다.

미국은 각주별로 형사책임 연령이 7세부터 10세 등 상이하긴 하나, 전세계 국가 중 연령이 비교적 낮은 국가에 속한다. 미국은 소년강력범에 대한 대응을 관할포기(waiver)제도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검찰과 법원간 형태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소년강력범에 대하여 엄벌화하는 것이 효과적인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으나, 2017년 뉴욕주에서 형사처벌 연령을 오히려 상향하는 입법안이 통과되면서 오히려 엄벌화 경향에 제동을 걸고 있는 입법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영국은 형사책임연령이 10세로 다른 EU국가에 비해 연령기준이 낮지만, 10세 이상 18세 미만자의 범죄사건은 소년법원에서 약식재판(summary trial)으로 심리가 이루어지고, 성인사건과 동일하게 처리되지 않고 있다. 다른 유럽국가에 대하여 소년범에 대한 구금적 처우가 많은 영국이지만, 구금이 소년범죄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효과가 증명되지 않았다.

독일은 소년사법 적용연령을 18세 이상 21세 미만인 ‘청년(Heranzwachsende)’층까지 두고 있고, 청년층에 대하여는 소년사법절차를 진행할지 성인사법절차를 진행할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적이다. 1990년대 후반 독일사회에서도 엄벌화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이후 개정방향이 강력처벌보다는 주로 징계처분이나 경고구금을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노력들을 보이는 형태로 변화하였다.

노르웨이 형사책임 연령을 15세로 보고 있고, 여타의 국가와는 달리 복지적 개입이 강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노르웨이에서는 소년강력사건이 발생시 가해자인 소년강력범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형태로 개입을 하고 있고, 여론에 휩쓸리기 쉬운 상황을 우선 통제하고 피해자 보호를 함께 병행하는 형태로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여론몰이에 따라 입법방향이 정해지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 소년강력범 대응체계의 개선방안

이 승 현

우리나라 소년강력범 대응체계의 개선방안

제1절 소년사법에 대한 인식 차이 개선을 위한 노력

각국의 소년사법절차를 통해 소년강력범에 대한 대응상황을 살펴보면, 대체로 각국의 연령기준, 사회·문화적 인식, 혼인연령, 선거권 연령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처벌 연령기준이 상이하다. 소년강력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엄벌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지만, 이에 대한 찬반 논의와 소년범의 시설내 수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을 이유로 신중을 기하자는 분위기가 각 국가의 전반적인 상황인 것으로 파악된다.

전체적으로 국가마다 엄벌화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으나, 이러한 논의가 과연 무엇을 추구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숙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도 소년강력사건이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엄벌화 및 대상연령 인하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소년강력범에 대한 대응체계의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소년사법 체계 안에서 상황해결을 위한 별도의 개입수단이 필요한지, 그것이 형사제재나 억압된 수단을 동반한 기타 특별법상 개입수단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는지, 그것이 현재보다 강화된 형태로 나타나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먼저 구해야만 한다. 엄벌주의로 가게 될 경우 소년원 수용기간을 늘리고 무기징역 상한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데, 이것을 위해 기존의 제반사정은 달라졌는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소년사법체계의 구동현실을 본다면 새로운 제재 등의 도입을 통해 소년강력범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시설 구금 등 강제력에 의한 개입조치는 목적과 수단이 비례성을 갖고 고려되어야 하고, 어디까지 통제망을 확장할 것인가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기존 제재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 없이 막연히 강력한 처벌이 소년강력범에 대한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대책의 제시는

그동안 성폭력관련법제와 형법상 형량 인상 등이 범죄의 감소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결과들을 통해서도 예측이 가능하다.

독일의 연구결과에서도 장기간의 시설내 구금보다는 사회내 처우가 소년법에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고, 미국 뉴욕타임즈의 최근기사에서처럼 소년법에 대한 강력처벌로 유명한 뉴욕주의 경우에도 소년법에 대하여 성인범죄자와 동일시하는 처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노력을 보이고 있다.

소년강력사건에 대하여는 노르웨이의 대응사례에서처럼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가도 중요하다. 강력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영국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즉각적으로 엄벌화 대책을 쏟아내는 것과 달리, 언론에 대한 철저한 통제, 소년법에 대한 재사회화를 위한 노력(언론 노출 자제) 등 노르웨이 모델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강력사건이 발생하면 가해자에 대한 정보가 언론을 통해 적나라하게 공개되고 신상털기에 의해 가해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이루어지는 현행 소년사법 체계에서 소년강력범은 재사회화보다는 사회에서 철저한 격리를 통하여 반사회성만 강화될 것이다. 따라서, 소년강력범의 문제에 대하여 엄벌화 태도보다는 초기개입을 통해 정확한 진단과 개입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자성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개입과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사회내 노력이 필요하다.

현행 소년강력범의 경우 행위 자체는 중하지만 소년범들이 결과를 예측하고 행위를 한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행위에 대한 결과책임을 지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엄벌화가 응보적 정의관념에서 나오긴 하였으나, 이러한 정의관념에서 말하는 정의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처우하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연령의 상황에 맞게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제2절 소년사법에 대한 연령기준

1. 각국의 연령기준 고찰을 통한 판단

우리나라 현행법상 촉법소년 연령이 14세이나 실제로 보호처분이 가능한 연령까지 고려한다면, 10세부터 소년사법단계의 개입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14세 미만의 경우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소년법상 10세 이상 14세 미만자에 대하여 처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설사 연령을 낮춘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법원 양형단계에서 13세나 12세 소년에게 강력범죄자라는 이유로 강력한 처벌이 나올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일본과 미국을 비롯한 해외사례에서 보듯이 저연령 소년에 대한 강력처벌은 시설내 구금의 폐단을 학습하게 되고, 이로 인한 재사회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는 본 연구의 해외 대응사례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다.

〈표 4-1〉 각국의 형사책임 최저연령

연령	해당국가
18세 미만	룩셈부르크, 벨기에, 기니, 우루과이
16세 미만	스페인, 아르헨티나, 몽골, 쿠바
15세 미만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14세 미만	독일, 오스트리아, 중국, 이탈리아, 일본
13세 미만	프랑스, 아이티
12세 미만	캐나다, 네덜란드, 그리스
10세 미만	영국, 호주, 뉴질랜드
9세 미만	필리핀, 방글라데시, 에디오피아
8세 미만	인도네시아, 스코틀랜드, 스리랑카
7세 미만	미국 일부 주, 태국, 싱가포르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도 12세 이하로 형사책임 연령을 인정한 국가에 대하여 권고를 계속하고 있고, 이에 따라 14세 미만 형사책임연령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들이 연령을 상향조정하고 있다. 유엔의 권고에 따라 영국은 8세에서 10세로, 캐나다는 7세에서 12세로, 이스라엘은 9세에서 12세로, 호주도 7세에서 10세로 상향조정하였다.²²⁵⁾ 우리나라의 구금가능연령이 10세인 점을 감안하고, 유엔 권고 등 국제적 기류에 따르더라도 현행 우리법 체계에서 연령기준은 변화가 필요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225) 김성돈/강지명, 형법상 미성년자 연령 설정과 소년법상 보호처분과의 관계, 국회입법조사처, 2012, 71-72쪽.

2. 연령기준의 판단 요소

가. 형사책임주의 관점

형사책임능력은 형사처벌을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 즉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연령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소년강력법에 대하여 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은 소년사법이 일반예방에 무게를 둘 것인지 특별예방에 무게를 둘 것인지와 결부되어 있다.

소년만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년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오히려 형사책임주의에 반할 수 있다. 노르웨이가 소년사법의 문제를 철저히 복지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도 그 이유이다. 형사책임적 관점에서 볼 때 소년법의 적용연령을 인하하여 13세나 12세로 할 경우 이는 대상자의 재사회화라는 특별예방적 관점에서 단점이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다.²²⁶⁾

나. 형사처벌의 실효성 관점

독일의 효과성 검증 연구결과에서 보듯이 소년에 대한 강력처벌보다는 사회내 처우와 결합된 개선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도덕성 행동발달이론에 따르면, 소년의 도덕적 행동은 연령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일관성이 없다는 연구결과를 보여주므로 저연령 소년에게 성숙한 행동을 기대하기 어렵다.²²⁷⁾

따라서 소년강력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년법이 가진 가정 및 사회적 배경에 있어서의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한 사회내처우를 실시함으로써 사회내 적응력을 높이는 것이 시설내 처우로 인한 사회부적응 심화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다. 소년법의 기본이념 검토

226) 김성돈/강지명, 형법상 미성년자 연령 설정과 소년법상 보호처분과의 관계, 국회입법조사처, 2012, 77쪽.

227) 이정주, "형사책임연령 인하논의에 관한 형사정책적 검토", 소년보호연구 제21호, 2013, 192쪽.

현재 소년법의 목표가 소년강력범에 대한 대응에 있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 현행 소년법은 “반사회성 있는 소년의 환경조정과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데 ‘반사회성 있는 소년’이라는 전제 자체가 소년법상 낙인이 될 수 있다. ‘반사회성 있는 소년’이란 현대사회에서 말하는 사이코패스 등 사회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자를 말하는데, 이런 대상에게 환경조정과 특별한 조치를 통해 건전한 성장을 돕도록 한다는 소년법의 목적 자체가 잘못 설정되어 있다고 본다. 일본의 경우 ‘비행이 있는 소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독일의 경우 이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소년법의 목적 규정부터 개선하여 소년법이 지향하는 바에 부합하는 대상과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라. 신체적·정신적 성숙도

최근 몇몇 강력사건에 대한 언론보도 등을 보면 과거와 달리 현재의 소년이 심리적·신체적으로 성숙되었다고 표현하고 있다. 형법상 책임무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생물학적 방법, 심리학적 방법, 혼합적 방법 등이 논의되고 있다.²²⁸⁾ 성숙되었다고 하는 근거는 소년강력범이 성인범과 유사할 정도로 범죄상황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자신이 어떤 처벌을 받을 것인지를 예측하여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소년강력범의 범행에 대한 치밀한 계획이나 처벌에 대한 예측은 성숙도와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영악하다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소년범이 외모적으로 성숙하고,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여 정신적으로 성숙하거나, 형사책임을 지기 위해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 등이 성인과 같은 수준으로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4세라는 책임연령이 단순히 심리적 요소만 고려된 것이 아니라, 심신발육과정에서 소년의 특수한 정신상태와 함께 개선가능성이 높다는 형사정책적 고려까지 포함된 것이라고 본다면, 14세라는 연령이 반드시 높다고 평가할 수 없다.²²⁹⁾ 따라서 외모적 변화만으로 정신적 성숙도가 높다거나 사물 변별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할 수 없고, 소년범이 가진 다양한 배경상황과 판단능력들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28) 정재준,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인하문제를 위한 제언”, 형사법연구 제24권 제1호, 2012, 32-33쪽.

229) 정재준, 앞의 논문, 53쪽.

3. 연령인하에 대한 재고

소년사법에 대한 강력처벌 요구가 있으나, 일반 국민들이 예상하는 대로 강력처벌이 소년사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연령인하와 관련하여 독일, 일본, 이탈리아는 우리와 같이 14세가 기준이고, 미국은 경우 7세를 형사책임연령 기준으로 보는 주도 있는 것처럼, 외국 입법례를 보면 형사책임연령을 우리보다 더 높이거나 더 낮춘 국가도 있다.

영국의 경우 형사책임연령이 10세로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사회에서 소년범죄가 여전히 사회문제시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1997년 초등학생을 무참히 살해한 사카키바라 사건을 계기로 2000년에 소년형사처벌 연령을 16세에서 14세로 낮추었고, 2003년 남아유괴살인사건, 2004년 초등학교 동급생 살인사건 등을 계기로 2007년에 소년원 송치연령을 14세에서 12세로 하향하였다.²³⁰⁾ 2014년에는 소년에 대한 무기형의 완화로 유기형의 상한을 15년에서 20년으로 인상하였다. 일본사회의 엄벌화 입법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후 소년범죄가 줄었다고 평가하지는 않고 있다.

국내 통계에서도 최근에 저연령 범죄가 심각해졌다고 볼만한 통계수치가 보이지 않는다. 지난 10년간 소년범죄자의 연령별 현황을 보면, 16세와 17세 소년범의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 2013년부터 18세 소년범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소년범죄가 저연령화되었다는 평가와는 달리 최근 몇 년간 소년범의 비율은 17-18세 소년범이 증가하는 반면에, 14-15세 저연령 소년이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국내 통계 현황을 보더라도 최근 소년범죄가 특별히 저연령화 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외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형사처벌 연령이 지나치게 높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소년에 대한 사법적 제재인 보호처분 부과가능 최저연령이 10세인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의 책임연령은 14세가 아니라 10세라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령인하로 소년범죄가 감소한다고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론에 이끌려 무조건 연령인하부터 하는 입법적 태도는 자제되어야 한다.²³¹⁾

230) 중앙일보, “일본, 소년범죄 흉악해지자 처벌연령 낮췄다”, 2017년 9월 6일자.
(<http://news.joins.com/article/21910614>, 2017.12.12 최종검색)

231) 법률신문, “형사처벌 연령 낮추자는 여론에... 법조계는 우려”, 2015년 11월 9일자.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6321>, 2017.12.12. 최종검색)

제3절 소년강력범에 대한 구체적 대응방안

1. 조건부 양형제도 도입

독일의 경우 소년범에 대한 양형시 집행유예부 처분을 실시하는 사례가 많다. 양형을 선고하는 단계에서 일정기간 교육이나 기타 조건을 이수할 것을 예상하여 집행유예를 하는 방안 등은 조건부 훈방이나 조건부 기소유예의 변용 방법으로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소년사법에서는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이 선고되면 소년의 개선가능성 및 변화 여부에 따라 처우를 달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이는 소년사법이 추구하는 소년보호이념에도 부합하지 않는 선고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소년범의 처우상황 등을 예의주시하고 진행과정에서 대상소년의 변화, 처우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최종처우를 결정하는 방식은 소년의 개선가능성을 고려하고자 하는 소년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처우라고 할 것이다. 소년형과 보호처분을 함께 부과하여 보호처분의 이행 여부를 집행 감독하고 그 결과를 소년형벌에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조건부 형사처벌의 심사기관과 집행 여부를 감독 및 조사할 수 있는 기관, 이러한 처분의 결정 주체를 선정하는 일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2. 형사재판과 소년재판을 병행할 수 있는 ‘청년’ 연령층 신설

모든 소년범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와 저연령군에 대한 시설내처우로 인한 폐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의 청년연령과 같은 연령군을 두고 이 연령군에 대한 형사처벌을 할지 여부를 고려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독일은 행위시 기준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자를 ‘소년’, 18세 이상 21세 미만의 자를 ‘청년’으로 구분하고, 청년이 저지른 사건이 소년사건과 동일시 할 수 있는 경우 소년에 대한 실제·절차 규정이 준용되고 있다. 독일에서는 소년사건과 함께 청년사건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소년법원이 관할하도록 하고 있고, 청년사건이 소년사건과 동일시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소년법원이 하도록 하고 있다. 판단 요건으로는 ① 청년이 환경적 모든 조건을 고려하여 행위자의 인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경우

행위시에 도덕적 및 정신적 발육상황이 소년과 동일한지 여부, ② 행위의 종류, 사정 또는 동기에 있어서 소년비행이 문제시되는가 여부에 달려있다(소년법원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따라서 소년사건과 동일시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년에게는 소년과 마찬가지로 교육처분, 징계처분, 소년형이 부과될 수 있는 반면에, 소년사건과 동일시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년사건은 일반형법상 형사처분절차로 처분되지만 이 경우에도 소년법원이 재량에 의해 무기자유형에 대하여 10년~15년까지 완화된 자유형을 선고할 수 있다(동법 제106조 제1항). 또한 소년사건의 경우와 달리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청년사건의 경우에도 법원의 재량에 의해 재판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동법 제109조 제1항 제4문).²³²⁾

우리나라도 모든 소년법에 대하여 형벌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형사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대상연령을 한정하여 제도적 접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특정강력범죄에 대한 제한규정 신설

특정강력범죄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위해 특정강력범죄에 대한 제한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관할 포기나 배제 사유로 총기휴대범죄, 마약범죄 등의 유형이 분류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고의의 살인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처우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년강력법에 대한 집중적 대응을 위해 현행 특강법안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과 같이 성인범과 동일하게 접근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소년특정강력범죄에 대하여는 ① 특정강력범죄의 죄종을 축소하고, ② 적용연령을 제한하는 방식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사형 또는 무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를 비롯하여 최소한의 범위 하에서 법정형을 상향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232) 武内謙治, ドイツ少年司法における青年制度とその運用, 浅田和茂先生古稀祝賀論文集 下巻, 成文堂, 2016, 449-460頁.

제4절 소년사법단계별 개입기준 마련

소년강력범에 대한 보다 실질화된 개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입 초기 단계에서부터 처우의 기준이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어 강력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각 단계별로 처우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1. 경찰의 훈방기준

현행법상 경찰의 훈방기준이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경찰의 사건처리규칙에 따라 훈방이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법적 근거 없이 훈방이 실시되고 있다보니, 훈방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 훈방프로그램의 일관성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경찰단계에서 촉법소년 개입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적법절차 위반여부, 압수수색의 근거 등이 불명확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경찰단계의 훈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훈방의 최소기준도 법적 근거를 두어 교육적 조치가 어느 정도 강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2. 검사의 조건부 기소유예 기준

현행 소년법 개정안에서는 검사의 조건부 기소유예의 무분별한 남용에 대한 대안 법률이 다수 제시되고 있다. 조건부 기소유예 배제사유를 별도로 두어 조건부 기소유예를 제한하자는 취지이다.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 소년사법 구조는 검사선주의의이고, 검사에게 소추재량이 있는 구조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검사의 조건부 기소재량이 과도하게 남용될 경우 소년범의 재범을 방지하는 결과가 되고, 신속한 개입을 통해 교정교화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놓칠 수 있게 되는 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조건부 기소유예 배제사유는 마련되어야 한다.

3. 소년법원의 보호처분 기준

형사처벌에 있어서는 법원의 양형기준이 있어 처분의 기분이 객관적인 반면에, 소년사법은 보호처분의 기준이 전적으로 판사의 재량에 달려있다. 그러다 보니, 재판에 있어서 판사의 관심정도나 대상소년의 사정 여하에 따라 사안에 대한 처분이 상당부분 달라진다. 이것이 소년에 대한 개별화된 처우의 입장에서서는 바람직하다고 인식할 수 있을지 모르나, 대상소년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일관되고 객관적 처우라는 인상을 주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러므로 시설내 구금을 전제로 하는 처우의 경우 신체 박탈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처분에 대하여는 최소한 처분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소년형사재판의 양형기준

그동안 나영이 사건 등을 통해 아동성폭력범죄자 등에 대한 법정형을 가중하였으나 아동성폭력이 감소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정형을 상향조정하였다고 소년범죄율이 감소한다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정형을 상향조정하는데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

다만, 그동안의 소년범죄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를 보면, 소년범죄 개선가능성 여지가 적다고 본 형사재판에서조차 선고형은 지나치게 낮은 것이 현실이다. 소년형사사건의 경우 제1심에서 대부분 소년부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다.

소년형사재판에서도 아직까지 소년사건에 대한 완화된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적어도 소년형사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 이들 사건에 대하여는 범죄유형이 매우 잔혹하거나 폭력적이고, 개선가능성의 여지가 적다고 판단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법적용에 있어서 보다 현실적인 양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소년형사사건에 대하여 일정부분 양형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소년형사재판에 대한 양형기준 수립은 소년의 개선가능성이라는 주관적 요소의 고려로 인해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어려우나, 소년형사재판의 객관화와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는 일정 영역에 있어 기준마련이 실현되어야 한다.

제5절 소년강력범 개입을 위한 사법절차 개선방안

1. 소년사건 처리절차의 신속화

소년사건 절차가 진행되면 경찰에서 법원단계로 넘어오는 동안 최소 3개월에서 5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 기간 동안 소년범은 다시 재비행 상황에 놓이게 되고, 6개월-1년이 경과한 후 처분결과는 소년범의 비행사실에 대한 반성과 개선을 이끌어내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소년사건에 대한 신속처리절차 마련을 통해 초기 사법절차 진입시 즉각적인 개입과 선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년사법시스템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검사선의주의를 취하고 있어, 경찰-검찰-소년법원-형사법원 등 거쳐야 하는 절차단계가 외국의 어느 나라보다 많고 신속하게 사건을 이송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소년강력범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과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사건처리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국의 관할포기(waiver)제도나 이송절차 개선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2. 초기 진입시 집중관리감독

소년사건의 대부분은 경찰단계에 들어오기 전에 다수의 비행에 노출된 경우가 많다. 따라서 경찰단계 등에서 초기 비행 발견시 즉각적인 개입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경찰단계에서는 훈방, 검찰단계에서는 기소유예, 법원단계에서는 보호자 감호위탁 등을 통해 별다른 개입 없이 사회로 다시 돌려보내는 처분이 많다. 따라서 이들 처분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각 단계별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선도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3.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앞서 문제점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강력범죄 등 소년범죄에 노출된 대상 아이들 대부분이 가정의 방임이나 무관심을 경험하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들 소년범에

대한 가정의 기능회복을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들 교육에 있어서 부모의 보호력과 관심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바 부모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현재 소년원에서 간헐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가족캠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소년원 수용은 부모와 상당기간 떨어져 있는 가운데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고, 이러한 불안감은 교정교육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도 작용될 수 있다. 따라서 정기적인 가족캠프 실시로 인해 부모와 자녀간의 대화방식이나 훈육방법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시설내 수용기간 내의 가족기능 강화 외에도 보호관찰단계 내 사후관리 단계에서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각 지역사회내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사회복지관 등에서 위기가정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소년강력범죄자의 가정이 지역사회 내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보호처분의 다변화방안

보호처분의 내실화와 보완 등으로 소년법 적용연령 인하로 인해 초래되는 부작용을 상당부분 상쇄할 수 있다.²³³⁾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경미한 처분으로 인식되지 않고, 소년이 성인범죄자로 나아가지 않도록 경계를 끊는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보호처분단계에서 집중적 개입과 관리감독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첫째, 보호자 감호위탁(1호)방식을 개선하여 감호위탁에 있어서 부모의 책임성을 보다 강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호자감호위탁시 보호자교육이 병행될 수 있도록 소년법상 교육조건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집중적인 관리감독이 될 수 있도록 소년보호관찰(4,5호)을 위한 예산과 인력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 최근 소년범죄예방팀이 신설되면서 소년보호관찰과 성인보호관찰이 분리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소년보호관찰의 차별화를 위해 집중보호관찰제도의 운영방법 개선 및 소년보호관찰에 맞는 면담방식의 개발이 병행되어야

233) 박찬걸,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연령설정과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제도와의 관계”, 소년보호연구 제22호, 2013, 216쪽.

할 것이다.

셋째, 치유사범의 관점에서의 접근을 위해 아동복지시설이나 병원 또는 요양소(6호, 7호) 등 관련시설 위탁이 다양하게 이루어져 전문적인 의료치료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처벌과 재범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범죄자에 대한 치료를 통해 근본적으로 문제해결을 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아동복지시설 위탁처분과 병원 또는 요양소 위탁처분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²³⁴⁾ 아동복지시설 위탁처분의 경우 6호시설을 현재 7개에서 전국 단위로 확대하고, 해당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이 이후 학교교육이나 직업교육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와 결합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하다. 대상소년이 교육 이후 원적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임시교사 파견, 시험 및 출석관리제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7호처분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단위 국립병원을 병원 또는 요양소 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역단위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현재 병원 또는 요양소 위탁이 보호자 부담으로 되고 있어 실제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못하는 보완하기 위해 국가가 일정부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넷째, 소년원(8,9,10호) 수용기간을 1개월, 6개월, 2년으로 한정하기 보다는 대상소년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보호관찰기간이나 소년원 수용기간을 명시해두지 않고 있다. 해당소년의 교정교육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수용기간 내에서 적응상황을 고려하여 연장 또는 단축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5. 범정부단위 소년범죄예방협의체 신설

현재와 같이 부처별로 단절된 비행예방대책으로는 소년강력범죄 예방 및 범죄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경찰-검찰-법원-보호관찰소-지역사회 관련기관 간 원활하게 연계와 개입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범정부 단위 협의체 신설이 필요하다. 소년강력범의 문제는 아무래도 법무부가 사전예방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폭넓게

234) 김두상/박상식, “형사처벌 대상자의 연령인하와 치유사범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제24권 제2호,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12-13쪽.

개입하고 있는바, 법무부를 중심으로 한 협의체 마련이 필요하다.

2007년 소년법이 도입된 비행예방정책의 실현을 본격화하기 위해서 경찰, 검찰, 법무부, 법원의 형사사법망을 통일화하고 관련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해야 한다.²³⁵⁾ 또한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내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을 위해서 일정 정보를 요청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각 부처별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경찰과 보호관찰소 간 소년범죄자에 대한 정보공유를 위해 MOU 체결 뿐만 아니라, 정보공유를 위해 필요한 경찰과 보호관찰소간 관련지침을 개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35) 정신교, “소년법의 사회내처우의 실효성방안”, 치안정책연구 제31권 제2호, 2017, 163쪽.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강경래, “각국의 소년사법제도 최근동향: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보호 통권 제17호, 법무부, 2005.
- 권수진/유진, 정신질환 소년원생의 효과적인 처우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 김두상/박상식, “형사처벌 대상자의 연령인하와 치유사법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제24권 제2호,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 김성돈/강지명,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연령 설정과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제도와의 관계: 외국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2012.
- 김성은 외, 청소년형법,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 김은경/김지선/이승현 외, 21세기 소년사법 개혁의 방향과 과제(I): III.대안의 모색,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 김 혁, “소년법상 연령과 형사법과의 관계”, 한국형사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 자료집, 한국형사정책학회, 2016.
- 박재현, “노르웨이 소년사법절차 고찰”, 사법연수원 교수논문집 제10집, 2013.
- 박찬걸,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연령설정과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제도와의 관계”, 소년보호연구 제22호, 2013.
- 법무부, 소년 강력범죄 대책과 입법개선방안 공청회 자료집, 2017.
- 법제연구원, 2006 독일법령용어 해설집, 2006.
- 신동운, “서독소년법원법상 소년구금제도”, 청소년범죄연구 제5집, 법무부, 1987.
- 양화식, “소년법상 검사선의주의: 해석론과 입법론”, 수원대학교 사회과학논총 12호, 수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0.
- 이승현, 소년보호이념과 선의권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 이승현, “영국 소년사법의 최근동향”, 소년보호연구 제18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2.
- 이정주, “형사책임연령 인하논의에 관한 형사정책적 검토”, 소년보호연구 제21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3.
- 전은진, 성년연령과 책임연령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정신교/차시환, “소년의 형사책임연령에 대한 재검토”, 법학연구 제22권 제4호,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 정신교, “소년범의 사회내처우의 실효성방안”, 치안정책연구 제31권 제2호, 치안정책연구소, 2017.
- 정재준,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인하 문제를 위한 제언”, 형사법연구 제18권 제2호, 한국형사법학회, 2012.
- 한국법제연구원, 2006 독일법령용어 해설집, 2006.

2. 국외문헌

- Andrew Ashworth, Paul Cavadino, Bryan Gibson, John Harding, Andrew Rutherford, Peter Seago & Lorna Whyte, *The Youth Court*, Waterside Press, 1992.
- Anthony Bottoms & James Dignan, *Youth Justice in Great Britain*, in Michael Tonry & Anthony N. Doob, *Youth Crime and Youth Justice: Comparative and Cross-national Perspective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Journals, 2004.
- Allison Morris & Henri Giller, *Understanding Juvenile Justice*, Routledge, 1987.
- Bartollas and Miller, *Juvenile Justice in America*(8th eds.), 2017.
- Benekos, Peter J., Merlo, Alida V.,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2nd ed., New York: Routledge, 2014.
- Berit Albrecht, “Multicultural Challenges for Restorative Justice: Mediator’s Experiences from Norway and Finland”, *Journal of Scandinavian Studies in Criminology and Crime Prevention* 11:1, 2010.
- Bishop., Donna M., *Juvenile Transfer in the United States, Reforming Juvenile Justice*, Springer, 2009.
- Clemens Bartollas, *Juvenile Delinquency*, New York, 1985.
- Clemens Bartollas, *Juvenile Delinquency*, 2nd edition,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1990.
- Franklin E. Zimring, *American Youth Violence*,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 Gennaro F. Vito and Deborah G. Wilson, *The American Justice System*, Sage Publications, 1985.

- Graham Walters, *Criminal Proceedings Against Juveniles*, Sweet & Maxwell, 1984.
- Green, A. David. *When Children kill Children: Penal populism and political culture*, 2008.
- John Graham, *Juvenile Crime and Justice in England and Wales*, in Nicholas Bala, Joseph P. Hornick & Howard N. Snyder, *Juvenile Justice Systems: An International Comparison of Problems and Solutions*, Thompson Educational Publishing, Inc., 2001.
- John Muncie, Barry Goldson, *England and Wales: The New Correctionalism*, in *Comparative Youth Justice*, London: SAGE, 2006.
- Joseph Samborn, *Prosecuting Juvenile Offenders in Criminal Court, Controversies in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New York: Routledge, 2014.
- Katherine Van Wormer, *The Hidden Juvenile Justice System in Norway: A Journey Back in Time*, *Federal Probation* 54, 1990.
- NCJJ & OJJDP. *Juvenile Offenders and Victims: 2014 National Report*, Pittsburgh, PA: National Center for Juvenile Justice, 2014.
- NOMS, *Offender Management Caseload Statistics 2003*, National Statistics, 2004.
- Ministry of Justice, *Youth Cautions Guidance for Police and Youth Offending Teams*, Youth Justice Board, Ministry of Justice, 2013.
- Storgaard, A., "Juvenile justice in Scandinavia", *Journal of Scandinavian Studies in Criminology and Crime Prevention* 5(2), 2005.
- Tapio- Lappi-Seppala, *Nordic Youth Justice*, *Crime and Justice* Vol.40 No.1,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1.
- U.K. Youth Justice Board, *Youth Justice Statistics 2015/16 England and Wales Executive Summary*, Ministry of Justice, 2017.
- Detlev Frehsee, "12-/13jährige zum Jugendgericht? Heranwachsende zum Strafgericht?", *DVJJ- Journal* Jg. 7, Heft 4, 1996.
- Dieter Rössner/Britta Bannenberg, *Empirisch gesicherte Erkenntnisse über kriminalpräventive Wirkungen: Düsseldorfer Gutachten: Eine Sekundäranalyse der kriminalpräventiven Wirkungsforschung*, 2002.
- Entschließungsantrag der Fraktion der SPD, *Jugendstrafrecht und Präventions*

-strategien vom 12.11.1997.

Frieder Dünkel, Heranwachsende im (Jugend-) Kriminalrecht, ZStW Jg.105 Ht.1, 1993.

Gesetzesantrag des Freistaates Bayern, "Entwurf eines Gesetzes zur Änderung des Strafgesetzbuchs, des Jugendgerichtsgesetzes und anderer Gesetze vom 17.08., 1999.

Hartwig Bischoff, Die Problematik des § 105 JGG in der richtlichen Praxis und in Der Rechtspolitischen Diskussion, Ein Trojanisches Pferd im Rechtsstaat Hrsg.: Gerken, Jutta/ Schumann. Karl. F., Pfaffenweiler, 1988.

Heribert Ostendorf, Der Strafjustitielle Umgang mit Kindern, DVJJ-Journal 4, 1997.

Initiative der CDU/CSU-Bundestagsfraktion gegen Gewalt und Extremismus, DVJJ- Journal 2, 1993.

Katherine Van Wormer, The Hidden Juvenile Justice System in Norway: A Journey Back in Time, Federal Probation 54, 1990.

Magdeburger Initiative, Forum zum Jugend und Kriminalität, ZfJ Jg.86 Ht.9, 1999.

Oliver Pomplun/Friedrich Lösel, Jugendhilfe statt Untersuchungshaft: Eine Evaluationsstudie zur Heimunterbringung, Centaurus Verlag & Media, 1998, S.13ff.

Ostendorf, Jugendstrafrecht, 8.Aufl. Nomos, 2015.

Peter-Alexis Albrecht, Jugendstrafrecht, München, 2000.

Resolutionen des 1. Bundestreffens der Jugendrichter/innen und Jugendstaatsanwälte/innen von 8. bis 10. Dezember 1993 in Villingen-Schwenningen, DVJJ-Journal, 1993.

Statistisches Bundesamt, Fachserie 10, Reihe 3, Strafverfolgung: bis 1990 alte Bundesgebiet ab 1995 altes Bundesgebiet einschließlich Berlin-Ost, 2015.

Walter Michael, Die Krise der Jugend und die Antwort des Strafrechts, ZStW 113, 2001.

Wolfgang Heinz, "Reformbedarf des Jugendstrafrechts?", MschrKrim Jg.81 Ht.6, 1998.

- 高内壽夫, “少年法の理念”, 소년법연구 제2호, 한국소년법학회, 2007.
- 丸山雅夫, 少年法講義, 成文堂, 2016.
- 川出敏裕, 少年法, 有斐閣, 2015.
- 猪瀬慎一郎, “少年審判制度の基本問題”, 少年法のあらたな展開, 有斐閣, 2002.
- 澤登俊雄, 少年法入門[第3版], 有斐閣, 2005.
- 井上博道, 裁かれる少年たち: 少年審判と「改正」少年法, 大月書店, 2001.
- 若穂井透, 少年法改正の争点-司法福祉と児童福祉の課題は何か-, 現代人文社, 2006.
- 鮎川潤, “少年法改正とエビデンス・ベ이스ト・ポリシー”, 犯罪社會學研究 第30号, 2005.
- 最高裁判所事務總局, 司法統計年報 4-少年編-, 1997.
- 大月晶代, アメリカの少年犯罪事件と情報公開, 青少年をめぐる諸問題, 2009.
- 守山 正/後藤 弘子, ビギナーズ少年法, 成文堂, 2017.
- 武内謙治, ドイツ少年刑法改革のための諸提案, 現代人文社, 2005.
- 武内謙治, “ドイツの嚴罰化定策をめぐる動向”, 「改正」少年法を批判する, 日本評論社, 2000.
- 武内謙治, ドイツ少年司法における青年制度とその運用, 浅田和茂先生古稀祝 賀論文集 下巻, 成文堂, 2016.
- 武内謙治, 少年法講義, 日本評論社, 2015.
- 藤本哲也, 少年年齢の引下げと青年層構想, 戸籍時報 No.735, 2016.
- 内匠舞, 少年法の適用年齢引下げをめぐる議論, 国立国会図書館 調査と情報 ISSUE BRIEF No.963, 2017.
- 山口直也, 少年の刑事「責任」論-日本法の立場から-, 日韓學術交流第9 回大会「日韓少年法の未来...いま何が求められているか」, 2016.
- 田宮 裕//廣瀬 健二, 注釈少年法 有斐閣, 2017.

3. 인터넷 자료

- DVJJ, 2. Jugendstrafrechtsreform-Kommission, Vorschläge für eine Reform des Jugendstrafrechts. Abschlussbericht der Kommissionsberatungen von März 2001 bis August 2002, S.71 ff.
<http://www.dvjj.de/sites/default/files/medien/imce/documente/downloads/JGG-Kommission.pdf>, 2017.12.11. 최종검색).

New Times, Raise the Age,' Now Law in New York, Is Still a Subject of Debate,
APRIL 10, 2017(<https://www.nytimes.com/2017/04/10/nyregion/raise-the-age-new-york.html>, 2017.11.28. 최종검색)

no more excuses

(<http://www.homeoffice.gov.uk/documents/jou-no-excuses?view=html>,
2017.12.1. 최종검색)

若年者に対する刑事法制の在り方に関する勉強会「第1 回ヒアリング及び意見交換 議事
録」2015.11.2., 14頁

(<http://www.moj.go.jp/content/001165704.pdf>, 2017.12.2. 최종검색).

若年者に対する刑事法制の在り方に関する勉強会取りまとめ報告書

(<http://www.moj.go.jp/content/001210649.pdf>, 2017.11.20. 최종검색)

少年法・刑事法(少年年齢・犯罪者処遇関係)部会

(http://www.moj.go.jp/shingi1/housei02_00296.html, 2017.11.14 최종검색)

警察庁生活安全局少年課, 平成28 年における少年非行、児童虐待及び児童の性的 搾取等
の状況について, 2017.

(https://www.npa.go.jp/safetylife/syonen/hikou_gyakutai_sakusyu/H28.pdf,
2017.11.25. 최종검색);

各種法令等による「青少年」の呼称及び年齢区分

(http://www.pref.oita.jp/uploaded/life/1028527_1199837_misc.pdf,
2017.12.10. 최종검색).

Abstract

A Study on Responding System of Foreign Countries for Serious Juvenile Crimes and Its Implications

Lee, Seung-hyun • Park, Sung-hun

As serious juvenile crimes have been occurring continuously, discussions of serious juvenile offenders were taking place such as strengthening of criminal punishment and lowering the age of criminal liability. This study focused on juvenile justice system and responding system for serious juvenile criminals of US, UK, Germany, Norway, and Japan which have similar experiences and tried to find its implications.

In case of Japan, discussions about lowering the age for juvenile law has been on floor as the age of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was lowered and serious juvenile crimes occurred. Some critics insist that the age of juvenile law should be lowered considering public opinion and the relationships among other related laws. However, on the other hand, there are no practical reasons to lower the age in aspect of the treatment for serious juvenile criminals and related statistics.

US is one of the countries providing the lowest age of criminal liability. The age of criminal liability of US varies from seven to ten years old depending on States. US intervenes to serious juvenile offenders using 'waiver' rapidly and positively. There were also discussions about severe punishment in US like other countries, the tendency changed by passing the bill raising the age of criminal liability in New York 2017.

UK has low age compared to other members of EU which is ten years old. However, juvenile cases in 10 to 18 years old are treated in summary trial so that the procedure of juvenile crime is different from that of adults. Although the rate of imprisonment

is higher than other european countries, it is not proved that imprisonment has a beneficial influence on reducing juvenile crime.

Germany applies juvenile law to 'Heranwachsende' in the age of 18 to 21 and allows them to choose the procedures between juvenile justice and criminal justice. Even though there were discussions about severe punishment in Germany, German decided to improve disciplinary treatments or warning detention in an effective way rather than punish juvenile criminals severely.

Norway provides 15 years old for criminal liability and has characteristic of welfare approach. In particular, Norway intervenes to serious juvenile criminals by strengthening protection and support for them, controls the circumstances not to be swept away by public opinion, and protects the victims at the same time. These responding way of Norway has lots of implications to Korea setting the direction of legislation according to public opinion.

This study tried to examine the real state of serious juvenile offenders. As a results, we concluded that severe punishment for serious juvenile offenders and lowering the age of criminal liability are not the answer. To set the standards of the age in juvenile justice, a comprehensive consideration is needed such as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for rehabilitation, accordance with basic ideology of juvenile law, physical and mental maturity of juvenile criminals for criminal liability. This study suggests followings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To begin with, conditional penalty assessment should be introduced which makes suspended sentence available to juvenile offenders as Germany. Also, it is needed for youth people in age of 18-21 to choose the procedures between juvenile justice and criminal justice to minimize negative effect of strengthening criminal punishment. Raising statutory punishment should be considered to respond to specific violent crime in a positive way.

Secondly, the standards of intervention should be clarified from the beginning for the substantial intervention to serious juvenile offenders. Also it is needed to

make legal basis for releasing with a warning of Police, causes of exclusion for conditional suspended prosecution to prevent overusing it, and minimum standards for imprisonment.

Lastly, to improve juvenile justice procedure it is important to secure rapid handling of the cases by using 'waiver' of US, to strengthen educational programs to intervene positively entering juvenile justice, to diversify the protective dispositions, and to establish the standards of penalty assessment for actualization of penalty assessment in juvenile criminal trials.

연구총서 17-AB-07

소년강력범죄에 대한 외국의 대응동향 및 정책 시사점 연구

발 행 | 2017년 12월

발 행 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발 행 인 | 김 진 환

등 록 | 1990. 3. 20. 제21-143호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전 화 | (02)575-5282

홈페이지 | www.kic.re.kr

정 가 | 7,000원

인 쇄 | (주)계문사 02-725-5216

I S B N | 979-11-87160-79-3 93360

•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함.